

제337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서면질의답변서

2015. 9.

순서

2015. 9. 17.(목) 문화재청 국정감사 시

강 은 희 의원	1
도 종 환 의원	7
박 대 출 의원	11
박 인 숙 의원	15
박 주 선 의원	23
박 창 식 의원	43
박 혜 자 의원	49
배 재 정 의원	53
서 용 교 의원	63
신 성 범 의원	71
안 민 석 의원	79
안 홍 준 의원	85

염 동 열 의원	89
유 기 홍 의원	93
유 은 혜 의원	97
유 인 태 의원	103
윤 관 석 의원	107
윤 재 옥 의원	123
이 상 일 의원	129
이 종 훈 의원	139
정 진 후 의원	145
조 정 식 의원	159
한 선 교 의원	165

< 목 차 >

<강 은 희 의원>	1
1. ‘한국의집’, 각 국가별 맞춤형 전략 및 콘텐츠 다양화로 안정적 수입 확보해야	3
1) 재단 수익사업 중 ‘한국의집’ 경우, 지난 3년간 감소추세에 이어 작년에는 1억 4,7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특히, 식음료와 공연 부문에서의 손실액이 6억원을 넘는데, 이유는?	3
2) 외국인 감소, 특히 일본 이용객이 급감하고 있는데, 원인은?	3
3) 일본 이용객을 제외한 중국, 미국, 유럽 등 다른 나라 이용객은 점차 증가하고 있어, 해당 국가에 대한 수요 및 홍보 방안 등 전략적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재단은 일본을 포함한 각 국가별 맞춤형 전략, 콘텐츠 다양화 등을 통해 홍보 강화 및 마케팅 강화 방안을 마련, 안정적인 자체 수입의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3
2. 궁스테이, 문화재 ‘보존’이나 ‘활용’이나 논란...	5
1) 현재, ‘궁 스테이’ 사업 진행상황은?	5
2) 문화재를 보존·활용하고자 내부적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검토될 수는 있다고 생각함. ‘궁 스테이’ 역시 그 과정에서 나온 하나의 의견인지?	5
3) 해당 사업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 중, 건축 문화재에 대한 원형 변경, 학술적으로 문화 원형 보존 차원에서 활용 제한을 말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6
4) 석복헌은 170여년 된 목조건물임, 목조 문화재인 한국의 궁궐은 숭례문 방화사건에서 보듯이 화재에 매우 취약한데?	6
5) 무엇보다, 세계유산이자 조선의 법궁을 훼손해가며 내부개조를 한다면,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가 깃든 궁궐에 담긴 정신적 가치를 문화재청이 나서서 훼손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텐데, 이에 대한 입장은?	6
6) 청장님, 결국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보호·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 보존을 통한 활용이나 활용을 통한 보존이든, 국민 눈높이에 맞고 정서에 맞게, 국민들의 삶과 함께할 수 있는 문화재 관리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것	6
<도 종 환 의원>	7
1. 발굴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개발자에게 개발 전면 허용하는 독소조항 철회 필요	9
1) 발굴조사 시 지하유구가 훼손되지 않는 건축의 경우 정밀발굴 유예	9

2. 청주 테크노폴리스 조성부지 내 7지구, 발굴연장, 관련전문가 통한 철저한 고증 및 현장 관리 필요	9
1) 발굴연장 관련	9
2) 관련 전문가 통한 철저한 고증 및 현장관리 필요	9

<박 대 출 의원>11

1. 문화재 감정관 인력충원 필요	13
1) 일부 문화재 감정관실의 경우 특정분야의 전문위원이 없어 전문 분야가 다른 감정인이 대신 감정하는 경우도?	13
2) 문화재사범 제보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및 제보자 지급비율을 상향추진 중인데 효과가 있겠는가?(최고포상금 2천만원→2천5백만원 / 제보자 지급비율50%→83%) 그동안 포상금이 낮아 문화재 사범 제보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인가?	13
3) 분야별 전문 감정위원의 인력보충, 특히 1인의 감정위원만 배치된 곳(군산항-비상근위원1명), 시급 보강 필요	13
2. 산청 비로자나불, 국보 지정해 보존관리 필요	14
1)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에 대해 알고 있는지?	14
2) 국보 지정 관련 진행 상황은?	14
3) 국보 지정 검토를 위한 추가 조사 내용은?	14
4) 대표성과 가치가 매우 높은 문화재, 국보 승격에 동의하는지?	14

<박 인 숙 의원>15

1. 문화재 보수사업 친환경적으로 할 수 없나?	17
(1) 성곽을 살리겠다고 오래된 소나무 군락을 베어버리는 복원방식은 잘못된 방법으로 보여짐. 문화재청에서 지자체에 문화재복원 예산을 지원하면서 문화재 복원지침을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17
(2) 성곽 주변 나무를 무조건 베어버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 최소한의 환경적 가치를 고려해서 선별적으로 남겨두거나 다른 곳에 옮겨 심는다든지 문화재복원과 환경보존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17
2. 서울시가 지난 8월 부결된 서울역 고가공원 사업을 보완하여 재신청 할 경우 문화재청의 계획은?	17

3. 한국의집, 메르스 피해에 따른 매출액 감소 대책마련	18
1) 메르스로 인해 공연계 등 문화계가 입은 피해가 만만치 않음. 특히, 한국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한국의집의 경우도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짐. 이러한 재정난 보조를 위해 문화부에서 공연예술계 활성화 지원사업 등으로 침체된 공연예술계를 활성화하고자 했지만, 얼마나 적시성이 있는지 의문임.	18
2) 한국의집의 메르스 피해액이 4억 5천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는데, 한국의집도 추경의 지원을 받았나?	18
3) 한국의집은 특히, 중요무형문화재에 등록된 다수의 명인들이 펼치는 공연인 탓에 평소 관중도 많고, 명맥을 잇기 위한 중요한 자리이기도 해 더 의미가 있다. 앞으로 공연일정이나 체험활동 등 정상화되기까지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18
4. 문화유산을 영상으로 소개하는 사업의 중요성	19
1) 한국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문화유산채널 사업에 대해 질의. 이 사업은 문화유산 콘텐츠를 활용해 문화유산 가치를 확산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2014년부터 시작해 예산도 22억, 올해는 28억원을 투입해 지상파, 케이블 등 방송편성을 확대하고 교육 등 공공 활용도를 높이고 해외에도 보급을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잘 되고 있나?	19
2) 작년에는 문화유산콘텐츠를 116편, 방송사 연계 프로그램을 3편 제작했고, 올해에는 6월까지 각각 7편, 3편임. 제작콘텐츠의 질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양적으로 큰 감소를 보이는 것은 다소 아쉬운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영상콘텐츠 활용도 지난해 지상파, 케이블방송사 등 36개 기관에 1,243편을 제공한 반면, 올해는 17개 기관에 787편을 활용함. 네이버 TV캐스트 영상에도 각각 106편, 75편을 제공함. 이렇듯 작년도 사업초기에 비해 급격히 그 제공량이 줄어든 것은 무슨 이유인지 궁금함. 중요한 사업이고 예산도 늘었는데, 어디서 새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19
3) 무엇보다 독점영상을 제작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에는 카타르 도하에서 남한산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현장을 취재해서 제작했고, 프랑스 파리에서는 농악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현지 취재를 하곤 함. 올해에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심사현장을 보도하기도 함. 이러한 중요한 영상자료들을 제작한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인들에게 보다 쉽게 시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역시 중요함. 만들어 놓고 보급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됨. 좋은 영상물 제작과 함께 접근성도 높이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 주시기 바람.	20
4) 올해 12월에 방영 예정인 내셔널 지오그래픽 ‘조선의 왕릉’ 프로그램 제작은 잘 되어 가고 있나요? 사업에 차질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람	20

5.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매입 이후 복원을 위한 예산 부족	21
1)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복원 및 리모델링 사업 추진 현황	21
2)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복원 및 리모델링 사업 예산관련	21
6. ‘증도가자’ 진위논란, 세계 금속활자의 계보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	22
1) ‘증도가자’가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로 밝혀진다면, 세계적·문화사적으로 우리나라 인쇄술의 가치를 공인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사건이 아니겠는가?	22
2) 문화재 지정 관련, 출처와 입수경위를 밝히기 위한 조사 현황은?	22
3) 증도가자 선행연구자를 용역수행자로 선정한 이유는?	22
4) 증도가자 진위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왔는지?	22

〈박 주 선 의원〉 **23**

1. 누구를 위한 ‘궁(宮) 스테이’인가?	25
1) 지난 6월 30일, 동아일보가 ‘① 문화재청이 창덕궁 낙선재 일대의 전각을 객실로 꾸며, 숙박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② 경복궁 내 소주방을 조리가 가능한 시설로 개조하는 것을 검토 중’ 이라는 사실을 처음 공개함.	25
- 문화재청은 위의 두 가지 사안을 각각 처음 검토 및 추진한 시점이 언제인지?	25
- 당초, 문화재청이 이러한 활용 방안을 각각 검토 및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대통령 지시사항인가? 아니면 청장의 판단인가?	25
- ‘궁 스테이’와 관련하여 전문가 의견 수렴, 연구용역 등을 포함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25
2) 7월 16일에는 경향신문이 문화재청이 ‘궁스테이’의 하루 숙박료를 최소 300만원 이상의 고가로 설정하고 있다고 공개함.	25
- 이러한 보도내용이 사실인가?	26
- 8월 12일 사적분과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김대현 문화재청 활용국장은 “비용문제는 개인당으로 하면 10만원 안쪽으로 냈는데 모르겠습니다”라고 발언했는데,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담당 실무자에게 문의하자 “아직 정해진 바 없다”라고 답변했음. 당초 문화재청이 궁 스테이를 추진하면서 검토했던 하루 숙박료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26
3) 문화재는 소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위한 문화재가 되어야함. 소수만을 위한 문화재는 존재할 수 없고, 그래서 전 국민이 같이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하며, 우리 문화재를 후손들한테 온전히 그대로 물려줘야한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야함.	26

- 창덕궁은 사적(史蹟)이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데 모두가 공유해야 할 문화재를 비싼 돈을 내는 일부만 향유할 수 있게 혜택을 준다는 건 세계유산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 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26
- “온 국민이 아직 숭례문 화재 참사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창덕궁 관리 주체인 문화재청이 스스로 궁궐에 샤워·난방·주방 시설을 넣고 호텔로 만들 생각을 했다”는 비판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27
- 4) 7월 16일, 문화재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궁 스테이’와 관련해서 「‘고궁 스테이’는 검토 중이며, 사업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습니다.」라고 문화재청 입장을 발표함. 27
- 문화재청 보도자료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아직 검토 중이고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는 사항들이 문화재청의 공식적인 발표나 업무보고도 없이, 언론을 통해 세부적인 계획과 추진 내용들이 처음 공개된 것임.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하게 된 것인지? 여론을 떠보려는 것인가? 27
- 한 차례도 아니고, 연달아 세부적인 계획과 추진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 계속해서 공개되었음. 사업추진에 있어서 문화재청의 언론 대응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27
- 5) 8월 12일,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에서, 28
- ‘① 스테이용으로 내부를 개조하는 것과, ② 소주방에 LNG설치하는 것’ 모두 보류됨. 보류된 이유가 무엇인지? 28
-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면, 다수의 위원들이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고, 문화재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단칼에 부결시키기는 조금 그러하니 우선 보류로 가자는 분위기에 따라 부결이 아닌 보류로 심의·의결함. 이러한 사적분과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문화재청의 의견은 어떠한지? 28
- 6) 이러한 사적분과위원회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은 궁 스테이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짐. 28
- 문화재위원회의 의견도 부정적이고, 심지어 내년도 예산안에 해당 사업이 반영되지도 않았는데, 사업을 어떻게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28
- 이와 관련한 문화재청의 입장 및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28
- 2. (문화재청) 군함도(하시마섬)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은? 29
- 1)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유산군이 지난 7월 5일 한일 양국이 조선인 강제노동이 있었음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결정문에 명시기로 합의하면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으나, 일본은 등재 이후에 강제징용을 부인하고 ‘징용은 강제노동이 아니다’는 뜻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이러한 일본의 입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29
2) 강제노역 사실이 유네스코 등재 결정문이나 주석에 직접 표현되지 않고 주석의 레퍼런스 (참고)에 일본 측의 발언 형식으로 반영되어, 공식적인 권위가 떨어졌다는 지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29
3) 한국 정부의 당초 요구했던 강제노동의 뜻이 명확한 ‘forced labour’가 아니라 ‘forced to work’로 표현을 완화해 줌으로써 ‘일하게 됐다’는 식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주었다는 지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29
4) 노역을 강제한 주체가 정부인지 민간인지 불분명하게 표기 되었으며, 일본은 그간 특유의 모호한 어법이 한일관계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도 그러하다는 지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30
5) 후속조치의 이행에 관한 보장 장치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2017년 경과보고서 제출과 2018년 경과보고서 검토만을 약속받았을 뿐, 강제노역에 관한 정보센터의 운영 등 세구 실천 사항에 대한 합의가 전혀 없다는 지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30
6) 7월 6일자 <산케이>는 “외무성 관계자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위원회에서의 일본 측 발언을 재판에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한국 정부에게서 몇 번이나 확인 받았다고 한다. 외무성 관계자는 ‘한국 내에 여러 여론이 있다. 본 현장에서 확인함과 동시에 하이레벨에서도 확인했다’라고 심의를 하루 보류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라고 보도함	30
- 이와 같은 보도내용이 사실인지?	30
- 우리 정부가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유산군의 유네스코 등재가 목전에 닥치자 여론을 의식하여 뒤늦게 외교전에 뛰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치밀한 전략이나 대응 매뉴얼이 부재한 상태에서 한일간 교섭에 들어가 결국 일본의 잔꾀에 마려든 건 아닌지?	30
7) 군함도(하시마섬) 탄광 등 강제 동원돼 노역한 일제 산업시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데 대한 향후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31
8) 최근 언론은, “우리 정부가 이에 맞서 ‘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 기록’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함.	31
- 보도내용이 사실인지?	31
9) 현재 진행상황은 어떠한지?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31
3. 해외유출 문화재 환수대상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 집중적 환수 추진해야!	31
1. 광복 70주년을 맞았지만, 멀리 타지로 우리 문화재는 여전히 기약 없는 광복을 기다리고 있음	32
1) 문화재청 자료에 따르면(2014.8.31. 기준),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는 현재 조사된 것만	

16만342점에 이름. 그러나 이 숫자는 공개 혹은 조사된 것으로 공개되지 않은 개인컬렉션 등을 포함할 경우 더 많을 것이라는 게 문화재계 정설인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32
2. 해외 문화재 16만 342점 중 실태조사가 이뤄진 문화재는 4만5,000여 점으로 문화재 4개 중 3개는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32
1) 아직 실태조사 조차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11만5천점 이상의 해외 유출 문화재에 대한 향후 실태조사 계획은 어떠한지?	32
2) 더불어, 문화재청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개인컬렉션(개인 보관자료)의 경우 추가적으로 어떻게 조사, 파악할 예정인지?	32
3. 해외로 유출된 16만342점 중 협상, 구입, 기증 등 방법으로 환수된 문화재는 9,882점으로 6%에 불과함	32
1) 작년 5월부터 올 12월까지 문화재청은 정부차원의 효율적 환수를 위해 「환수대상목록」을 작성기로 하였음. 현재까지 어떠한 선정기준이 마련되었는지? 목록초안 작성 및 전문가 수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32
2)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중앙정부(문화재청, 외교부, 국립중앙 박물관 등), 지방정부, 유관 기관(국외소재문화재재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등), 민간단체(문화재제자리찾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등) 등의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함. 어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33
- 우선협상목록 확정 및 향후 추진방안 협의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33
4. 문화재 환수는 특성상 장기적인 대처, 다양한 활용방안,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함. 문화재청의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33
4. 문화재 특별종합점검 결과 반영한 즉각적인 조치 이루어져야!	34
1) 현재 유급사 삼층석탑에 대해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34
2) 즉시조치가 필요하다고 점검한 F등급 국가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포함) 총 20건 중, 30%(6건)에 대해서는 아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F등급 시도지정문화재 67건의 경우에도 28%이상(19건)이 아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즉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점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34
3) 보수정비가 필요하다고 점검한 E등급 문화재의 경우에도 총 1,413건 중 570건에 대해 아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35
- 보수정비가 필요한 문화재의 40% 이상 아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35
4) 6개월에 걸쳐 방대한 문화재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종합 점검을 실시한 부분은 큰 의미를 가짐.	35

- 하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애써 실시한 점검은 무의미함.	35
- ‘의사가 환자를 진찰만 하고,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점검결과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중요함.	35
- 향후, D·E·F등급 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청 조치계획을 10월 7일 문화재청 종합국감 전까지 의원실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
5.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체계적 운영 필요	35
1) 문화재 보호법 제50조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가·예능을 공개하고 있음	35
- 이러한 공개행사를 하는 그 취지와 의미가 무엇인지?	35
2) 월별, 지역별로 공개행사 개최현황이 크게 차이남	36
- (예능분야의 경우) 1월에는 단 1건도 공연도 개최되지 않고, 10월에는 18회나 공연이 개최되는 등 월별 공연 현황의 편차가 크게 나타남. 지역별로도 대구, 대전, 울산에서는 단 1건의 공연도 개최되지 않고, 서울, 경남에 편중되어 공연이 개최되는 등 지역별 공연 현황의 편차가 크게 나타남. 월별 지역별 격차의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36
- (기능분야의 경우) 1,2,3월에는 단 1건도 공연도 개최되지 않고, 7월에는 26회나 공연이 개최되는 등 월별 공연 현황의 편차가 크게 나타남. 이러한 이유가 무엇인지? 지역별로도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에서는 단 1건의 공연도 개최되지 않고, 서울에 편중되어 공연이 개최되는 등 지역별 공연 현황의 편차가 크게 나타남. 월별 지역별 격차의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37
3) 현재까지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제도가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있음	38
- 전통문화 계승자의 의무 및 책무와 관계없는, 공개행사 제반 행정업무(장소 섭외, 홍보자료 제작 등)가 전통문화 계승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대한 문화재청의 견해는 무엇인지? 이와 관련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38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을 제출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임. 더욱이 충실도 등을 평가하는 <기획> 관련 항목들은 모니터링 평가 항목이 아니라, 행사 사전에 사전검토가 되어야할 사항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39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홍보와 관련한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 홍보에 있어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따라서 모니터링 평가항목을 통해 언론보도 및 홍보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보유자들과 문화재청 간의 사전 논의를 통해 실질적 홍보와 관련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39

- 앞서 언급한 내용들을 포함한 모니터링 평가항목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39
- 몇몇 공개행사를 제외하고, 일반인 관객의 참여가 적어 공개행사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공개행사라는 취지에 걸맞게 일반인 관객의 참여를 증가시킬 방안이 무엇인지?	40
6. 문화재 현장체험 여비 등 예산 이용 부적정	40
1) 최근 3년간 “문화재 현장체험”에 대한 여비 집행 내역이 어떤지?	40
2) 「국가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같은 법 47조의 규정에 따르면 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간에는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41
2-1) 국회 등의 승인을 거치지 아니한 채 문화재 현장체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이 다른 일반사업비 예산을 이용하여 집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41
2-2) 해당 예산이 「국가재정법」 제47조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41
3) 앞으로 문화재 현장체험 여비는 기본경비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항이 다른 일반사업비 예산을 이용하여 집행하는 일이 없어야 함	41

〈박 창 식 의원〉43

1. 무형문화재 관리실태 지적	45
1) 전체 140여 종목 중에, 절반 이상이 보유자가 없거나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분들도 대부분 고령에 속합니다. 보유자를 지정하는 이유가 ‘무형문화의 전승’에 있는 만큼, 이러한 상황이라면 전승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보유자 충원에 차질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5
2) 보유자 전승실태, 전승지원금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5
3) 한 종목에 여러 유파가 있다면 유파인정을 하고 복수 보유자를 확대해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 한평생 전통문화를 연구하신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45
2. 남북 문화재 공동사업 관련(개성 만월대 발굴사업 중점)	46
1) 현재 남북 문화재 공동 발굴 사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	46

2)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 사업은 지난 2007년 시작으로 총 6차에 걸쳐 남북이 공동으로 발굴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46
3) 현재 개성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진행 상황은 어떠한가?	46
4) 특히, 올해는 발굴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단기가 아닌, 6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간의 조사에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46
5) 예산확보가 불안정하면 철저한 사업 계획 수립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보다 더 안정된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46
6) 이러한 사업은 하나의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남북한 주민 모두가 공유하여 내부적인 통합을 더욱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습니다. 광복 70년을 맞이하는 만큼 민족 동질성 회복과 실질적 협력의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47
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취업률 하락 지적	47
4. 문화재 안전경비인력의 전문성 확보 필요	48
1) 안전경비인력의 담당 문화재에 대한 전문 교육 미흡	48
2) 소방안전관리자격증 미소지자들의 자격증 취득 규정 및 정기적인 화재안전 교육 시행방안 마련 강구	48

<박 해 자 의원>49

1. 지방공무원 1명이 무려 문화재 10.9개 관리	51
-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관리직원 태부족... 관리소홀 우려, 전라남도 1명당 15.8개 최하위	51
- 문화재청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전담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해주거나 아니면 국가지정문화재만이라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51

<배 재 정 의원>53

1. 갈팡질팡하는 문화재 정책	55
1. 문화재는 보존과 복원이 우선시 된 이후에 활용해야 할 것임	55
- 서울역 고가도로가 서울역의 역사적 가치를 해친다는 것인가?	55
2. ‘빼앗긴 문화재’, 16만점이 국외로 떠돌고 있습니다. 광복 70주년이라고 하는데 환수해 온 문화재는 9959점, 단 5.8%만이 돌아왔습니다.	55
1)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올 예산은 얼마입니까? 이 가운데 환수사업 예산은 얼마입니까? 우리 문화재를 조사할 정규직원은 몇 명입니까?	55

3. 문화재청은 고궁 복원과 관련해서도 애초 세운 계획이 너무 예산이 많이 든다며 수정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든다면 청장 직을 걸고 대통령에게 직언하고, 다른 부처를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56
4. 창덕궁 낙선재 권역 숙박 체험 계획,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습니까? 지난달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에서 압도적으로 반대했죠? 기재부는 최종 예산심의 결과 전액 미반영 됐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56
2. 국립고궁박물관 유물 대여	57
1) 국립고궁박물관 유물 대여 신청 기관 환경 점검	57
3. ‘안전 불감증’ 고궁 야간개장	58
4. 유물전시관의 보존 환경	58
1) 대여 요청 유물전시관의 보존 환경	58
5.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쏘리는 곳만 계속 쏘린다	58
1) 천연기념물 동물 입소 건수가 2013년에는 770건이었는데 2014년에는 1,046건으로 276건 이나 증가했습니다. 갑자기 조난을 당한 천연기념물들이 증가한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인 구조활동이 늘어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58
2) 2014년 한 해 동안 천연기념물 동물치료 건수가 있는 곳은 27군데에 불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동물구조센터를 제외한 일반 동물병원을 살펴보았습니다. 일부 병원에 치료가 집중되고 덩달아 치료비 지급도 물리는 현상이 확인되었습니다.	59
3) 이상한 부분은 또 있습니다. 2013년보다 2014년도 대폭 치료 동물 수가 늘어나긴 합니다. 그런데 구조센터나 협회의 증가폭은 크지 않은데 일반 동물치료 건수가 164건에서 350건 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치료병원 19개소에서 16개소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자연환경, 기후, 병원의 설비 등이 그런 것들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감안해도 이상한 현상 아닙니까? 청장, 여기에 대한 원인 파악한 적 있습니까? 원인을 파악해서 확감 전까지 보고하여 주십시오.	60
4) 치료비 지급의 불균형 문제도 심각합니다. 아무래도 개인이 운영하는 일반병원은 우선 100% 지급하도록 하고,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물구조센터는 예산이 부족하 다보니 전부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급하지 못한 동물구조센터 치료비가 5,020만 원이나 됩니다. 청장,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한다해도 치료비를 제대로 받지 못 하면, 적극적인 구조활동이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예산 확보 노력을 적극적 으로 하기 바랍니다.	61

〈서 용 교 의원〉63

1. 문화재 특별점검 F등급 완료 67건 중 10건에 불과 65
 1. 2014년 실시한 문화재 특별점검 이후 F등급(즉시조치)을 받은 67건의 보수정비 사업 중 현재 10건만 완료되었음을 지적, 67건 모두 시도지정문화재로 타 사업의 보수예산이 있어도 지원해 줄 근거 없음. 65
 - 국가지정문화재는 빠른 조치를 취했으나, 시도지정문화재는 빠른 행정적 지원을 통해 보수를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지? 그냥 지자체에만 맡기고 있었던 것인지? 65
 - 문화재 보수절차 과정에 대한 이해와 빠른 보수를 위해 문화재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든지, 교육을 시켜서 빠른 절차 진행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65
 - 현재 문화재청에서 확보한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예산이 넉넉해도 예산을 매칭해 줄 근거가 없어서 못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 65
 - 문화재청은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해 원활한 재정지원을 위해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65
 - 행자부와 협의하여, 보통교부세로 받아도 ‘분권교부세 시절에 배정했던 보수 예산 수준에서 활용토록 한다’는 지침만 내려줘도 일부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는데? 66
2. 문화재 안전경비원 근로기준법 위반 심각 66
 1. 문화재 안전경비원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에 따른 향후 문제점과 개선방안 66
3. 폐사지 시발굴 조사, 5400여곳 중 3곳에 불과 66
 - 3-1. 법률의 해석상 명확한 지원근거가 없어 문화재적 가치가 예상되는 폐사지들이 그냥 방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는지?(법 제도 정비 : 매장 문화재 3조 단서 조항 수정) 66
 - 3-2. 폐사지 보존·관리를 및 폐사지 내 유물 등의 도난·분실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문화재 돌봄사업을 확대하던지, 추가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은지? 67
4. 궁능 외국인 관람객 불편사항 1위는 ‘자세한 설명이 다국어로 이뤄져야’ 67
 - ① 4대궁·종묘 관람확대에 따른 준비사항 점검 67
 - 청장은 야간 특별관람 가보신 적이 있는지? 67
 - 야간 관람 확대를 실시하는데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67
 -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안전관리 요원 배치와 문화재훼손 및 안전사고 예방 강화 방안은? 68
 - ② 외국어 서비스 불만족 ‘중국어’, ‘경복궁’에서 상대적으로 높아 68
 - 중국 관광객의 경우, 여행사 가이드와 함께 오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현장의 안내서비스가 왜 불편한지? 68

- 경복궁도 외국인이 특별히 불편한 점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68
③ 외국어서비스 미안내자 ‘물어볼 곳을 몰라서’	68
-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지?	68
- 창덕궁과 덕수궁 외국인 안내서비스 안내 계획은?	68
④ 관람시 불편했던 사항 1위는 ‘자세한 설명이 다국어로 이뤄져야’	69
- 궁안의 해설들이 꼭 외국어로 표기되어야만 할 필요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한국 궁능의 역사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다국어 형태로 홍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	69
- 현재 야간관람의 경우 외국인은 1일 100~200명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외국인 정원을 추가로 늘릴 계획은 없는지? 의견은?	69
- 장기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안내서비스를 강화하여 궁 야간관람이 한국의 대표적 관광 상품으로 자리잡고, 관광공사와 협업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어떤지?	69
- 끝으로 국민들에게 더 많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재 확대 개방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추가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지? 견해는?	69
5. 안전점검·정기조사·안전방재 연구까지 5명이 수행, 문화재 조사·안전방재 연구인력 충원이 필요함	70
1)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건조물문화재에 대한 안전점검, 정기조사, 안전방재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적하신바와 같이, 최근 관련 업무가 급격히 증가되었음	70
2) 문화재 조사·점검·방재연구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재 안전 방재연구 수행	70

〈신 성 범 의원〉71

1. 폭설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문화재청의 재난 매뉴얼	73
1) 문화재 훼손을 일으키는 재난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	73
2) 세부적으로 각 재난 유형별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매뉴얼이 있는가? 유형별로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73
3) 특히 폭설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화재나 폭우,낙뢰에 대한 피해는 별도의 매뉴얼이 존재하지만 폭설에 대한 대응책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73
4) ‘11년도는 총53건 중 18건인 33%, ’14년도 38건 중 40%에 해당하는 15건이 폭설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 폭설로 인한 피해복구예산만 5년간 27억8,025원에 달함. 이에 대해 보고 받은 적 있는가?	73
5) 폭설은 폭우나 폭풍과 달리 지붕 등에 눈이 계속 쌓이는 연속성을 갖는데다 누적된 눈 무게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실제 ‘14년에 부여 대조사 석조미륵보살입상	

(보물217호)이 설해로 훼손됨. 매년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대처 매뉴얼조차 없다는 것이 심히 우려스러운데 ? 문화재청의 세심한 재난 상황관리가 필요함. 폭설 또한 문화재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재난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람.	73
2. 바다에 잠들어 있는 해양문화재 수집만점... 수중전문가 양성을 위해 노력해야	74
1) 역사적 배경이나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다른 어느 나라 못지않게 많은 해양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신고된 수중문화재 현황은 어떻게 되는가?	74
2) 문화재를 발굴하고 보존·복원하는 작업은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우리 민족 최고의 재산을 확보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실제로 아직은 수중문화재 발굴실적은 매우 미흡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74
3) 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수중발굴에 투입되는 최소인력은 9명인데 실제로 수중발굴에 투입된 인원현황을 살펴보면 이보다 적은 인원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75
4) 현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적학과에서 부분적으로 수중문화재를 교육하고 있는데 육지발굴과 수중발굴은 엄연히 큰 차이가 있지 않나?	75
5) 수중문화재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습득에서부터 관련 장비의 작동, 그리고 수중발굴의 실습과 보존처리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함	75
6) 앞으로 수중문화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므로 발굴인력들이 조사하고 연구할 수 있는 첨단 조사장비를 도입하고 발굴된 문화재를 보존처리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추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75
3. 문화재 상시관리인력 전문성 강화 위해 노력해야	76
1) 문화재 상시관리활동사업은 경미하게 훼손된 문화재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사전 예방적 문화재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사후보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과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76
2) 실제로 제초나 청소 등 일상관리 관리업무 비율은 높고 문화재 훼손 예방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은 저조한 상황인데 사업 본래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나?	76
3) 문화재 훼손 상태를 상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과학적인 모니터링 뿐 아니라 전문적인 분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서울, 부산, 울산 등은 문화재 상시관리 활동의 전문적인 분야로 볼 수 있는 모니터링 실적이 전문한 상황인데?	76
4) 또한 전국 평균 문화재돌봄사업단원이 1인당 담당하는 문화재 개소는 몇 개소인가? 1인당 몇 개소의 문화재를 담당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가?	76

- 5) 현재 문화재돌봄사업 상시인력은 몇 명으로 파악하고 있는가? 상시관리 근로자 중 문화재 자격증 소지자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77
- 6) 문화재 상시관리 업무에는 제초, 청소 외에 모니터링, 경미한 수리 등도 있으며 이러한 업무는 일정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됨. 이에 지역별로 적정 규모의 문화재 기능 자격자 채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77
- 7) 문화재 기능자격자 채용이 예산(인건비) 등의 문제로 어렵다고 판단될 시 대안은 있는가?
→ ‘14년 문화재 돌봄사업 지침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급여 165만원 + 자격증 수당 20만원 수준임. 15년 하반기 문화재기능자 노임 평균 19만원/일 임 77
- 8) 각 단체별로 실시하고 있는 문화재 돌봄사업 자체교육의 경우 이론적인 소양교육 등에 불과한데 돌봄사업의 취지에 걸맞기 위해서는 실무 적용이 가능하도록 실습교육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77
- 9) 이마저도 1%안의 적은 예산으로 문화재 훼손 예방 및 전문 모니터링을 담당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78
- 10) 청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경우에도 교육기준 및 지침 등의 커리큘럼이 없어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보이는데 이들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 교육기관의 통일된 교육운영이 필요 하다고 보는데? 78
- 11) 문화재 돌봄단체의 모니터링 및 결과 분석 등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는 유능한 청년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육성하여야 하는데 문화재청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78

〈안 민 석 의원〉79

1.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쓸 돈을 문화재 수리비에 썼다면? 어플 3개 개발하는데 20억원 평평 81
 - 1) 3개 앱(창덕궁, 덕수궁, 경복궁)을 합치면 무려 20억 원에 달하는데 그럴만한 건지? ... 81
 - 2) 단순한 이미지·동영상, 위치기반 서비스 밖에 없으며, 정작 다운로드 건수도 많지 않음 81
 - 3) 지금 개발하고 있는 ‘내 손안의 창경궁’ 앱을 4억원 가까이 들여서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81
2. 현재 천연기념물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음 82
 - 1) 청장님, 우리 천연기념물도 문화재청에서 관리해야 할 대상 아닙니까? 82
3. 문화재청, 상명대, 문화재위원 관련업체 총체적 비리 공범 유착의혹 관련 82

1) 고위직공무원 유착 및 이권사업 개입 등	82
2) 문화재위원, 문화재수리기술자 출제 및 면접자격 특혜	83
3) 국고연구, 용역비 횡령 및 상명대 한인건축연구교수 허위계약 결과물 착취, 지자체 이권개입 등	83

〈안 홍 준 의원〉85

1. 문화유산의 사각지대, 해양문화유산조사 활성화해야!	87
1) 섬문화유산조사	87
2) 수군진유적조사	87
3) 문제점 및 향후 계획	87

〈염 동 열 의원〉89

1. 전통문화유산, 한류의 옷을 입다!	91
1) 향후 계획 중인 문화재 해외 전시는?	91
2) 2018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우리나라 문화재를 전시하여 약 5만여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관람할 수 있게 하는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91
3)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 진품을 원래 위치였던 오대산에 전시한다면 사고본 환수를 위해 노력한 강원도, 평창, 월정사 모두에게 아주 뜻 깊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사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람.	91

〈유 기 홍 의원〉93

1. 태릉선수촌 문화재 지정은 어불성설	95
1. 대한체육회가 신청한 태릉선수촌 내 건물은 50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물로 있음, 50년이 미경과된 건축물을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나?	95
2. 태릉선수촌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것인지, 태릉선수촌 철거계획을 이행할 것인지?	95
2. 문화재청, 천연보호구역 보호의 관점으로 설악케이블카 문제 다뤄야	95
1. 문화재청은 케이블카를 보는 관점을 오직 천연기념물, 천연보호구역 보호에 맞춰야 함. 그렇게 하겠는가?	95

〈유 은 혜 의원〉97

1. 여전한 압표상들, 제재 않는 문화재청 99
2. 4년 동안 5배 뚝 기관장 성과급 99
3. 외국인 관광객 흡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100
 - 1) 국립고궁박물관의 외국인 관람객 유치를 위한 조치 필요 100
4. 한옥스테이로 지정된 20개의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 용도변경을 위한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101
 - 건축법상 한옥체험업은 용도변경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방관하는 것은 문화재청의 안일한 대응임 101
 - 한옥체험업으로 지정된 문화재들의 현상변경을 확실히 시행하고, 지자체에는 명확한 지침하달이 필요함 101

〈유 인 태 의원〉103

1. 문화재감정위원 1명당 문화재감정 건수 1000건? 문화재가 해외로 밀반출 되어도 알 길 없어 105
 - 1) 문화재감정건수에 비해 문화재감정위원의 수가 부족하고, 문화재 감정위원이 특정 분야에 치중되어 있고, 화상감정실적과 해외 밀반출 단속현황도 적음. 우리 문화재가 해외로 밀반출 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정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고 보는데 105

〈윤 관 석 의원〉107

1.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공주 공산성, 땀질식 보수 공사이후 성곽 배부름 현상 더욱 심화 109
 - 1) 1,400년 동안 금강변에서 멀쩡히 잘 있던 공산성이 4대강 사업 때문에 이렇게 망가져도 제대로 복원이 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109
 - 2) 4대강으로 망친 문화재 일시적으로 땀질 복원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만 하면 되는 겁니까, 또 무너지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109
 - 3) 문화재청의 수장으로서 전면적인 재조사를 민간 전문가, 학계, 관이 함께하는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110
2. 창덕궁 낙선재에서 숙박업, 경복궁 소주방에서는 식당 운영하겠다는 문화재청 110
 - 1) 올해 5월부터 총 3차례에 걸쳐서 기획재정부에 창덕궁 궁스테이와 경복궁 외소주방을 식당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약 76억원 가량 요청하셨더라고요. 제 말이 맞습니까? 110

- 2)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궁스테이를 하는데, 창덕궁 안에, 전기 들어오고, 서양식 양변기가 있고, 싱크대 같은 주방 시설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조선의 궁궐 생활상입니까? 아니면, 그냥 개량한 한옥스테이 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 한옥스테이도 이렇게까진 안하는데, 청장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110
- 3) 보통 이런 하루나 이틀 머무르는 스테이 사업은 하나의 생활, 전통, 우리 문화를 체험하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조계종에서 하는 템플스테이를 해도 제가 템플스테이 하는 데에서 내부에 서구식 양변기, 싱크대 같은거 두고 한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 봤어요. 이게 의미가 있겠어요? 110
- 4) 내부 다 뜯어고치고, 창덕궁에서는 편안하게 숙박을 하고 외소주방에서는 식사를 하는 이런 사업 아이디어, 누가 낸겁니까? 문화재청 내부에서 나온거예요? 아니면 밖에서 사업자가 들고 온 거예요? 청장 말씀해 보세요! 이거 문화재청이 직접 운영하려 한겁니까? 아니면 민간업자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려고 한겁니까? 111
- 5) 기본적으로 운영방식이나 계획, 수익 모델이 나왔으니 구체적으로 리모델링 방안과 활용 방안도 제시한 것이라고 보이는데, 기재부에 예산도 신청하고 사적분과위에 현상변경 신청도 한 것 아니예요! 말씀에 보세요. 누구 아이디어예요? 111
3. 문화재보호기금 112
- 1) 문화재보호기금법의 최초 취지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현재 문화재 보호기금이 어떤 재원으로 얼마나 마련되어 있는가? 112
- 2) 제정 이후 5년 안에 5천억 원의 기금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2015년 현재 기금 운용자금은 389억 원으로 5천억의 8%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113
- 3) 특히, 아·태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문화재연구소(R&D)사업은 매년 각각 200억이 넘는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문화재의 긴급 보수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이라고 청장은 생각하십니까? 113
- 4) 문화재보호기금은 최초의 취지대로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만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함. 청장도 같을 것임. 일반사업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처리하고, 문화재보호 기금은 긴급을 요하는 일에만 쓰면서, 최초 목표인 5천억 원의 기금을 먼저 조성한 후 그 운용수익으로 기금을 운용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114
4. 울산시, 식수원 부족 주장 근거 없다는 국토부 결론에도 카이네틱댐 설치에 수백억 예산 낭비하는 문화재청 114
- 1) 문화재계 전문가들은 카이네틱 댐이 반구대 암각화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고 문화재적 가치를 현격히 훼손시킬 것이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으며, 카이네틱 댐을 설치할

경우 세계유산 등재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115
2) 식수원 부족이라던 울산시의 핵심 주장, 2011년 국토부 보고서에서 근거 없음으로 드러났고, 울산시민, 학계 등에서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해 카이네틱 댐은 안된다는 입장인데 지금이라도 재검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115
5. 지난 7년간 문화재 도난 1만453점 달해, 같은 기간 회수는 746점으로 회수율은 7% 그쳐	115
1) 2008년 이후부터 2014년까지 7년 동안 도난당한 문화재가 10,453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회수한 문화재는 746점으로 그 비율이 7%에 불과한데, 이 사실을 청장은 알고 계십니까?	115
2) 이렇게 문화재가 한번 도난당하면 찾기도 힘들뿐더러, 국외로 반출된다면 다시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6
3)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문화재 도난방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지 시설은 CCTV설치라고 생각하는데, 관련 예산이 2008년에 비해 올해 1/5수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확충하여 우리 문화재 도난 방지에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청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116
6. 친일인물 관련 문화재 등록 21건, 여전히 친일 행적에 관한 명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116
- 이광수, 최인규, 주요한, 이능화 등 친일인사 물품 21건, 문화재청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	116
- 해당 문화재의 시대적, 예술적 가치를 고려하여 등재·보존은 하되, 친일인사의문화재라는 것을 확실히 명기하여 국민의 역사관 확립해야	116
7. 행정처분 받은 문화재수리업체 문화재 수리용역 수주에 아무런 문제없이 활동 중	117
1) 문화재수리기술자나 수리업체들이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이후에, 문화재청이나 지방 문화재수주에 있어서 아무런 패널티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영업기한 제한을 두게 됩니까?	117
2) 국보1호 복원을 망친 업체가 겨우 15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니 다른 곳이야 말 할게 뭐가 있겠습니까만, 그럼에도 부실한 보수, 허위 감리, 자격증 대여 남발 같은 부분은 확실하게 처벌을 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118
3)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처벌만 강화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동안 우리 문화재가 많이 훼손되고 이에따라 복원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개선은 안되고 현상유지도 못한채 자꾸 뒷걸음질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서는 제2의 숭례문 복원부실사태가 재발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청장께서는 수리복원업체, 감리업체, 기술자, 기능자들이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만드셔서, 추후 확감 때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
8. 칠백의총 소장유물 습기에 부식되고 먼지 쌓여있어	119

1) '13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중봉선생교지(보물) 등 167점의 유물 소독, 포쇄 실시하지 않아 관리 부실	119
2) 1960년대 제작한 현판 등 보관자료가 습기, 먼지에 노출되어 있어	120
3) 향온, 향습장비 도입 및 수장고 확충 등 유물 관리체계 개선 필요	120
4) 개인이라든가 주요사찰에 보관된 국보가 많은데 관리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조사·감독하고 모니터링하는 민간 모니터단 제도라도 만들어서 문화재청, 민간 가릴 것 없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120
9. 천연기념물 보호방안 없이는 설악케이블카 허가 불가해	121
1) 문체부와 문화재청간 회의를 진행한 바 있죠?	121
2) 문화재청 자료를 받아보니 지난 1월 27일에 있었던 케이블카 확충 T/F 4차 회의가 마지막이라고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관련 자료를 보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절차 이전에, 문화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담기 위해, 문화재위원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 분과위 통과를 위해서 관련 준비를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결정이 지난 1월에 있었으니 그 사이에 반드시 컨설팅이든 대책회의든 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121
3)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지역이 지금 천연기념물 제171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지?	121
4)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천연기념물 보호, 그리고 산양 보호에 적합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정부에서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면 문화재위원들이 객관적으로 심사를 할 수 있겠어요?	121
5)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장밋빛 전망을 했던 4대강 사업은 22조원의 혈세를 퍼부어서 결국 환경훼손, 수질오염, 녹조라떼, 매년 수십, 수백억원의 추가 혈세만 투입하는 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케이블카 사업도 마찬가지로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어요. 결국 자연은 훼손하고 장사도 되지 않는 그런 최악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문화재위원들의 객관적인 심사가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심사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122

〈운 재 옥 의원〉123

1.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결정 평가방법 문제	125
1) 보존조치 여부 객관적으로 평가돼야	125
2.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전수교육 문제	125
1.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관리·감독 부적정	125

1) 문화재청은 전승지원금이 인건비 등으로 과도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전승지원금 집행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향후 전승지원금이 부적절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	125
2. 전수교육 실적관리 미흡	126
1) 보유자뿐만 아니라 보유자가 없는 개인종목의 전수교육조교도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허위 실적보고를 하지 않도록 이를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함	126
3. 지자체 문화재 관리체계 문제	126
- 문화재청은 각 지역 문화재 비율에 맞게 충분한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현 문화재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함. 또한, 지자체의 인력·재정 부족 문제로 인해 국가지정문화재 관리가 소홀해져 부실관리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문화재 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지자체 문화재 관리팀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 지역별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견해는?	126
4. 오구라 컬렉션 문화재 환수 문제	127
1.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지금이 반환해야	127
1) 올해가 한일협정 50주년인데, 도쿄국립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한반도 문화재인 오구라 컬렉션을 반환을 요구하기 가장 적기임. 일본으로 반출된 문화재가 전부 도난당한 것은 아닐 것. 어떤 이유로 어떤 방식으로 일본에 반출됐는지 철저히 연구·조사하고, 불법으로 반출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문화재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재청이 적극 노력해야 함	127
5. 경찰청, 문화경찰과의 유기적 협조 필요	127

〈이 상 일 의원〉129

1. 전국 17개 사적문화재 조사결과 전기설비 75.6%가 ‘부적합’ 안전사고 우려	131
1) 지난해 전국 17개 사적문화재 전기설비 실태조사 결과 75.6%가 ‘부적합’ 시설을 받았으며, 이 중 37.6%는 ‘매우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 전기 안전사고 우려되는 상황으로 대책마련 필요	131
2) ‘안동 도산서원’은 안전성, 경관성, 안전관리 등 총 13항목 중 11개에서 ‘매우 부적합’ 했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서원이지만 전기시설은 17개 사적문화재 중 가장 불량해 전기 안전사고 위험이 큰 상황임. 확인결과 3천만원을 긴급배정 해 이번 달에 공사가 시작된 다고 함. 현재 추진상황과 다른 안전사고 위험은 없는지	131

2. 전국 354개 봉수유적 중 88%가 비지정문화재 방호벽, 출입시설 허물어지는 등 관리 안돼	132
(1) 전국에 약 400여 개소의 봉수대 유구가 남아있다고 함. 잊혀진 봉수문화재에 대해 역사적 가치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132
(2) 봉수유적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선 비지정 된 봉수유적을 지정문화재로 등록하고, ‘불량’한 봉수대는 복원정비계획을 세우는 등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할 필요가 있음. 어떻게 생각하는지?	132
(3) 시도지정문화재지만 지자체의 관리 부실로 흔적만 남아 있는 봉수유적도 있음. 보고서에 따르면, <창원 사화랑봉수대>는 잔존 유구도 멸실되었고 보존상태는 흔적만 남아있는 상태임. 복원계획이나 학술조사도 없이 방치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됨. 봉수대 옆과 내부에는 나무와 수풀이 우거져 있고 방호벽도 흔적만 남아 있음. 지정문화재로 등록돼 있으면서 관리사 부실한 이유는 무엇인지?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관리체계를 둘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132
(4)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지만 비지정문화재다보니 관리가 안돼 방치되고 있어 언제 멸실될지 모르는 봉수유적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데?	133
3. 日 ‘하시마섬’ 강제동원 역사 왜곡 진상 알리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기록물 유네스코 등록 철저히 해야	133
1) 일본의 하시마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사실상 방조했다는 비판이 있음. 외교 당국에서 자화자찬 했던 ‘강제노동’ 문구 표기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등재 직후 강제 노동을 의미하는게 아니라고 반박함. 역사수정주의를 앞세운 일본의 치밀한 준비에 대해 우리 정부가 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임. 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나?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가?	133
2) 문화재청은 지난달 31일 마감된 ‘2016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대상 기록물 공모’에 접수된 등재 신청 후보 12건 가운데 ‘일제 강제동원 피해 기록물’ 33만 6797건이 포함됐다고 13일 밝혔음. 향후 추진 계획과 가능성은 어떠한가?	134
3)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문화유산 주무부처로서 관련 부처와 국회, 언론 등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기록의 유네스코 등재를 반드시 이뤄내야 할 것임.	134
4. 중요무형문화재 중 일부 종목은 전승단절 위기에 있음	134
1) 보유자가 없는 18개 종목 중 배첩장과 이리향제줄풍류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재기간이 2년이 넘었음. 제주민요의 경우 2000년 이후 15년동안 보유자가 없는 상태고, 영산쇠머리대기 10년, 명주짜기 9년, 바디장 8년, 곡성의 돌실나이 7년 등 보유자가 장기간 없어 실제 단절됐다고 볼 수 있는 상태임. 부재기간이 이렇게 장기화되는 이유는?	134
2) 전수조교의 연령대가 인간문화재와 비슷한 수준인 것도 문제임.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조교는 294명이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61.7세로 나타남. 60세 이상 전수조교가 162명이며 80세	

- 이상도 11명이나 됐음. 30대 전수조교는 3명에 그쳐 전수조교의 고령화도 심각한 상황임. 인간문화재와 전수조교의 평균 나이 차가 9세에 불과해 전통을 이어갈 후진 양성이 시급함.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135
- 3) 전수조교뿐 아니라 이수자·전수장학생 등 문하생이 2명 이하인 종목은 줄타기, 문배주, 경주교동법주, 명주짜기, 바디장, 전통장, 제주민요, 소반장, 사기장, 주철장, 염장, 한지장 등 12종목임. 문하생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전승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의미함. 문하생을 늘릴 방안은? 또한 이수자와 전수장학생 수가 예능이 기능보다 5배가량 많음. 예능엔 집계되지 않은 전수단체 소속 인원이 많아 이 같은 격차는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음. 불균형의 원인은 무엇인가? 대책은? 135
- 4)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주는 전승지원금도 지자체별로 차이를 보임. 서울을 보유자에게 매월 120만원의 전수지원금을 준 반면 울산은 70만원으로 가장 적었음. 표준화된 지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견해는? 136
- 5) 인간문화재는 문화재청으로부터 매월 131만7천원의 전승지원금을 지급받음. '11년도 100만원이었던 것이 '12년 125만원으로 오른 후 '13년에 동결되었다가 '14년에 131만7천원으로 오른 것임. 그러나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들이 많아 사실상 전승지원금은 생계유지비로 사용되는 게 현실임. 전승지원금 이외에 지원방안은 무엇인가? 136
- 6)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활동이나 예능·기능 전수가 불가능할 경우 인간문화재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명예보유자로 인정됨. 2005년 처음 도입된 이후 48개 종목 65명이 명예보유자로 인정됐으며, 이 중 37명이 사망해 현재 28종목 28명이 남아 있는 상태임. 이들의 평균 연령은 85.1세로 매월 10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받음. 이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전승활동 등 다른 지원은 없는가? 137
- 7) 전국 136개 전수교육관에는 중요무형문화재 95개, 지방무형문화재 152개 종목이 입주해 있음. 다만 전수조교나 수익이 없는 종목들은 교육관에 입주하더라도 관리비조차 못 낼 형편이라고 함. 수익의 다변화가 필요한데, 어떤 대책이 있나? 137
- 8) 2014년 10월 문화재청에서 전체 이수자 4,131명 중 응답자 1,3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자현황 설문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전승활동 중단자 중 복귀의사는 '없다'가 51.9%였음. 복귀 시 전제사항은 '전승활동 기회 제공'이 49%에 달했음. '경제적 지원' 27.5% 보다 2배가량 많은 만큼 충분하지 못한 전승활동 기회가 이들의 전승활동을 중단시켰을 가능성도 추정해 볼 수 있음.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이수자로서 문화재청에 바라는 사항은 '경제적 지원'이 21.0%, '활동무대 확대'가 20.6%였음. 경제적 지원과 기회 제공을 가장 절실히 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의견에 대한 입장과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138

<이 종 훈 의원>139

1. 문화재사범은 활개, 문화재청은 파악도 못해 141
 - 1) 경찰청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청과 문화재청간의 통계 현황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검거 현황 뿐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인 문화재 사범 범죄원인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141
 - 2) 문화재청 내 문화재사범을 단속하는 특별사범경찰은 단 3명(대전지검 위촉)에 불과한 실정. 단 3명의 인원으로 얼마나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는지 의문? 주요임무와 달리 단순 자문 역할에만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141
 - 3) 문화재사범 단속활동에 쓰이는 예산(1억 5백)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예산 내역 또한 동영상 제작에 비중을 둔 사용이 아닌, 도난·회수와 같이 항목을 세분화 하여 직접적인 사범단속 활동에 쓰이는 비용을 늘려야 하는 것은 아닌지? 141
2. 사라지는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투자확대 필요 142
 1.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현황 142
 - 1)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제대로 된 전승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승지원금이 부족. 최근 10년간을 봐도 상승분이 높지 않으며 현실화 되어 있지 않음. 문화재청 훈령 제 345호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근거하면 문화재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전승지원금을 산출하고 있다고 함. 최근 지원된 금액인 131만 7천원의 산출 근거는 무엇이며, 현재 무형문화재의 재산 상황 및 수입을 파악하고 지급 하는가? 142
 2.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투자 확대 필요 142
 - 1) 현재 전승지원금 지급은 전승취약종목을 제외하고, 같은 액수로 지급되고 있음. 현재 지급되는 전승지원금이 운영비, 재료비, 생계운영비로 세분화되어 지급되는 방안은 고려 하고 있는가? 또한, 감사원 지적 결과와 같이 전승지원금 부적절 사용에 대해서 사후관리 방안은 마련하고 있는가? 142
3. 전통문화대학교 전임교원 확보율 부족문제 143
 - 1) 금년 교육부가 실시한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주요한 평가항목 중 하나인 ‘전임교원확보율’ 인데 지난 3년 동안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전임교원확보율은 지속적으로 하락되고 있습니다. 전임교원확보율을 100% 채우려면 몇 명의 교수를 더 확보해야 하는지? 정원확보 방안은? 143

〈정 진 후 의원〉145

1.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문화재 정기조사 부실의혹, 부실 정기조사로 송산리 고분 훼손 방지 조례 147
 - 1) 공주 송산리 고분군 등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정기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관계자의 책임 여부를 따져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할 것 147
 - 2) 2012년도 정기검사 및 2014년 특별점검, 현재까지 모니터링에 따른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 및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대한 정비계획을 제출할 것 147
2. 문화재청 담당 직원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티에프 회의 참가 149
 - 1)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심의해야할 문화재청의 담당 간부들이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정부부터 티에프에 참가한 것은 적절한 행위인가? 149
 - 2) 문화재현상변경 심의를 하면서 사업 신청도 하기 전에 사업자와 문화재청 관계공무원이 함께 대책회의 비슷한 걸 한 적이 있나? 청장, 다시 한 번 묻겠는데 담당 책임자들이 참석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지요? 149
 - 3) 문화재현상변경허가와 관련해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는 신청한 이후에도 사업자가 문화재위원들을 미리 접촉하는 사례가 있는가? 또 문화재위원들은 사업 이해당사자들에게 그 사업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자문해주는 사례가 있는가? 149
 - 4)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위원들도 심의를 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도 나가야 하고 산양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야 하는 등 신중한 조사가 뒤따라야한다는 의미인데, 설악산 케이블카 티에프에서 문화재청 담당 책임자들을 부른 이유는 미리 문화재청을 압박 하려는 것 아니었는가? 150
 - 5) 국립공원위원회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심의를 하며 전례 없이 1차 회의에서 표결을 강행해 처리했음. 그런데 문화재심의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의결해왔지 표결처리하는 경우가 없음. 문화재심의위원회가 외부 압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원칙대로 심의할 수 있는 방안은? 150
 - 6) 민간 시민단체, 환경단체등에서 제출한 연구조사 자료, 데이터 등이 정부와 사업자측 자료와 함께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방안은? 150
3. 드라마 오락프로그램 문화재에서 촬영 빈번, 세계문화유산 등에서 마구잡이 촬영. 상업적 촬영 규제 강화해야 150
 - 1)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촬영 및 행사 개최에 대한 상세 현황을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할 것	151
2) 촬영 및 행사 개최 등 국가지정문화재, 세계문화유산 등의 물리적 훼손 방지 대책과 문화적 가치 훼손 방지 대책을 마련해 보고할 것	151
3) 무분별한 촬영 및 상업적 이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검토해 보고할 것	151
4. 문화재수리 입찰제도 개정안 종합건설업체 대형업체에만 유리 중소기업 고사 우려	151
1) ‘문화재수리 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초안)’은 문화재수리 업체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16일 문화재청이 개정한 ‘문화재수리업 기술능력 보유요건’ 완화 내용과 배치되는 것 아닌가?	152
2) 문화재 부실공사가 사회문제로 제기되는 등 국민의 지탄을 받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은 수긍함. 그런데 현재 우리 문화재수리업 실태는 중소기업 구조로, 문화재청의 입찰제도 변경으로 문화재 수리업체 80% 이상이 점수 미달로 입찰에서 탈락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152
3) 문화재청은 현재 파악하고 있는 문화재 수리업체 수는 397개라고 답변했음. 그런데 업계 관계자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 463개임. 문화재청은 업체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정확한 업체수는 몇 개인가?	153
4) 또한 문화재청은 이들 업체의 공사실적, 수주실적, 매출액, 직원 수, 기술자·기능자 보유수도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함. 청장, 사실인가?	153
5) 본 의원실이 조사한 ‘공사금액별 문화재 입찰 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8,000만원 이상 공사는 462건이었고 낙찰 업체는 196개 업체였음. 2013년도에 519건이었고 낙찰업체는 189개 었음. 즉 200여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한 업체 당 연간 평균 10억 원 정도의 공사를 수주하고 있는 것이 현 문화재수리업의 현황임.	154
※ 문화재청의 개정안에서는 8,000만원 미만 공사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	154
문화재청은 이제야 문화재 수리업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는데, 이처럼 관련업계에 대한 실태도 모른 채 입찰 제도를 변경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문제 아닌가? 또한 연간 평균 10억 원의 공사를 수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개정안대로 적격심사 요건을 강화한다면 생존할 업체가 몇 개나 되겠는가? 결국 적격심사가 강화되는 것은 대형업체에만 유리한 입찰제도로 대다수 중소 신규업체가 고사되거나 도산할 우려가 높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은 있는가?	154
※ 문화재청도 업계 선두그룹 낙찰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 이를 보완한 개정법안을 발의(2012.12)했다고 함. 또한 주변정비 등 기술력이 덜 요구되는 공사에 대해선 기존 낙찰자 심사 적격심사를 혼용해 신규 및 중소기업에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함	154

6) 부실한 수리를 방지하려는 취지는 공감하나 개정안처럼 강화된 적격심사는 숭례문이나 국가를 상징하는 문화재수리에나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또한 우리나라 건설업 상위 100개사인 1군 건설업체들도 수리기술 자격증 보유자 2명 기능 자격증 보유자 3명을 채용하면 문화재수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는데, 문화재 전문수리업체 보호 방안은 무엇인가?	155
※ 문화재청 = 최저가 낙찰에 따른 문화재 수리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마련한 것임. 문화재를 3등급으로 나눠 시행. 1등급은 3억원 이상, 규모, 난이도를 종합적으로 산출해서 등급 지정할 예정. 약 10% 정도가 해당함	155
7) 적격심사와 관련 문화재청은 기준만 제시하고 발주자(대부분 지자체)가 적격심사를 함. 그런데 지자체의 문화재 관련 공무원은 1~2명에 불과한데 제대로 된 적격심사가 가능한가?	155
8) 문화재청은 이와 관련된 축적된 자료도 없다고 함. 현재 시뮬레이션 할 계획이라고 함. 그렇다면 당장 적격심사를 시행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닌가?	156
9) ‘초안’에서 중소기업에 불리한 내용을 재개정할 것	156
10) 문화재업체의 의견을 먼저 청취한 후 제도개선을 실시할 것. 문화재업체의 의견 청취 계획을 보고할 것	156
5. 긴급수리 요구 지적된 시도문화재 조치 더더	157

〈조 정 식 의원〉159

1.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실태조사	161
1. 2009년 실시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실태조사 연구용역” 이후 용역 결과에 따라 논의된 내역 및 추진 정책현황	161
2. 2010년 상반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실태 현지조사”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논의된 내역 및 추진 정책현황	161
2. 압수물 감정 평가 관련 현재 압수귀속 유물은 검찰조사 후 결과에 따라 국가귀속됨. 국가귀속 이후에는 사건 발생 소재지의 문화재청 소속기관이나 국·공립박물관으로 이관됨. 그런데 압수되어 국가귀속된 유물에 대해서 검찰조사시 감정평가 받은 내용을 전달받지도 않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가치평가를 하지 않고 있어 해당 유물의 가치에 따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161
1) 압수유물의 감정평가에 대한 문화재청에서 논의한 현황과 논의자료, 추후 도입 계획	162

2. 문화재청이 검찰에 압수유물에 대해 감정평가한 자료를 요구한 사례가 있는지, 있는 경우 해당 공문서 사본과 붙임 자료를 제출, 검찰에서 감정평가서를 문화재청에서 이관하지 못하는 근거	162
3.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관리지침 마련 및 현장조사 요구	162
1.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시 현지조사 실시 여부	162
2. '03년 감사원 감사 조치요구 사항이었던 전수교육관의 건립 및 운영관리지침 여부 및 관련해서 내부 논의 및 진행 내역	162
3. 현재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시 사업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및 선정을 함에도 사업선정 심사위원회의 운영 규정이 없음.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음. 사업선정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마련하고, 회의록 작성해서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반영할 것	163
4. 추후 전수조사 계획 및 진행상황	163

〈한 선 교 의원〉165

1. ‘한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길 열렸지만... 문화재청 여전히 ‘소극적’	167
2. 어렵게 고국 났은 환수문화재 국가문화재 지정은 1%도 안돼. 84%는 대국민 공개 없이 박물관 수장고에 잠들어	167
1) 환수문화재의 지정 추진이 부진한 사유는?	167
2) 환수문화재 지정 관련 향후 계획은?	168
3) 환수문화재의 전시활용 방안은?	168
3. 문화재청에서도 외면 받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졸업생들	168
4. 서원·향교 문화재 활용사업 확대 시행 및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 등을 통하여 체류형 프로그램 확대 필요	169
5. 문화재청 중북·유사 연구용역 18건(12억원) 중복 예산낭비 문화재청 통합적 정책기능 강화 필요	169
- 문화재 정책분야 전문연구기관을 육성하여 장기적인 문화재 정책을 수립하고, 통합적인 정책연구기반을 구축하여 예산이 합리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고 보는 데 견해는?	169

강 은 희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활용정책과 / 한국문화재단
담당자	김대훈 사무관 / 홍정완 팀장
연락처	042-481-4741 / 02-2270-1110

1. ‘한국의집’, 각 국가별 맞춤형 전략 및 콘텐츠 다양화로
안정적 수입 확보해야

1) 재단 수익사업 중 ‘한국의집’ 경우, 지난 3년간 감소추세에 이어
작년에는 1억 4,7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특히, 식음료와 공연 부문에서의 손실액이 6억원을 넘는데, 이유는?

- 한국의집 식음료의 경우, 외식업체 경기하락 및 경쟁심화, 세월호 사건 이후 민간소비 위축의 장기화 등으로 이용객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내국인의 비율이 감소했고, 외국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일본 이용객이 꾸준히 감소한 것을 주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 공연의 경우, 주 고객이었던 외국인 수가 2012년 대비 절반 정도로 감소했는데, 외국인 중에서도 주 관람객이었던 일본 이용객이 급격히 감소한 것을 역시 주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외국인 감소, 특히 일본 이용객이 급감하고 있는데, 원인은?

- 엔저 및 한일관계 악화 등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일본 이용객을 제외한 중국, 미국, 유럽 등 다른 나라 이용객은
점차 증가하고 있어, 해당 국가에 대한 수요 및 홍보 방안 등
전략적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재단은 일본을 포함한 각 국가별 맞춤형 전략, 콘텐츠 다양화 등을 통해 홍보 강화 및 마케팅 강화 방안 등을 마련, 안정적인 자체 수입의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안정적 수입 확보를 위해 특정 국가 관광객 중심의 마케팅에서 탈피하여 구미, 중국 등으로 다양화 마케팅 전략을 강구하는 한편, 내국인 이용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오·만찬 및 일품 메뉴 개발 및 그에 따른 서비스 개선 등의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 국가별 다양화 마케팅 전략

- 중국 · 동남아

- 방한 상품조사를 통한 한국의집 해외홍보마케팅 다각화 추진
 - .. 대만 여름 여행상품 : 경성천하 여행사 등 9개 여행사 상품조사·분석
 - .. 대만 겨울 여행상품 : 강북 여행사 등 4개 여행사 상품조사·분석
 - .. 홍콩 여름 여행상품 : EGL 여행사 상품조사·분석
 - .. 중국 겨울상품 : CITS 여행사 등 3개 상품조사·분석
- 개별여행객(FIT) 및 인센티브단체 유치에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 .. 방한 관광시장 상품 개발하여 중화권 주요 매체 대상 광고 홍보 : 한차오, 한유망, 짜이서울
 - .. 중화권 온라인채널 활용 홍보마케팅 강화 : 웨이보(Weibo) 지속운영
 - .. 유관기관 중국어(번체·간체) 온라인 채널활용 콘텐츠 홍보

- 구미주

- 개별여행객(FIT) 유치를 위한 온라인 활용 홍보 확대
 - .. 한국관광공사 영어권 사이트 내 한국의집 음식디미방, 전통예술공연, 대장금 체험 홍보
- 카드사 연계 프로모션 추진
 - .. VISA 카드 : 전통음식(10%), 전통예술공연(30%)할인
- 전세계 MICE산업관계자 대상 설명회 참여 한국의집 콘텐츠 홍보
 - .. 20145 KOREA MICE EXPO 참가

- 일본 : 온·오프라인 여행을 통한 한국의집 상품 판매 및 다양한 프로모션 추진

- 온라인 여행을 통한 방한상품 판매
 - .. 코네스트 : 달빛기행+한국의집 음식, 음식디미방
 - .. 벨트라·서울나비 : 한국의집 음식+전통예술공연
- 한국관광공사 온라인(일본어) 채널 활용 한국의집 콘텐츠 지속노출
- 카드사 프로모션 추진 : JCB 카드 연계 한국의집 음식(10%), 전통예술공연(30%) 할인 제공

- 또한 2014년 이후부터 전문마케팅 업체를 활용하여 다각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마케팅 전략 강화 마련을 위한 한국의집 운영 활성화 연구 용역(2015.9.~10./한국생산성 본부)을 실시하여 추후 연구용역 결과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 수립, 전개를 통해 안정적 수입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문 홍보마케팅 업체를 활용 한국의집 콘텐츠 활성화(붙임1 참조)
 - 기 간 : 2014. 4.~2014.12(9개월)
 - 수행업체 : 커뮤니케이션즈 온
 - 주요내용
 - 언론 홍보 및 관리
 - 온라인 홍보 마케팅
 - 중국, 동남아 시장 및 기타프로모션(홍보마케팅 전략수립, 기업 및 단체 등)
- 한국의집 운영활성화 연구용역 실시
 - 기 간 : 2015.9. 1~10.31.(2개월)
 - 수행업체 : 한국생산성본부
 - 주요내용
 - 사업 및 영업 현안에 대한 객관적 분석으로 운영활성화 방향 정립
 - 내부 적용을 통한 한국의집 콘텐츠 전문경쟁력 강화 및 지속발전방안 도출

담당부서	활용정책과
담당자	여성희 사무관
연락처	042-481-4745

2. 궁스테이, 문화재 '보존'이나 '활용'이나 논란...

1) 현재, '궁 스테이' 사업 진행상황은?

- 당초 문화재청은 당해 문화재 내부에 화장실, 욕실, 주방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문화재 위원회의 현상변경심의 필요), 한옥체험업과 같이 일상적으로 숙박이 가능한 정책 사업으로 궁스테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 2015. 8. 12. 문화재위원회에서 사업 추진 방향성에 대한 검토결과 보류(현장조사 후 재검토)되었으며, 궁 스테이 사업의 실현가능한 계획 마련을 위해 기재부에 2차 (3,558백만원) 및 3차 심의(4,578백만원) 시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모두 미반영 되었습니다.
- 문화재위원회 검토내용, 언론 보도내용, 국정감사 지적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궁스테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2) 문화재를 보존·활용하고자 내부적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검토될 수는 있다고 생각함. '궁 스테이' 역시 그 과정에서 나온 하나의 의견인지?

- 문화재청은 궁궐·서원·향교 등 문화재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활용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궁 스테이 사업도 이러한 관점에서 고품격의 궁중문화를 직접 체험, 문화재의 가치를 더 넓게 알리기 위한 기획으로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궁궐에 담긴 정신적 가치를 체득하기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내부적으로 추진 검토한 사항입니다.

3) 해당 사업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 중, 건축 문화재에 대한 원형 변경, 학술적으로 문화 원형 보존 차원에서 활용 제한을 말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석복헌은 170여년 된 목조건물임, 목조 문화재인 한국의 궁궐은 숭례문 방화사건에서 보듯 이 화재에 매우 취약한데?

5) 무엇보다, 세계유산이자 조선의 법궁을 훼손해가며 내부개조를 한다면,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가 깃든 궁궐에 담긴 정신적 가치를 문화재청이 나서서 훼손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텐데, 이에 대한 입장은?

6) 청장님, 결국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보호·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 보존을 통한 활용이나 활용을 통한 보존이든, 국민 눈높이에 맞고 정서에 맞게, 국민들의 삶과 함께할 수 있는 문화재 관리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것

- 당초 문화재청은 당해 문화재 내부에 화장실, 욕실, 주방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문화재 위원회의 현상변경심의 필요), 한옥체험업과 같이 일상적으로 숙박이 가능한 정책 사업으로 궁스테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 하지만 문화재위원회 검토내용, 언론 보도내용, 국정감사 지적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로써는 궁스테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 다만, 궁궐문화는 당대 최고의 통치 철학 및 최고의 기술과 예술성이 결합되어 있는 문화로,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단숨에 보여주기에선 상당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궁궐 활용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국민의 문화 향수 욕구를 충족하고 품격있는 고궁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도록 연계 또는 종합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다양한 형태의 고궁문화체험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경복궁 소주방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LNG 등 문화재 안전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현재 운영 중인 전시프로그램(궁중음식 및 재현용품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궁중음식특강 등)을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종 환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당자	이규훈 연구관
연락처	042-481-4947

1. 발굴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개발자에게 개발 전면 허용하는 독소조항 철회 필요

1) 발굴조사 시 지하유구가 훼손되지 않는 건축의 경우 정밀발굴 유예

- 발굴조사 실시기준 개정안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지하유구를 훼손하지 않는 경우라도 댐, 제방, 도로, 철도 등 영구, 준영구 시설물의 경우 현 『발굴조사 실시기준』의 「시대 및 유적유형, 유구유형」 적용
- 가설시설물(「건축법시행령 15조」의 가설건축물과 이에 준하는 시설물)중 지하 구조물이 있는 경우 현 『발굴조사 실시기준』의 「시대 및 유적유형, 유구유형」 적용
- 가설시설물(「건축법시행령 15조」의 가설건축물과 이에 준하는 시설물)중 지하 구조물이 없는 경우 시굴조사 후 건축의 규모, 내용, 유구와의 이격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발굴조사 유예여부 결정

2. 청주 테크노폴리스 조성부지 내 7지구, 발굴연장, 관련 전문가 통한 철저한 고증 및 현장관리 필요

1) 발굴연장 관련

- 해당 지역에 대한 발굴조사 연장은 발굴경과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전문가 통한 철저한 고증 및 현장관리 필요

- 유적에 대한 고증과 향후 유적의 처리, 조사방향의 결정은 제철관련 전문가 및 문화재위원으로 구성된 전문가검토회의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치해나갈 계획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2015. 9. 30.(수) 관계전문가와 문화재위원으로 구성된 전문가검토회의를 실시하여 유적에 대한 성격검토를 실시 할 예정입니다.

검토위원	소속	비고
이남규	한신대학교	제철 전문가
최성락	목포대학교	문화재위원
박보현	대전보건대학교	문화재위원
김권구	계명대학교	문화재위원

- 발굴과정 중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과 협의하여 발굴조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발굴성과의 공개 등을 위해 현장을 공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 대 출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당자	남상범 서기관
연락처	042-481-4923

1. 문화재 감정관 인력충원 필요

1) 일부 문화재 감정관실의 경우 특정분야의 전문위원이 없어 전문분야가 다른 감정인이 대신 감정하는 경우도?

- 미 배치된 분야 감정위원에 대해서는 최근 비상근위원 채용('15.6.15)시 외국문화재(2명), 근대매체(1명) 분야 전공자를 채용하였으며, 향후 상근 문화재감정위원의 충원, 분야별 문화재감정위원의 배치, 감정위원 교육(워크숍 1회/ 상시 5회) 강화, 화상감정시스템을 통한 전문분야 감정위원의 감정을 통해 철저한 감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밀반출 문화재사범 검거 및 회수를 위해 관할 경찰청 문화재전담반과의 긴밀한 공조수사 및 문화재감정관실을 통한 공항·항만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조 체계를 갖추어 문화재의 해외 밀반출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 문화재사범 제보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및 제보자 지급비율을 상향추진 중인데 효과가 있겠는가?(최고포상금 2천만원→2천5백만원 / 제보자 지급비율50%→83%)

그동안 포상금이 낮아 문화재 사범 제보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인가?

- 문화재청에서는 제보자 기준 포상금액을 약 2배 증액(1천만원→2천만원, 지급비율 50%→ 83%)하도록 문화재 제보자의 제보 유인책을 확대하고자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3) 분야별 전문 감정위원의 인력보충, 특히 1인의 감정위원만 배치된 곳(군산항-비상근위원1명), 시급 보강 필요

- 위 1번문항의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담당자	김은영 연구관
연락처	042-481-4686

2. 산청 비로자나불, 국보 지정해 보존관리 필요

1)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에 대해 알고 있는지?

-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766년에 조성된 가장 오래된 비로자나불로 알고 있습니다.

2) 국보 지정 관련 진행 상황은?

- 보물 제1021호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국보 승격 및 명칭 변경 신청이 접수('15.2.2, 경남)되어 지정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다음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제5차 회의('15.10.8) 시 심의할 예정입니다.

3) 국보 지정 검토를 위한 추가 조사 내용은?

- 1차 조사('15.3.26./5.28.) 결과, 원 석남암사터 및 "傳 산청 석남암사지 납석사리호" (국보 제233호)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 2차('15.7.21.) "傳 산청 석남암사지 납석사리호"(국보 제233호) 조사를 실시하였고
- 3차('15.9.3.)로 원사지(경남 산청군)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4) 대표성과 가치가 매우 높은 문화재, 국보 승격에 동의하는지?

-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르면, 보물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산청 비로자나불좌상 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박 인 숙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보존정책과
담당자	김한옥 사무관
연락처	042-481-4838

1. 문화재 보수사업 친환경적으로 할 수 없나?

(1) 성곽을 살리겠다고 오래된 소나무 군락을 베어버리는 복원 방식은 잘못된 방법으로 보여짐. 문화재청에서 지자체에 문화재 복원 예산을 지원하면서 문화재 복원지침을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 성곽의 정비와 관련해서는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문화재청 훈령 제316호 / '14.3.11.)에 따라 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 수목에 대해서는 잡목 등의 뿌리로 인해 성돌을 밀어내는 등 성곽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수목은 관계전문가 현장자문 및 설계검토 등을 통해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벌채하고 있습니다.

(2) 성곽 주변 나무를 무조건 베어버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 최소한의 환경적 가치를 고려해서 선별적으로 남겨두거나 다른 곳에 옮겨 심는다든지 문화재 복원과 환경보존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성곽의 보호 및 관람객 안전을 위하여 성곽에 영향을 주는 수목이나 경관을 저해하는 수목 등은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제거를 하겠으며,
- 보호할 가치가 있는 수목은 환경 생태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현장 보존 또는 이식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당자	김성도 사무관
연락처	042-481-4884

2. 서울시가 지난 8월 부결된 서울역 고가공원 사업을 보완하여 재신청 할 경우 문화재청의 계획은?

- 시행청인 서울시에서 문화재위원회 심의('15.7.28)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정하여 재신청할 경우 공사 중 발생하는 진동, 시설물 설치에 따른 경관 등 문화재 보호에 미치는 영향 여부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활용정책과 / 한국문화재단
담당자	김대훈 사무관 / 이치현 팀장
연락처	042-481-4741 / 02-2270-1120

3. 한국의집, 메르스 피해에 따른 매출액 감소 대책마련

1) 메르스로 인해 공연계 등 문화계가 입은 피해가 만만치 않음.

특히, 한국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한국의집의 경우도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짐. 이러한 재정난 보조를 위해 문화부에서 공연예술계 활성화 지원사업 등으로 침체된 공연예술계를 활성화하고자 했지만, 얼마나 적시성이 있는지 의문임.

- 메르스 침체로 인한 공연예술계 활성화를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고한 「메르스 관련 공연예술계 지원사업(2015.08.04)」 및 「메르스 관련 피해지역 파크 콘서트 프로그램 공모(2015.08.12.)」에 지원을 의뢰하였으나, 한국의집은 문화부에서 제시한 「지원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 문화부에서 제시한 「지원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국립·공립(시·도·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유사성격의 기관, 단체),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2) 한국의집의 메르스 피해액이 4억 5천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는데, 한국의집도 추경의 지원을 받았나?

- 메르스로 인한 별도의 추경 지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3) 한국의집은 특히, 중요무형문화재에 등록된 다수의 명인들이 펼치는 공연인 탓에 평소 관중도 많고, 명맥을 잇기 위한 중요한 자리이기도 해 더 의미가 있다. 앞으로 공연일정이나 체험활동 등 정상화되기까지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 한국의집은 메르스로 인한 매출 감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 국가 관광객 중심의 마케팅에서 탈피하여 구미, 중국 등으로 다양화 마케팅 전략을 강구하는 한편, 내국인 이용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오·만찬 및 일품 메뉴 개발, 그에 따른 서비스 개선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집 운영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10월까지 진행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전개를 통해 안정적인 수입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국고에서 지원받고 있는 한국의 명인명창공연(중요무형문화재 출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서울특별시 주최 2015 서울문화예술활성화 추경사업 「함께 서울 나눔극장」 신청으로, 한국의집 공연의 관람료 및 문화행사비를 지원받는 등 한국의집 전통예술공연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2015 서울문화예술활성화 추경사업 지원사업 선정

- 사업기간 : 2015.09월-2015.12월
- 주요 사업내용

프로그래밍	주요 사업내용
함께서울 나눔극장	· 유료공연 작품 대상 풀(pool)구성 · 시민들의 희망 관람공연 관람료 지원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 한국문화재단
담당자	권오현 사무관 / 김경수 팀장
연락처	042-481-4698 / 02-3011-2601

4. 문화유산을 영상으로 소개하는 사업의 중요성

- 좋은 영상물을 만들고, 접근성도 높여야 할 것-

- 1) 한국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문화유산채널 사업에 대해 질의. 이 사업은 문화유산 콘텐츠를 활용해 문화유산 가치를 확산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2014년부터 시작해 예산도 22억, 올해는 28억원을 투입해 지상파, 케이블 등 방송편성을 확대하고 교육 등 공공 활용도를 높이고 해외에도 보급을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잘 되고 있나?

- 지상파와 케이블방송과 연계한 고품격 콘텐츠의 제작·방영으로 대국민 접근성을 제고하고, 해외포털(KOREA.net)과 해외문화홍보원을 통한 해외보급을 추진하는 등 국내외에 우리 문화유산의 아름다움과 가치에 대하여 알리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2) 작년에는 문화유산콘텐츠를 116편, 방송사 연계 프로그램을 3편 제작했고, 올해에는 6월까지 각각 7편, 3편임. 제작콘텐츠의 질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양적으로 큰 감소를 보이는 것은 다소

아쉬운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영상콘텐츠 활용도 지난해 지상파, 케이블방송사 등 36개 기관에 1,243편을 제공한 반면, 올해는 17개 기관에 787편을 활용함. 네이버 TV캐스트 영상에도 각각 106편, 75편을 제공함. 이렇듯 작년도 사업초기에 비해 급격히 그 제공량이 줄어든 것은 무슨 이유인지 궁금함. 중요한 사업이고 예산도 늘였는데, 어디서 새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 영상제작에 소요되는 기간이 있어 상반기 제작실적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2015년 연말기준 콘텐츠 제작건수는 200여건 정도로 전년대비 증가할 것입니다. 영상콘텐츠 활용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협약기관과 협의해 더 많은 콘텐츠를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활용을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3) 무엇보다 독점영상을 제작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에는 카타르 도하에서 남한산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현장을 취재해서 제작했고, 프랑스 파리에서는 농악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현지 취재를 하곤 함. 올해에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심사현장을 보도하기도 함. 이러한 중요한 영상자료들을 제작한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인들에게 보다 쉽게 시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역시 중요함. 만들어 놓고 보급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됨. 좋은 영상물 제작과 함께 접근성도 높이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 주시기 바람.

- 온라인 상의 낮은 홍보력을 보완하기 위해 네이버, 유튜브,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정책방송원(KTV) 등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자체 웹사이트와 외부 플랫폼을 동시에 활용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추진중입니다. 또한 수요자에게 맞추어 웹사이트 환경을 업그레이드 하는 동시에 지상파를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 확보에 노력해 접근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4) 올해 12월에 방영 예정인 내셔널 지오그래픽 ‘조선의 왕릉’ 프로그램 제작은 잘 되어 가고 있나요? 사업에 차질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람

-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과 계약을 체결하고('15.7월) 현재 촬영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편집 및 심의를 거쳐 11월경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19개국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제작이 원활히 진행되어 본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의 소중한 유산이 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담당자	한중수 팀장대리
연락처	02-6902-0751

5.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매입 이후 복원을 위한 예산 부족

- 역사적 사명감을 띄고 복원에 온힘을 다할 것 -

1)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복원 및 리모델링 사업 추진 현황

- 재단은 건물의 소유자인 문화재청으로부터 2013년 1월 31일자로 공사관 보존·관리·활용 등 전반적인 업무를 위탁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공사관 ‘복원 및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워싱턴 D.C. 시당국의 인·허가 검토 및 승인, 공사관 전문가 자문위원들의 변경요구 사항 반영, 미국 건축물의 입찰 공고 절차 및 내용(조달청 공문) 확인 등의 절차가 당초 예상보다 오래 걸려 미국 현지 공사관 건물 ‘복원 및 리모델링’ 공사 일정이 전반적으로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 미국 빅토리안 시기 건축물로 미국 현지에서 시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내(조달청 나라장터 등) 입찰 공고보다는 미국정부 · 민간 입찰사이트(Onvia, Dodge Report) 및 미국 현지 언론기관(Washington Post), 동포신문(한국, 중앙, 조선일보) 등에 2014년 12월 23일자로 28일간 입찰공고를 진행하였습니다. 2015년 1월 27일에는 미국 현지에서 입찰에 참여한 5개 업체 (CVM, Consigli, Whiting-Tuner, ACI)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선협상대상 업체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5개 업체가 제안한 평균금액이 당초 예상했던 290만 달러보다 약 100만 달러 이상 초과하여 추가 소요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문화재청 및 기획재정부 등과 예산 논의를 거친 후 우선 협상대상 업체(CVM)와 계약금액, 계약문구 및 내용 등을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종 계약 체결은 2015년 9월말, 착공은 2015년 10월 말로 예정하고 있으며, 2016년 하반기에는 복원사업을 완료한 후 개관하여 일반인들에게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 이 밖에도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내부 전시물 제작 및 구입과 관련하여 2015년 10월 중으로 전시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2)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복원 및 리모델링 사업 예산관련

- 박인숙 의원님의 본 사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 덕분에 2016년 예산에 공사관 보수·복원비용의 필요예산이 기획재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어 당초 1,600백만원에서 3,700백만원(2,100백만원 증가)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담당자	김은영 연구관
연락처	042-481-4686

6. ‘증도가자’ 진위논란, 세계 금속활자의 계보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

1) ‘증도가자’가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로 밝혀진다면, 세계적·문화사적으로 우리나라 인쇄술의 가치를 공인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사건이 아니겠는가?

- 문화재청에서는 ‘증도가자’ 지정 건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중요한 사안이므로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지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문화재 지정 관련, 출처와 입수경위를 밝히기 위한 조사 현황은?

- 국가문화재 지정과 관련, 해당 유물의 출처 조사는 지정가치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 소유자의 소명에 따르면, 1995년 일본 교토의 구키야 마코토가 국내에 판매한 뒤, 4단계를 거쳐 신청자가 소유하게 되었다고 하므로 우리 청에서는 일본 판매자(구키야 마코토)에게 해당 내용을 서신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3) 증도가자 선행연구자를 용역수행자로 선정 한 이유는?

- 연구책임자가 과거 유사 연구수행실적이 있다고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 아울러, 입찰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단이 수행 계획, 수행능력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종합 검토하여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선정 한 것입니다.

4) 증도가자 진위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왔는지?

- 현재 「증도가자 기초학술연구」 용역 완료('14.12월) 이후, 서체비교·연대측정·제작 기법 3개 분야 12명의 지정조사단을 구성('15.6월)하여 분야별로 용역결과물에 대한 평가 및 종합적인 지정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박 주 선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활용정책과
담당자	여성희 사무관
연락처	042-481-4745

1. 누구를 위한 ‘궁(宮) 스테이’인가?

- 1) 지난 6월 30일, 동아일보가 ‘① 문화재청이 창덕궁 낙선재 일대의 전각을 객실로 꾸며, 숙박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② 경복궁 내 소주방을 조리가 가능한 시설로 개조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처음 공개함.

- 문화재청은 위의 두 가지를 각각 처음 검토 및 추진한 시점이 언제인지?

- 궁스테이 사업은 궁궐 활용 방안의 일환으로 2015년 6월부터 검토한 아이디어로, 당초 당해 문화재 내부에 화장실, 욕실, 주방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심의 필요), 한옥체험업과 같이 일상적 숙박이 가능한 정책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 당초, 문화재청이 이러한 활용 방안을 각각 검토 및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대통령 지시사항인가? 아니면 청장의 판단인가?

- 문화재청은 궁궐·서원·향교 등 문화재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활용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궁스테이 사업도 이러한 관점에서 고품격의 궁중문화를 직접 체험, 문화재의 가치를 더 넓게 알리기 위한 기획으로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궁궐에 담긴 정신적 가치를 체득하기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내부적으로 추진 검토한 사항입니다.

- ‘궁 스테이’와 관련하여 전문가 의견 수렴, 연구용역 등을 포함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현장 검토 회의,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검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문화재위원회 검토내용, 언론 보도내용, 국정감사 지적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궁 스테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2) 7월 16일에는 경향신문이 문화재청이 ‘궁스테이’의 하루 숙박료를 최소 300만원 이상의 고가로 설정하고 있다고 공개함.

- 이러한 보도내용이 사실인가?

○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질의한 숙박료로 검토된 바 없습니다.

- 8월 12일 사적분과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김대현 문화재청 활용 국장은 “비용문제는 개인당으로 하면 10만원 안쪽으로 냈는데 모르겠습니다”라고 발언했는데,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담당 실무자에게 문의하자 “아직 정해진 바 없다”라고 답변했음. 당초 문화재청이 궁 스테이를 추진하면서 검토했던 하루 숙박료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 최초 기획시에는 구체적인 숙박료는 검토되지 않았으며, 2015. 8.12.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검토시 제출한 계획안에 궁중복식체험 등 다양한 궁궐체험 등에 필요한 실비(1인당 10만원정도)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3) 문화재는 소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위한 문화재가 되어야함. 소수만을 위한 문화재는 존재할 수 없고, 그래서 전 국민이 같이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하며, 우리 문화재를 후손들한테 온전히 그대로 물려줘야한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야함.

- 창덕궁은 사적(史蹟)이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데 모두가 공유해야 할 문화재를 비싼 돈을 내는 일부만 향유할 수 있게 혜택을 준다는 건 세계유산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 당초 궁스테이 사업의 숙박료는 고품격의 고궁문화체험에 적정한 수준을 검토하였으나, 경향신문 등에서 언론보도된 비판을 수용하여 2015. 8.12. 문화재위원회 검토 시 제출한 사업계획안에는 국민 누구나 체험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실비정도로만 검토한 바 있습니다.

○ 또한, 문화재 외관의 변형 없이 궁궐 활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부 시설 정비만 고려하여 추진 검토한 사항이나, 문화재위원회 검토내용, 언론보도, 국정감사 지적 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궁스테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은 국민이 아직 송례문 화재 참사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창덕궁 관리 주체인 문화재청이 스스로 궁궐에 샤워·난방·주방 시설을 넣고 호텔로 만들 생각을 했다”는 비판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모든 궁궐 활용프로그램 운영 시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방재설비 설치 및 안전요원 상시배치를 통해서 문화재 훼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고궁의 적극적 활용을 통하여 문화재 가치를 보존하고 문화재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활용방안으로 기획하여 추진 검토한 사항이나, 문화재위원회 검토내용, 언론보도,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수용하여 현재로써는 궁스тей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4) 7월 16일, 문화재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궁 스테이’와 관련하여 「‘고궁 스테이’는 검토 중이며, 사업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습니다.」라고 문화재청 입장을 발표함.

- 문화재청 보도자료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아직 검토 중이고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는 사항들이 문화재청의 공식적인 발표나 업무보고도 없이, 언론을 통해 세부적인 계획과 추진 내용들이 처음 공개된 것임.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하게 된 것인지? 여론을 떠보려는 것인가?

-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고궁 활용방안에 대하여 언론 관계자에게 설명하는 가운데 기획하여 구상중인 활용방안에 대한 내용이 일부 보도되었으나, 세부적인 계획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다만, 고궁 스테이의 구체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서 국민적 논란이 가중되는 부분이 있어,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문화재청 입장을 알려드리고자 7월 16일 해명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7월 17일 기자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 한 차례도 아니고, 연달아 세부적인 계획과 추진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 계속해서 공개되었음. 사업추진에 있어서 문화재청의 언론 대응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단계에서 구상중인 활용방안에 대한 내용이 일부 보도되었으나, 세부적인 계획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에 대한 내부 검토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언론보도로 확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공개되어 논란이 된 점에 대해서는 언론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주의하고 보완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8월 12일,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에서,

- ‘① 스테이용으로 내부를 개조하는 것과, ② 소주방에 LNG설치하는 것’ 모두 보류됨. 보류된 이유가 무엇인지?
 - 8월 12일 문화재위원회에 검토 제출한 사업계획(안)에 대한 충실한 검토를 위하여 현지조사 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류된 사항입니다.
-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면, 다수의 위원들이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고, 문화재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단칼에 부결시키기는 조금 그러하니 우선 보류로 가자는 분위기에 따라 부결이 아닌 보류로 심의·의결함. 이러한 사적분과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문화재청의 의견은 어떠한지?

6) 이러한 사적분과위원회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은 궁 스테이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짐.

- 문화재위원회의 의견도 부정적이고, 심지어 내년도 예산안에 해당 사업이 반영되지도 않았는데, 사업을 어떻게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 이와 관련한 문화재청의 입장 및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 당초 문화재청은 당해 문화재 내부에 화장실, 욕실, 주방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심의 필요), 한옥체험업과 같이 일상적으로 숙박이 가능한 정책사업으로 궁스테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 하지만 문화재위원회 검토내용, 언론 보도내용, 국정감사 지적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궁스테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 다만, 궁궐문화는 당대 최고의 통치 철학 및 최고의 기술과 예술성이 결합되어 있는 문화로,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단숨에 보여주기에겐 상당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궁궐 활용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국민의 문화 향수 욕구를 충족하고 품격있는 고궁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도록 연계 또는 종합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다양한 형태의 고궁문화체험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경복궁 소주방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LNG 등 문화재 안전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현재 운영 중인 전시프로그램(궁중음식 및 재현용품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궁중음식특강 등)을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국제협력과
담당자	유재걸 사무관
연락처	042-481-4737

2. (문화재청) 군함도(하시마섬)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은?

- 1)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유산군이 지난 7월 5일 한일 양국이 조선인 강제노동이 있었음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결정문에 명시키로 합의하면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으나, 일본은 등재 이후에 강제징용을 부인하고 ‘징용은 강제노동이 아니다’는 뜻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이러한 일본의 입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유산군의 등재 당시 일본정부의 입장서 영문에서는 한국인 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로 노역하였음을 인정하였는 바, 이는 강제노동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2) 강제노역 사실이 유네스코 등재 결정문이나 주석에 직접 표현되지 않고 주석의 레퍼런스(참고)에 일본 측의 발언 형식으로 반영되어, 공식적인 권위가 떨어졌다는 지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 일본측의 발언문은 세계유산위원회 토의 요록에 포함되는 것으로, 토의 요록 또한 등재 결정문의 하나로 간주되므로 권위가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 3) 한국 정부의 당초 요구했던 강제노동의 뜻이 명확한 ‘forced labour’가 아니라 ‘forced to work’로 표현을 완화해 줌으로써 ‘일하게 됐다’는 식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주었다는 지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 동 협의사항은 외교부에서 추진한 사항으로 우리 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노역을 강제한 주체가 정부인지 민간인지 불분명하게 표기 되었으며, 일본은 그간 특유의 모호한 어법이 한일관계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도 그러하다는 지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 동 협의사항은 외교부에서 추진한 사항으로 우리 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후속조치의 이행에 관한 보장 장치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2017년 경과보고서 제출과 2018년 경과보고서 검토만을 약속 받았을 뿐, 강제노역에 관한 정보센터의 운영 등 세구 실천 사항에 대한 합의가 전혀 없다는 지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 일본정부의 이행과 관련, 일본은 2017년 12월 1일까지 권고이행 경과보고서 (progress report)를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2018년 제42차 세계유산 위원회에서 일본의 이행상황을 직접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 이행과정에서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가 일본을 자문할 계획입니다. 외교부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정부는 세계유산위원회 이행점검 메카니즘을 활용하여 일본의 성실한 약속이행을 확인할 예정이며, 한일 양자 간 채널 등을 통해서도 일본의 성실한 이행 촉구 및 모니터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6) 7월 6일자 <산케이>는

“외무성 관계자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위원회에서의 일본 측 발언을 재판에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한국 정부에게서 몇 번이나 확인 받았다고 한다. 외무성 관계자는 ‘한국 내에 여러 여론이 있다. 본 현장에서 확인함과 동시에 하이레벨에서도 확인했다’라고 심의를 하루 보류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라고 보도함

- 이와 같은 보도내용이 사실인지?
- 우리 정부가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유산군의 유네스코 등재가 목전에 닥치자 여론을 의식하여 뒤늦게 외교전에 뛰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치밀한 전략이나 대응 매뉴얼이 부재한 상태에서 한일간 교섭에 들어가 결국 일본의 잔꾀에 마려든 건 아닌지?
- 한·일 간 협의사항은 외교부에서 추진한 사항으로 우리 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군함도(하시마섬) 탄광 등 강제 동원돼 노역한 일제 산업시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데 대한 향후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 현재 일본의 세계유산 잠정목록 중 강제징용과 관련된 시설은 ‘사도광산’이 있으며, 현재 일본에서는 2010년 10월 동 유산을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한 상황입니다.
- 사도광산을 비롯한 강제노역과 관련된 일본 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외교부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선제적인 대응조치를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국제협력과
담당자	문선경 사무관
연락처	042-481-4731

8) 최근 언론은, “우리 정부가 이에 맞서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 기록’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함.

- 보도내용이 사실인지?

- 2015년 세계기록유산 공모결과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 기록’이 접수되었습니다.
-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 기록물은 기록물 소유자 및 관리자(단체)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자유롭게 신청한 것입니다.

9) 현재 진행상황은 어떠한지?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 현재 세계기록유산 공모전을 완료하고,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대상 선정을 위한 자문회의 및 문화재위원회 개최 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향후 세계기록유산 등재 대상 선정 후 등재신청서 등을 거쳐 ‘16년 3월에 유네스코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향후 자문회의 및 문화재위원회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 등재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등재 신청 대상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국제협력과
담당자	김지홍 사무관
연락처	042-481-3184

3. 해외유출 문화재 환수대상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 집중적 환수 추진해야!

1. 광복 70주년을 맞았지만, 멀리 타지로 우리 문화재는 여전히
기약 없는 광복을 기다리고 있음
 - 1) 문화재청 자료에 따르면(2014.8.31. 기준),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는 현재 조사된 것만 16만342점에 이름. 그러나 이 숫자는
공개 혹은 조사된 것으로 공개되지 않은 개인컬렉션 등을 포함할
경우 더 많을 것이라는 게 문화재계 정설인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외소재문화재단 등이 협업을 통해 국외문화재 현황을 파악
하고 있으나 주로 외국의 박물관 등 공공기관이 소장한 문화재 중심이어서
160,342점 보다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 해외 문화재 16만 342점 중 실태조사가 이뤄진 문화재는 4만
5,000여 점으로 문화재 4개 중 3개는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 1) 아직 실태조사 조차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11만5천점 이상의
해외 유출 문화재에 대한 향후 실태조사 계획은 어떠한지?
 - 작년(2014년)까지는 연간 6,000점을 조사목표수량으로 설정하였으나 금년부터 연간
7,000점 이상으로 확대하고 외부전문가 등 전문인력의 참여를 강화하겠습니다.
 - 2) 더불어, 문화재청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개인컬렉션(개인 보관
자료)의 경우 추가적으로 어떻게 조사, 파악할 예정인지?
 - 국외소재문화재단 산하 일본사무소(2013년 8월 설치 완료), 미국 사무소(2016년
하반기 예정)를 중심으로 현지 유학생, 교포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제보를 받는
한편, 다중 소장자와의 친화성을 강화하여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3. 해외로 유출된 16만342점 중 협상, 구입, 기증 등 방법으로 환수된
문화재는 9,882점으로 6%에 불과함
 - 1) 작년 5월부터 올 12월까지 문화재청은 정부차원의 효율적 환수를
위해 「환수대상목록」을 작성기로 하였음. 현재까지 어떠한
선정기준이 마련되었는지? 목록초안 작성 및 전문가 수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우선협상목록(Priority List) (1차)의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울러, 지난 6월 목록초안을 작성한 후, 7월부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우선협상목록(Priority List) (1차) 선정기준>

대한민국 국민의 정신적 가치와 문화유산의 관점에서 근본적 중요성이 있고 일제 침략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영토에서 도난 또는 불법·부당하게 반출된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문화재

- 시간적 범위 : 일제 침략기 (1905. 11월 ~ 1945. 8월)
- 공간적 범위 : 대한민국 영토에서 반출
- 문화재 특성 : 불법·부당성 + 문화재적 가치성 (1978년 ICPRCP 규정)
- 소장자 특성 : 일본 공공기관 (정부기관, 독립행정법인, 대학법인 등)

2)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중앙정부(문화재청, 외교부, 국립중앙박물관 등), 지방정부, 유관기관(국외소재문화재재단,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등), 민간단체(문화재제자리찾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등) 등의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함. 어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 우선협상목록 확정 및 향후 추진방안 협의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 국외문화재 환수는 외교부(정부협상), 문화재청(환수정책), 국립중앙박물관(구입, 기증), 국립문화재연구소(조사) 등 관계기관이 협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지난 2009.4월 ‘국외문화재협의회’를 구축(연 2회 개최/총 16회)하여 관계기관 간 환수협력과 정보공유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향후 우선협상목록(Priority List) (1차)이 확정되면 외교부에 정부협상 개시를 요청할 예정이며,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문화재 환수 전문가 국제회의’(16.10월)와 민간단체의 활동지원을 통해 우선협상목록(Priority List) (1차)에 대한 환수 여론 조성을 적극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4. 문화재 환수는 특성상 장기적인 대처, 다양한 활용방안,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함. 문화재청의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 문화재 환수에 대한 국제법적 강제수단이 없어 정부협상에 의존해야 하나 우리 문화재 소장국들은 자국법과 자국민의 정서를 이유로 정부협상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 이에 실태파악, 반출경위 등 조사연구를 기반으로 일제 강점기에 불법·부당하게 반출된 문화재는 외교부와 협력하여 정부협상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한국 전쟁 당시 미군에 의해 불법·반출된 문화재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한미 수사공조를 통해 적극 환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적법·정당하게 반출된 문화재는 현지에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서	보존정책과
담당자	정규연 사무관
연락처	042-481-4843

4. 문화재 특별종합점검 결과 반영한 즉각적인 조치 이루어져야!

1) 현재 유급사 삼층석탑에 대해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 특별점검 결과 즉시조치 필요(F등급)한 경북 영덕 유급사 삼층석탑에 대하여 '15년 국고보조예산(105백만원)을 통해 해체보수중입니다.

2) 즉시조치가 필요하다고 점검한 F등급 국가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 포함) 총 20건 중, 30%(6건)에 대해서는 아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F등급 시도지정문화재 67건의 경우에도 28%이상(19건)이 아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즉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점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 즉시조치가 필요한 국가지정문화재 F등급의 경우 '15년 9월 1일 현재 미조치된 문화재는 없으며 조치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 포함, F등급)

(단위 : 건)

구 분	계	조치 완료	조치 중	조치 예정
국가 (F등급)	20 (100%)	9 (45%)	11 (55%)	- (0%)

- F등급 시도지정문화재(67건)에 대하여도 예산이 미 반영된 5건을 제외하면 '15.9.1. 현재 발주(계약) 중이거나 설계중(설계변경 포함)이며 아직 보수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문화재(5건)에 대하여는 조속히 지방비를 반영하여 조치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 시도지정문화재(F등급)

(단위 : 건)

구 분	계	조치 완료	조치 중	조치 예정
(F등급)	67 (100%)	12 (17.9%)	50 (74.6%)	5 (7.5%)

3) 보수정비가 필요하다고 점검한 E등급 문화재의 경우에도 총 1,413건 중 570건에 대해 아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보수정비가 필요한 문화재의 40% 이상 아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 보수정비가 필요(E등급)한 국가 및 시도지정문화재(총 1,413건) 중 국가지정문화재 E등급 369건에 대하여는 전부 예산이 반영되어 완료 또는 수리가 진행 중이며, 아직 예산이 미확보된 시도지정문화재 452(32%)건에 대하여는 조속히 지방비를 반영하여 조치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 국가 및 시도지정문화재(E등급)

(단위 : 건)

구 분	계	조치 완료	조치 중	조치 예정
국가/시도(E등급)	1,413 (100%)	461 (32.6%)	500 (35.4%)	452 (32%)

4) 6개월에 걸쳐 방대한 문화재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종합 점검을 실시한 부분은 큰 의미를 가짐.

- 하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애써 실시한 점검은 무의미함.
- ‘의사가 환자를 진찰만 하고,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점검결과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중요함.
- 향후, D·E·F등급 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청 조치계획을 10월 7일 문화재청 종합국감 전까지 의원실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하신 내용에 대한 조치계획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 국립무형유산원
담당자	방인아 연구관 / 박용기 서기관
연락처	042-481-4968 / 063-280-1441

5.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체계적 운영 필요

- 1) 문화재 보호법 제50조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기·예능을 공개하고 있음
- 이러한 공개행사를 하는 그 취지와 의미가 무엇인지?

- 공개행사는 원형대로 체득한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을 그대로 실현하고 이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세월의 흐름에 따른 변형 방지 등 원형을 보존하고 활발한 기·예능 전승활동을 통해 중요무형문화재를 보다 오롯이 전승해 나가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 또한 이와 같은 공개행사를 통하여 우리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유도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우리 고유의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려는 취지입니다.

2) 월별, 지역별로 공개행사 개최현황이 크게 차이남

- (예능분야의 경우) 1월에는 단 1건도 공연도 개최되지 않고, 10월에는 18회나 공연이 개최되는 등 월별 공연 현황의 편차가 크게 나타남. 지역별로도 대구, 대전, 울산에서는 단 1건의 공연도 개최되지 않고, 서울, 경남에 편중되어 공연이 개최되는 등 지역별 공연 현황의 편차가 크게 나타남. 월별 지역별 격차의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 월별 편중 문제 >

- 야외 행사가 많은 공개행사 일정은 무엇보다도 일기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혹서기(7~8월)와 혹한기(1~2월)에는 야외 종목의 경우 공연 자체가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런 관계로 봄과 가을 등 관람객이 많은 시기를 보유자(보유단체) 등이 선호하는 점, 공개행사 개최시기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종묘대제, 단오제, 석전대제 등), 보다 많은 관람객 유치를 위해 지역행사와 연계하여 공개행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진주 검무, 안동차전놀이 등)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월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월별 편중 해소를 위해 실내 행사가 가능한 종목에 대해서는 연초 공개행사 계획 수립시 보유자(보유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공개행사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월별 편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 지역별 편중 문제 >

- 지역별 편중 문제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시도별로 지정된 종목 수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역별 편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을 기반으로 전승되어 오는 무형문화재의 특성상 해당 지역 및 해당 지역 전수교육관을 중심으로 공개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근원적인 한계가 있으며 인위적인 편중해소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 해소를 위해 금년도부터 공개행사와는 별도로 지정문화재가 지정되지 않아서 공개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초청공연형식으로 중요무형문화재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무형문화재 행사의 지역별 편중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 행사를 확대 추진하여 최대한 편중 문제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 지역별 편중 해소 프로그램 개요

- 사업명 : 전승자 주관 활동 사업(지역 교류 공연·전시 행사)
- 지원대상 : 보유자(보유단체), 보유자 없는 전수교육조교
- 행사장소 : 공개행사, 기획행사 미개최 지역 (수도권 제외)
- 지원금액
 - 개인 종목 : 보유자 7백만원, 전수교육조교 6백만원
 - 단체 종목 : 종목별 11백만원~18백만원
- 소요예산 : 126백만원
- 2015년 실적(계획 포함) : 16회
 - 대전, 강원(양구, 횡성), 충북(보은), 충남(서산), 전북(군산), 전남(강진, 고흥, 순천, 여수), 경북(영덕, 경산, 울릉), 경남(통영), 세종, 인천(옹진)
- (기능분야의 경우) 1,2,3월에는 단 1건도 공연도 개최되지 않고, 7월에는 26회나 공연이 개최되는 등 월별 공연 현황의 편차가 크게 나타남. 이러한 이유가 무엇인지? 지역별로도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에서는 단 1건의 공연도 개최되지 않고, 서울에 편중되어 공연이 개최되는 등 지역별 공연 현황의 편차가 크게 나타남. 월별 지역별 격차의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 월별 편중 문제 >

- 기능분야 월별 편중 문제 또한 예능분야 월별 편중과 거의 같은 사유로 불가피하게 월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다만, 7월에 유독 공개행사가 많은 점은 기능 분야 공개행사가 집중되는 기간을 피해 7월에 합동공개행사(21건)를 진행함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연초 계획 수립시 보다 세심한 계획을 수립하여 합동공개행사를 공개행사가 전혀 없는 1~3월에 분산 개최토록 하여 월별 편중 문제를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 지역별 편중 문제 >

- 기능분야 지역별 편중 문제 또한 예능분야와 같이 기본적으로 시도별로 지정된 종목수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역별 편중이 나타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능분야 또한 공개행사와는 별도로 지정문화재가 지정되지 않아서 공개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초청공연형식으로 중요무형문화재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무형문화재 행사의 지역별 편중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 행사를 확대 추진하여 최대한 편중 문제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 2015년 실적(계획 포함) : 2회

- 충남(아산), 전남(여수)

3) 현재까지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제도가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있음

- 전통문화 계승자의 의무 및 책무와 관계없는, 공개행사 제반 행정 업무(장소 섭외, 홍보자료 제작 등)가 전통문화 계승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대한 문화재청의 견해는 무엇인지? 이와 관련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 공개행사는 사업의 성격상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공개행사 주체가 되어 각 종목별 특성에 맞게 행사시기 및 행사 장소 등을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체계로서 우리 청에서는 공개행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개행사비 지원 등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현재 공개행사 제반 행정업무는 주로 보유단체의 경우는 사무국장이, 보유자의 경우 전수교육조교나 이수자분들이 맡아서 하고 있으나, 종목별에 따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개행사에 따르는 장소 섭외, 홍보자료 제작 등 행정업무에 부담을 느끼는 종목도 있습니다.
- 이런 종목의 경우 우리 청에서는 한국문화재단과 협의하여 장소 섭외 및 홍보까지 일괄해서 대행하는 합동공개행사를 개최토록 하여 행정업무의 부담을 덜어 드리고 있습니다.
- 또한 장기적 대안으로서 금년부터 기획공연 전문역량 강화 과정 교육을 개설하여 행정업무 능력 보완과 더불어 양질의 공연·전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사업 계획을 제출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임. 더욱이 충실도 등을 평가하는 <기획> 관련 항목들은 모니터링 평가항목이 아니라, 행사 사전에 사전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 공개행사 모니터링 항목 중 <기획> 분야는 공개행사계획서 내용의 충실성과 준비의 적절성이 평가되는 부분입니다.
 - <기획> 관련 항목은 공개행사계획서에 기술된 내용(전승자 참석 현황 포함)을 바탕으로 보유자 등이 공개행사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에 맞게 행사를 준비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지적하신 사전검토는 공개행사의 질적 제고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전담 인력의 확충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 한편, 우리청은 공개행사를 주관하는 전승자들의 기획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전승자 대상 기획력 향상 교육프로그램을 연 4회(예능/공예 분야 각 2회씩) 실시, 전승자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홍보와 관련한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 홍보에 있어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따라서 모니터링 평가 항목을 통해 언론보도 및 홍보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보유자들과 문화재청 간의 사전 논의를 통해 실질적 홍보와 관련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모니터링 중 ‘언론보도 및 홍보’ 부분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단지, 공개행사 실시에 대한 확인 증빙자료로 모니터링 요원들로 하여금 해당 홍보자료를 수집,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우리청은 월 1회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안내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공개행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높이고, 이를 홍보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앞서 언급한 내용들을 포함한 모니터링 평가항목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 지적하여 주신 <기획> 관련 항목에 대하여는 공개행사계획서 외에 공개행사의 충실도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대상을 발굴하여, 「중요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 활동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몇몇 공개행사를 제외하고, 일반인 관객의 참여가 적어 공개행사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공개행사라는 취지에 걸맞게 일반인 관객의 참여를 증가시킬 방안이 무엇인지?

- 공개행사 개최 장소가 도심에서 많이 떨어진 곳이거나 대중교통으로 찾아가기 힘든 곳일 경우 일반인들의 접근성 자체가 힘들며, 기능종목 보유자가 자신의 거주지역에서 단독 공개행사를 추진할 경우 일반인 참여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 이를 개선하고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도자료 배포, 소셜미디어 매체 활용, 안내소책자 제작·배포 등을 통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공개행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관람객이 적은 종목의 경우 합동공개행사 참여 유도나 특별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에 더 많은 주안점을 둘 것이며, 대학 관련학과(국악과, 사학과, 인류학과, 공예과 등)에도 안내소책자를 배포하는 등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많은 관람객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개행사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담당부서	창조행정담당관
담당자	홍은영 사무관
연락처	042-481-4855

6. 문화재 현장체험 여비 등 예산 이용 부적정

1) 최근 3년간 “문화재 현장체험”에 대한 여비 집행 내역이 어떤지?

- 최근 3년간 문화재 현장체험에 대한 여비 집행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기본경비 ¹⁾	본청	29,883,540	21,090,780	14,083,150	65,057,470
	소속기관	27,457,930	13,487,020	12,443,920	53,388,870
	소계	57,341,470	34,577,800	26,527,070	118,446,340
일반사업비 ²⁾	본청	39,395,100	41,131,850	20,557,800	101,084,750
	소속기관	41,085,160	79,852,720	54,163,860	175,101,740
	소계	80,480,260	120,984,570	74,721,660	276,186,490

주: 1. 기본경비의 경우 7100항(프로그램)에서 집행한 내역

2. 일반사업비의 경우 7100항(프로그램) 외의 7개 항(프로그램)에서 집행한 내역

2) 「국가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같은 법 47조의 규정에 따르면 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간에는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2-1) 국회 등의 승인을 거치지 아니한 채 문화재 현장체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이 다른 일반사업비 예산을 이용하여 집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 “문화재 현장체험”은 문화재청 직원들이 문화재 현장을 직접 방문·체험함으로써 창조적인 문화재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기획된 사업으로, 추진계획 수립 당시 여비 집행 항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습니다.
- 이에 각 부서에서 여비 집행 시 문화재 현장체험을 문화재 관리활동의 일부로 인식하여 일반사업비 예산에 편성된 여비를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2-2) 해당 예산이 「국가재정법」 제47조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 문화재 현장체험은 해당 문화재의 보존·관리 상태를 직원들이 점검하는 의미로 일반사업비 예산에서 집행되었기에 「국가재정법」 제47조 규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 문화재 현장체험 여비는 기본경비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항이 다른 일반사업비 예산을 이용하여 집행하는 일이 없어야 함

- 앞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문화재 현장체험 여비가 기본경비가 아닌, 항이 다른 일반사업비에서 집행된 것은 잘못이라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직원들의 기본역량 강화를 꾀하되, 기존의 문화재 현장체험 방식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 첫째, 개인별로 지급되던 문화재 현장체험 여비 지급을 중단하고,
 - 둘째, 정기조사 등 현장방문 기회를 활용한 문화재 현장체험을 강화하였습니다.
- 향후,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창 식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당자	이상민 사무관 / 방인아 연구관
연락처	042-481-4964 / 4968

1. 무형문화재 관리실태 지적

1) 전체 140여 종목 중에, 절반 이상이 보유자가 없거나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분들도 대부분 고령에 속합니다. 보유자를 지정하는 이유가 ‘무형문화의 전승’에 있는 만큼, 이러한 상황이라면 전승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보유자 충원에 차질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우리 청은 매년 보유자 인정조사 계획 수립 시 보유자 부재 종목을 우선 반영하여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보유자 인정 및 보유자 사망으로 인한 일시적 부재, 전승자 기량 미흡 등으로 부재 종목의 경우 즉시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보유자 등 전승자의 적기 충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보유자 전승실태, 전승지원금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보유자의 전승실태에 대하여 우리 청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매 5년마다 1번씩 전 종목의 보유자에 대하여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유자(보유단체)의 공개행사 모니터링(매년)을 통해 전승 기·예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보유자의 전승실태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한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에 지급하는 전승지원금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이 차세대 전승자를 확보하고, 보유자 등에게 부여하는 의무(전수교육, 공개행사 등)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보상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정산을 하지 않는 지원금입니다.
- 그러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수의 보유단체가 임의단체로 운영되는 열악한 실정을 감안하여 문화재청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감독을 통해 보유단체가 전승 지원금 집행 역량을 강화하고 단체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한 종목에 여러 유파가 있다면 유파인정을 하고 복수 보유자를 확대해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 한평생 전통문화를 연구하신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우리 청은 종목 내 특정 유파 및 계파를 한정하지 않고 기량 및 자질을 갖춘 전승자를 보유자 적극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방형 충원 및 보유자 복수 인정 확대를 통해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국제협력과
담당자	문선경 사무관
연락처	042-481-4731

2. 남북 문화재 공동사업 관련(개성 만월대 발굴사업 중점)

1) 현재 남북 문화재 공동 발굴 사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

- 2015년 9월 현재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가 있습니다.

2)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 사업은 지난 2007년 시작으로 총 6차에 걸쳐 남북이 공동으로 발굴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총 6차에 걸쳐 남북이 공동으로 발굴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3) 현재 개성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진행 상황은 어떠한가?

- 당초 계획대로 2015년부터 제7차 공동조사를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4) 특히, 올해는 발굴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단기가 아닌, 6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간의 조사에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 그동안 추진해온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성과 등을 토대로 그동안 추진해왔던 약 2개월 정도의 조사기간을 6개월간으로 확대 추진하는데 합의를 하였습니다.

5) 예산확보가 불안정하면 철저한 사업 계획 수립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보다 더 안정된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 2016년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로 5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속적인 장기간 발굴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6년 상반기 중 북측과 2016년 사업 협의 후 합의결과를 토대로 부족한 예산은 기금계획 변경 등을 통해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6) 이러한 사업은 하나의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남북한 주민 모두가 공유하여 내부적인 통합을 더욱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광복 70년을 맞이하는 만큼 민족 동질성 회복과 실질적 협력의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사업이 남북한 상호 이해 증진 및 동질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등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담당자	김선국 사무관
연락처	041-830-7120

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취업률 하락 지적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취업률이 낮아지고 있는 원인은, 문화재 조사·발굴·수리 등 관련 시장의 침체에 따른 신규 인원 채용 감소에 기인하며, 최근 청년실업률 증가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또한, 취업에 필요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취득이 재학 중에 어렵고(일부 필기시험 면제 등 제도적 혜택 폐지), 학예연구사 지원 시 석사 이상의 학력(대학원 진학 증가) 또는 현장경력을 요구하고 있어 졸업 후 바로 전문분야 취업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따라서 학교에서는 취업률 제고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현장실무능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 자격증 취득 지원 및 풍부한 취업정보 제공을 강화 해 나감과 동시에, 종합적·전문적 취업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 및 인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 최근 3년간 취업률

구분	2012	2013	2014	비고
졸업생	97명	99명	128명	
취업대상자	91명	77명	107명	대학원 진학자 등 제외
취업현황	48명	40명	52명	
취업률	52.8%	51.9%	48.6%	

$$\text{※ 취업률(\%)} = \frac{(\text{건강보험DB연계})\text{취업자} + \text{해외취업자} + \text{영농업종사자}}{\text{졸업자} - (\text{진학자} + \text{입대자} + \text{취업불가능자} + \text{외국인유학생} + \text{건강보험직장가입제외대상})}$$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당자	김지성 사무관
연락처	042-481-4972

4. 문화재 안전경비인력의 전문성 확보 필요

1) 안전경비인력의 담당 문화재에 대한 전문 교육 미흡

- 안전경비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시행 시 문화재 특성에 대한 전문교육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 소방안전관리자격증 미소지자들의 자격증 취득 규정 및 정기적인 화재안전 교육 시행방안 마련 강구

- 신규 안전경비인력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확충토록 하고 자격증이 없는 기존 안전경비인력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내 자격증을 취득토록 독려하여 자격 소지자 비율을 높이도록 하고, 향후 자격 미소지자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차기 계약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아울러 현재 소방안전교육은 상·하반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 안전경비인력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문화재 현장의 실무적 체험·참여형 교육 및 훈련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자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담당자	김동대 사무관
연락처	042-481-4817

1. 지방공무원 1명이 무려 문화재 10.9개 관리

-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관리직원 태부족... 관리소홀 우려, 전라남도 1명당 15.8개 최하위
- 문화재청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전담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해주거나 아니면 국가지정문화재만이라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 지자체별 문화재 관리 전담부서 및 문화재 관리 인력은 시도지정문화재 건수에 비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자체의 조직구성과 인력의 배분은 자치단체의 문화재 현황 및 지역의 특수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문화재는 개인소유 동산문화재부터 광활한 지역의 명승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지자체별 공무원당 관리 문화재 개수를 단순비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지자체 전담인력 확충의 문제는 지자체의 고유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문화재청에서 현실적으로 개입하기에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돌봄사업, 지자체 공무원 역량강화, 주민공감사업 등 간접적으로 지자체의 문화재 관리역량 강화 등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국가지정문화재 직접관리의 문제는 지난 2014.1월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여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향후 사안별로 재원·인력소요 등을 검토하여 국가 직접관리를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배 재 정 의원

【서면질의】

1. 갈팡질팡하는 문화재 정책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당자	김성도 사무관
연락처	042-481-4884

1. 문화재는 보존과 복원이 우선시 된 이후에 활용해야 할 것임

- 서울역 고가도로가 서울역의 역사적 가치를 해친다는 것인가?

- 고가 공원화 사업은 지자체 소관사항이지만, 그 일부가 국가지정문화재인 구 서울역사(사적 제284호)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 가운데 1구역(심의구역)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변경은 문화재청 허가 대상입니다.
- 시행청인 서울시에서 문화재위원회 심의('15.7.28)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정하여 재신청할 경우 공사 중 발생하는 진동, 시설물 설치에 따른 경관 등 문화재 보호에 미치는 영향 여부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에 따라 판단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국제협력과
담당자	김지홍 사무관
연락처	042-481-3184

2. ‘빼앗긴 문화재’, 16만점이 국외로 떠돌고 있습니다. 광복 70주년이라고 하는데 환수해 온 문화재는 9959점, 단 5.8%만이 돌아왔습니다.

1)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올 예산은 얼마입니까? 이 가운데 환수사업 예산은 얼마입니까? 우리 문화재를 조사할 정규직원은 몇 명입니까?

-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연간 예산은 32억 8천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기관 운영비를 제외한 조사연구, 환수 및 활용 등 사업비는 17억 2천만원(52.3%)입니다.
- 아울러, 국외문화재 조사는 출처조사, 실태조사, 유통조사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연구실, 활용홍보실, 일본사무소 등 1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궁능문화재과
담당자	김재길 / 이정연 사무관
연락처	042-481-4773 / 4706

3. 문화재청은 고궁 복원과 관련해서도 애초 세운 계획이 너무 예산이 많이 든다며 수정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든다면 청장 직을 걸고 대통령에게 직언하고, 다른 부처를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고궁 복원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기획재정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향후 궁궐 복원사업 추진방안

[경복궁]

- 경복궁 2차 복원정비사업은 2011년부터 2030년까지 5,400억원을 투입하여 고종 당시의 75.8%인 전각 245동을 복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음.
- 총 6단계 사업 중 1단계 사업예산은 당초계획인 1,038.5억원 대비 18.3%인 190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매년 약 40억원 확보)
- 향후 복원사업 추진 관련 방재관리, 재원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물복원 우선순위 설정하고 사업기간을 조정할 계획임

- ※ 1단계(2011~2016) 복원계획(56동) 대비 2015년 현재 소주방권역 17동 복원으로 30.4% 진행
- ※ 경복궁 복원계획 조정은 관계전문가 검토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0월중 결정 예정(기존 75.8% 복원 → 조정 45% 내외 복원)

[덕수궁]

- 덕수궁 복원정비사업은 선원전 영역의 소유권이 문화재청으로 이전('11년)됨에 따라 덕수궁 선원전 복원정비 기본계획을 수립('15년3월)하여 2039년까지 25년간 약 521억원을 투입, 순차적으로 선원전 영역을 중심으로 덕수궁 복원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담당부서	활용정책과
담당자	여성희 사무관
연락처	042-481-4745

4. 창덕궁 낙선재 권역 숙박 체험 계획,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습니까? 지난달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에서 압도적으로 반대했죠? 기재부는 최종 예산심의 결과 전액 미반영 됐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당초 문화재청은 당해 문화재 내부에 화장실, 욕실, 주방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심의 필요), 한옥체험업과 같이 일상적으로 숙박이 가능한 정책사업으로 궁스टे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 하지만 문화재위원회 검토내용, 언론 보도내용, 국정감사 지적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로써는 궁스테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 다만, 궁궐문화는 당대 최고의 통치 철학 및 최고의 기술과 예술성이 결합되어 있는 문화로,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단숨에 보여주기에겐 상당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궁궐 활용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국민의 문화 향수 욕구를 충족하고 품격있는 고궁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도록 연계 또는 종합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다양한 형태의 고궁문화체험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경복궁 소주방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LNG 등 문화재 안전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현재 운영 중인 전시프로그램(궁중음식 및 재현용품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궁중음식특강 등)을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국립고궁박물관
담당자	김지연 학예연구관
연락처	02-3701-7664

2. 국립고궁박물관 유물 대여

1) 국립고궁박물관 유물 대여 신청 기관 환경 점검

- 국립고궁박물관은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국내·국외 대여규정’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첨1]에 규정된 등록 요건을 갖춘 기관에 소장품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시행령 별표2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요건’에 따라 소장품 보존·관리에 적합한 항온·항습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어야만 등록 가능합니다. 또한 필요 시에는 대여 요청 기관의 시설을 점검하여 소장품의 안전한 전시 환경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국립고궁박물관은 보존 환경 조건이 기재되지 않은 대여 요청문서임에도 소장품을 대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여 요청문서에 보존 환경란이 미기재 되었음에도 의원님의 요구자료에 ‘항온 항습 시설 및 전문 인력’이 갖추어져 있다고 작성 한 사유는 대여 요청 기관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요건에 부합하여 이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의원님의 질문을 잘못 이해하고 본의 아니게 획일적인 답변을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소장품 대여 시에는 대여 기관의 전시 환경 등을 소장품 대여 신청문서에 기재하였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대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공능문화재과
담당자	김명준 사무관
연락처	042-481-4702

3. ‘안전 불감증’ 고궁 야간개장

- 야간 특별관람 지역중 경복궁 경회루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 배치뿐만 아니라 경복궁 정규직, 비정규직 관리요원을 상시 배치하고 있습니다.
- 다만, 자원봉사자의 경우 세부적인 안전관리 교육을 못하였으나 향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또한, 경복궁 경회루, 창덕궁 부용지 등과 같이 야간 사각지역에 발생 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단봉 설치, 구명장비 확충, 안전요원 증원 배치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국립고궁박물관
담당자	김지연 학예연구관
연락처	02-3701-7664

4. 유물전시관의 보존 환경

1) 대여 요청 유물전시관의 보존 환경

- 국립고궁박물관은 국제박물관협회(ICOM)의 ‘재질별 전시보존 온습도’ 기준에 의거하여 ‘소장품 재질별 보존환경 기준’ [별첨2]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국내외 박물관 미술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존환경 기준으로 이미 대다수의 기관에서 이 기준에 근거하여 소장품을 전시·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소장품 대여 요청 시에는 대여 요청기관으로 하여금 이 기준을 지키도록 권고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담당자	이재순 사무관
연락처	042-481-4983

5.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쏘리는 곳만 계속 쏘린다

- 1) 천연기념물 동물 입소 건수가 2013년에는 770건이었는데 2014년에는 1,046건으로 276건이나 증가했습니다. 갑자기 조난을 당한 천연기념물들이 증가한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인 구조활동이 늘어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 최근 5년간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치료 내용은 국감 자료로 제출해 드린바와 같이 다음과 같습니다.

년도별	동물치료소 입소 천연기념물 수	비고
2011	910	
2012	929	
2013	770	
2014	1,046	
2015	470	※ 2015년 6월 말 기준

- 동물치료소 입소건수를 2013년과 2014년 2개년만 비교하면 770건에서 1,046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최근 5년간(2015년은 진행 중으로 제외) 동물치료소 입소 건의 평균은 913건으로 매년 환경 여건 등에 따라 약 10% 정도의 증감이 있으며 '14년도 동물치료소 입소 천연기념물 수가 대폭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 2012년 말부터 동물치료 경비 신청 방식이 오프라인(서류)에서 온라인(전자)로 변경되었습니다.
 - 2013년은 천연기념물 치료경비 청구자(동물 치료소)가 전자 시스템 사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청구 건수가 감소되었습니다.
 - 2014년도는 기존 서면 접수 대비 치료경비 청구자들이 시스템 숙지가 완료됨에 따라 청구가 용이하여 치료비 신청건수가 증가하였습니다.

2) 2014년 한 해 동안 천연기념물 동물치료 건수가 있는 곳은 27군데에 불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동물구조센터를 제외한 일반 동물병원을 살펴보았습니다. 일부 병원에 치료가 집중되고 덩달아 치료비 지급도 물리는 현상이 확인되었습니다.

- 현재 천연기념물의 부상이 접수되면 약 60~70%가 해당 지역의 동물구조센터로 이송됩니다. 일반 동물병원에서는 치료 장비 및 시설의 미비와 반려동물과는 달리 야생동물을 진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라 하더라도 치료의 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 일반 동물병원 중 치료가 집중되는 3개 동물병원은 일반 반려동물을 위주로 하는 동물병원이 아닌 야생동물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동물병원입니다.
 - 그 중 한마음 동물병원은 인천 서구에 위치한 동물병원으로 현재 인천에는 동물구조센터가 설립되어 있지 않아 인천 지역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천연기념물 포함) 전체를 치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충남 공주에 위치한 이기영 동물병원은 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가 건립('10.09.09, 충남 예산 위치) 되기 이전부터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를 전담하던 병원으로 야생동물의 치료에 풍부한 경험으로 현재까지 많은 수의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 고양에 위치한 가람동물병원 역시 경기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건립 (09.03.24)되기 이전까지 야생동물을 치료하던 병원으로 경기도 야생동물구조관리 센터가 경기 남부인 평택에 위치하고 있어 경기 북부에서 발생하는 천연기념물의 치료를 맡고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일반 반려동물을 위주로 하는 동물병원이 아닌 야생동물 전문수의사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에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가 일부 집중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 이상한 부분은 또 있습니다. 2013년보다 2014년도 대폭 치료 동물 수가 늘어나긴 합니다. 그런데 구조센터나 협회의 증가폭은 크지 않은데 일반 동물치료 건수가 164건에서 350건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치료병원 19개소에서 16개소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자연환경, 기후, 병원의 설비 등이 그런 것들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감안해도 이상한 현상 아닙니까? 청장, 여기에 대한 원인 파악한 적 있습니까? 원인을 파악해서 확감 전까지 보고하여 주십시오.

- 2013년과 2014년 2개년 수치만을 비교해 보면 일반 동물병원에서 치료한 건수 164건에서 350건으로 급증한 것처럼 보이나 최근 5년간의 수치를 살펴보면 매년 마다 약 30~40% 정도의 천연기념물의 동물 치료가 일반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일반 병원의 동물 치료가 급증한 것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 최근 5년간 일반병원에서 치료한 동물 치료한 건수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

년도별	치료 내용			비고
	전체	일반병원 치료건수	치료율	
2011년도	910	426	46.8	
2012년도	929	296	31.8	
2013년도	770	164	21.3	
2014년도	1,046	350	33.5	
2015년도	470	129	27.4	

4) 치료비 지급의 불균형 문제도 심각합니다. 아무래도 개인이 운영하는 일반병원은 우선 100% 지급하도록 하고,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물구조센터는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전부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급하지 못한 동물구조센터 치료비가 5,020만 원이나 됩니다.

청장,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한다해도 치료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적극적인 구조활동이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예산 확보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기 바랍니다.

-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경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분기별 집행계획에 따라 지급하고, 일반병원은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심의 금액의 100%를 지급하고 있으며, 동물구조치료센터는 공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 금액의 70~8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동물치료경비 부족예산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 용 교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보존정책과 / 정책총괄과
담당자	정규연 / 김동대 사무관
연락처	042-481-4843 / 4817

1. 문화재 특별점검 F등급 완료 67건 중 10건에 불과

1. 2014년 실시한 문화재 특별점검 이후 F등급(즉시조치)을 받은 67건의 보수정비 사업 중 현재 10건만 완료되었음을 지적, 67건 모두 시도지정문화재로 타 사업의 보수예산이 있어도 지원해 줄 근거 없음.

- 국가지정문화재는 빠른 조치를 취했으나, 시도지정문화재는 빠른 행정적 지원을 통해 보수를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지? 그냥 지자체에만 맡기고 있었던 것인지?

- 즉시 보수가 필요(F등급)한 시도지정문화재(67건)중 12건(17.9%)은 보수정비를 완료하였으며, 50건(74.6%)은 수리 중이거나, 발주 또는 설계 중입니다.
- 아직 보수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문화재 5건(7.5%)에 대하여는 조속히 지방비를 반영하여 조치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 문화재 보수절차 과정에 대한 이해와 빠른 보수를 위해 문화재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든지, 교육을 시켜서 빠른 절차 진행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 보수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F등급 시도지정문화재인 ‘남양주 묘적사 팔각다층석탑’은 전문가 조사 결과 ‘해체보수’이전에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조속히 보수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 현재 문화재청에서 확보한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예산이 넉넉해도 예산을 매칭해 줄 근거가 없어서 못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은 국고보조금 지원이 제한되어 있어 시도문화재 보수에 대한 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문화재청은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해 원활한 재정지원을 위해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 자치단체의 시도문화재 관리에 대한 예산증액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업무평가법 제21조에 따라 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실적을 평가 지표로 반영하였고, 시도문화재에 대한 사전예방적 일상관리 및 경미보수를 위한 문화재 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14 시도지정문화재 돌봄사업실적 : 3,662건 / 54억원

- 행자부와 협의하여, 보통교부세로 받아도 ‘분권교부세 시절에 배정했던 보수 예산 수준에서 활용토록 한다’는 지침만 내려줘도 일부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는데?

- 행정자치부 협의결과, 보통교부세는 일반지출이자 재량지출로 시도지정문화재보수정비 예산을 분권교부세 수준으로 유지하라는 지침은 지자체의 재정자율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당자	김지성 사무관
연락처	042-481-4972

2. 문화재 안전경비원 근로기준법 위반 심각

1. 문화재 안전경비원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에 따른 향후 문제점과 개선방안

- 국가재정 여건상 매년 최저 임금상승률을 반영한 인건비 확보가 미흡하여 '12년 이후 문화재안전경비원 배치 미 확대 및 야간근로수당을 미 지급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안전경비원 배치 : '12년(127건 390명) → '15년(133건 383명)
-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야간수당 소요예산(8.6억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불가피한 경우 예산범위 안에서 배치인원을 조정하여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담당부서	보존정책과 / 발굴제도과
담당자	조주성 사무관 / 임승경 학예연구관
연락처	042-481-4841 / 4950

3. 폐사지 시발굴 조사, 5400여곳 중 3곳에 불과

3-1. 법률의 해석상 명확한 지원근거가 없어 문화재적 가치가 예상되는 폐사지들이 그냥 방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는지?(법 제도 정비 : 매장문화재 3조 단서 조항 수정)

-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매장문화재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이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 행	개 정 (안)
제11조 ③ 매장문화재 유족지역을 발굴하는 경우 그 경비는 --- 해당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③ ----- ----- ----- ----- ----- 다만, 법 제 13조 1항 3호에 따른 <u>폐사지</u>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3-2. 폐사지 보존·관리를 및 폐사지 내 유물 등의 도난·분실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문화재 돌봄사업을 확대하던지, 추가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은지?

- 주요 폐사지 조사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 실시하여 주요 폐사지내 유물 등의 도난·분실 등을 예방하겠습니다.
* ('15년) 13개소 → ('16년) 50개소 내외 / 문화재 돌봄사업 일환으로 실시
- 이와 더불어, 폐사지 조사 책자를 시도, 시군구, 지방경찰청에 배포하여 어느 장소에 폐사지내 유물이 있는지 관련기관에 공개함으로써 도난·분실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궁능문화재과
담당자	김명준 사무관
연락처	042-481-4702

4. 궁능 외국인 관람객 불편사항 1위는 ‘자세한 설명이 다국어로 이뤄져야’

① 4대궁·종묘 관람확대에 따른 준비사항 점검

- 청장은 야간 특별관람 가보신 적이 있는지?

- 고궁 야간 특별관람뿐만 아니라 많은 고궁 활용프로그램,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야간 관람 확대를 실시하는데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 보다 많은 관람객의 문화향유 기회 증진을 위하여 고궁 야간 특별관람을 '15년 48일에서 '16년 120일로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확대에 따른 문화재 훼손, 안전사고 및 제반 준비사항 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안전관리 요원 배치와 문화재 훼손 및 안전사고 예방 강화 방안은?

- '16년 고궁 야간 특별관람 확대 계획에 따라 전문 경비인력 확충(경복궁 40명, 창경궁 30명 / 10억)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며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강화하여 문화재 훼손 및 안전사고를 예방 할 계획입니다.

② 외국어 서비스 불만족 '중국인', '경복궁'에서 상대적으로 높아
- 중국 관광객의 경우, 여행사 가이드와 함께 오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현장의 안내서비스가 왜 불편한지?

-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관광객 대다수가 여행사 가이드 안내로 궁궐을 방문하고 있으나, 관람 만족도조사 참가자는 개인 자유여행객으로 4대궁·종묘에서 제공하는 안내해설서비스를 경험하고 설문에 응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경복궁을 방문한 중국인의 불만족이 높은 이유는 중국관광객이 주로 경복궁을 방문함으로써 산출된 결과로 생각됩니다.
- 불만족의 주요 원인은 중국관광객 증가에 따른 안내시설 인프라 부족(안내판 부재 등)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4대궁·종묘에 '15년 9월부터 무료 리플릿(4개국어) 및 음성 안내기기(4개국어)를 비치·운영하고 있으며, 경복궁 내 주요지점에 중국어·일본어 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15년 10월까지 4대궁·종묘에 중국어·일본어 안내판을 증설할 예정이며 외국인 관람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경복궁도 외국인이 특별히 불편한 점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 최근 한국을 찾는 중국관광객 증가에 따라 궁궐을 찾는 중국관광객 또한 증가하였는데, 안내판 등 안내시설 인프라 부족이 불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③ 외국어서비스 미안내자 '물어볼 곳을 몰라서'

-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지?

- 각 기관별로 매표소 주변 등에 안내부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궁궐을 처음 방문하는 관광객이 인지하기에 홍보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 창덕궁과 덕수궁 외국인 안내서비스 안내 계획은?

- 안내부스 위치 표시 등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④ 관람시 불편했던 사항 1위는 ‘자세한 설명이 다국어로 이뤄져야’
- 궁안의 해설들이 꼭 외국어로 표기되어야만 할 필요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한국 궁능의 역사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다국어 형태로 홍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 고궁을 찾는 외국 관람객 대부분이 중국어·일본어·영어권으로 현재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안내해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다국어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외국어 서비스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외국인 입국자 현황(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15년 7월호 中)

(단위 : 천명)

구 분	2013년	2014년	2014년 1월~7월	2015년 1월~7월	차지비율 (%)*	순위
총 계	12,200	14,264	8,021	7,387	100	-
중 국	4,465	6,276	3,447	3,351	45	1
일 본	2,767	2,300	1,346	1,038	14	2
미 국	800	855	495	499	6.8	3
타이완	578	676	392	319	4.3	4
홍 콩	400	558	313	282	3.8	5
프랑스	77	81	45	48	0.65	18

* 차지율 : ‘15년 1월~7월 총 인원 대비 해당국가 관광객 차지비율

- 현재 야간관람의 경우 외국인은 1일 100~200명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외국인 정원을 추가로 늘릴 계획은 없는지? 의견은?
- 장기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안내서비스를 강화하여 궁 야간관람이 한국의 대표적 관광상품으로 자리잡고, 관광공사와 협업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어떤지?
- 고궁 야간특별관람은 1일 2,500명 관람인원을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어 내·외국인 관람인원 조정에 많은 검토가 필요하나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공사 등과 협업을 통해 보다 많은 외국인 관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끝으로 국민들에게 더 많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재 확대 개방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추가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지? 견해는?
- 내·외국인관광객의 보다 많은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고궁 야간 특별관람을 ‘15년 4회 48일에서 ‘16년 4회 120일로 확대 추진 할 계획에 있으며 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별도의 안전요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 또한, 고궁 야간관람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하여 덕수궁은 연중 상시로 야간 관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국립문화재연구소
담당자	조은경 연구관
연락처	042-860-9216

5. 안전점검·정기조사·안전방재 연구까지 5명이 수행, 문화재 조사·안전방재 연구인력 충원이 필요함

1)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건조물문화재에 대한 안전점검, 정기조사, 안전방재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적하신바와 같이, 최근 관련 업무가 급격히 증가되었음

- 특별점검 후속조치 등 안전방재 연구기능 강화를 위하여 관련부처와 인력증원 협의를 통해 2015년(하반기) 추가 인력 3명을 충원하였습니다.(기존 2명+증원 3명)
- 2015년 9월 현재, 관련부처와 정기조사 등 업무량 증가에 따른 소요정원 요구를 통해 추가 인력 2명 증원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재 점검·조사·연구를 위한 국립문화재연구소 내 문화재 안전방재 전담부서를 신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안전방재연구실 신설 : 11명 규모(실장, 2개팀 운영)

2) 문화재 조사·점검·방재연구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재 안전방재연구 수행

- 중점관리대상문화재 안전점검, 정기조사 등 문화재 현장점검과 재해대응연구 및 구조안정성 평가연구 등 방재연구 업무수행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및 분야별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체계적인 문화재 재해예방 연구를 위한 장비·시설 확충 및 관련분야 R&D 연구 강화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전방재연구 장비 및 실험실 구축, 구조안정성평가 연구 실시
- 지진 등 재해대책 수립마련을 위한 R&D 연구 추진

신 성 범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당자	김지성 사무관
연락처	042-481-4972

1. 폭설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문화재청의 재난 매뉴얼

1) 문화재 훼손을 일으키는 재난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

- 문화재 훼손을 일으킬 수 있는 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산불 등의 재해가 해당됩니다.

2) 세부적으로 각 재난 유형별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매뉴얼이 있는가? 유형별로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 재난 매뉴얼은 태풍, 호우 등과 관련된 풍수해 재난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과 산불 재난 문화재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이 있으며, 최근에 문화재 지진 재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마련하였습니다.

3) 특히 폭설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화재나 폭우, 낙뢰에 대한 피해는 별도의 매뉴얼이 존재하지만 폭설에 대한 대응책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 폭설에 대한 재난 매뉴얼은 국민안전처 풍수해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대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11년도는 총53건 중 18건인 33%, '14년도 38건 중 40%에 해당하는 15건이 폭설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 폭설로 인한 피해 복구예산만 5년간 27억8,025원에 달함. 이에 대해 보고받은 적 있는가?

- 폭설 등 재난에 따른 문화재 피해 발생 시 보고를 받고 있으며, 피해 복구를 위해 문화재청에서는 지자체의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예산신청을 통해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5) 폭설은 폭우나 폭풍과 달리 지붕 등에 눈이 계속 쌓이는 연속성을 갖는데다 누적된 눈 무게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실제 '14년에 부여 대조사 석조미륵보살입상(보물217호)이 설해로 훼손됨. 매년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대처 매뉴얼조차 없다는 것이 심히 우려스러운데 ?

문화재청의 세심한 재난 상황관리가 필요함. 폭설 또한 문화재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재난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람.

- 폭설에 대한 대응책은 국민안전처의 풍수해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로 대처하고 있으며, 앞으로 동 표준매뉴얼에 따라 우리 청 풍수해 재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담당자	신종국 연구관
연락처	061-270-2062

2. 바다에 잠들어 있는 해양문화재 수습만점... 수중전문가 양성을 위해 노력해야

1) 역사적 배경이나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다른 어느 나라 못지않게 많은 해양문화재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신고된 수중문화재 현황은 어떻게 되는가?

- 수중문화재 발견신고해역은 283건('15.8.31)입니다. 이중 151개소는 탐사 및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조사가 불가한 지역인 40개소를 제외하고 미조사 해역은 92개소입니다. 현재 유물발견신고해역 탐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으로 '15년 31개소(21개소 탐사, 9.19 기준) 실시 등 연차적으로 전수조사를 완료(2017년 예정)할 계획입니다.

2) 문화재를 발굴하고 보존·복원하는 작업은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우리 민족 최고의 재산을 확보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실제로 아직은 수중문화재 발굴실적은 매우 미흡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실적은 수중문화재 발견신고해역(17건), 유물매장 추정해역(5건), 도굴해역(2건)을 탐사 및 조사하여 수중문화재 집중 매장처가 확인된 해역에 대해서 이제까지 총 24건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태안 해역은 2007년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5척의 고선박과 3만여 점의 유물을 인양하였고, 조사대상 면적은 1,000,000m² 이상입니다(약 100,000m² 조사/10%). 진도해역은 2012년부터 조사를 실시하여 소소승자총통 등 589점의 중요 유물을 인양하였고 대상지역 면적은 약 147,000m²입니다(약 73,000m² 조사/5%). 추후 지속적인 수중조사가 필요한 해역입니다.
- 또한 신고해역과 유물매장 추정해역에 대해서 연차적인 탐사조사를 실시하여, 수중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노력하겠습니다.

- 3) 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수중발굴에 투입되는 최소인력은 9명인데 실제로 수중발굴에 투입된 인원현황을 살펴보면 이보다 적은 인원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 정규 전문인력 증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에 요구 확보하고 있으며, 부족한 조사인력은 매년 단기간 채용하여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탐사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 4) 현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적학과에서 부분적으로 수중문화재를 교육하고 있는데 육지발굴과 수중발굴은 엄연히 큰 차이가 있지 않나?
- 육지발굴과 수중발굴의 고고학적인 전문지식은 같으나, 다만 조사 대상이 수중이라는 차이로 전문기술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현재 수중문화재 전문교육은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적학과가 유일하며, 그 내용은 이론 및 현장실습을 통해 수중발굴 전문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있습니다.
- 5) 수중문화재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습득에서부터 관련 장비의 작동, 그리고 수중발굴의 실습과 보존처리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함
- 지적인 바와 같이 수중문화재 조사 및 보존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은 없으나, 우리 기관에서는 수중문화재 조사 및 출수유물 보존처리 현장실습학기제, 단기연수과정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전문가 양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6) 앞으로 수중문화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므로 발굴인력들이 조사하고 연구할 수 있는 첨단 조사장비를 도입하고 발굴된 문화재를 보존처리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추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수중문화재 첨단 조사장비는 예산확보 노력과 함께 지속적으로 최신의 장비를 도입하고 있으며, 출수유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보존처리를 위해 태안보존센터를 건립하는 등 보존처리시설도 갖춰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중문화재 조사와 출수유물 보존처리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서	보존정책과
담당자	정규연 사무관
연락처	042-481-4843

3. 문화재 상시관리인력 전문성 강화 위해 노력해야

1) 문화재 상시관리활동사업은 경미하게 훼손된 문화재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사전 예방적 문화재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사후보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과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 문화재 돌봄사업의 성과로서 ‘15년 한 해 10,030건의 사전 모니터링, 46,083건의 제초 및 청소, 그리고 10,674건의 경미수리 등 총 66,787건의 돌봄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점점 더 나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만, 경미수리 비중(16%)이 제초, 청소 등의 일상관리(69%)에 비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2) 실제로 제초나 청소 등 일상관리 관리업무 비율은 높고 문화재 훼손 예방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은 저조한 상황인데 사업 본래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나?

- 현재 제초, 환경정비 등의 일상관리 업무가 돌봄사업 활동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등 업무의 불균형을 보이고 있어 이는 당초 주 사업목적의 하나인 경미한 문화재 훼손 복구를 통한 사후 보수정비 부담 경감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하고 볼 수 있습니다.

3) 문화재 훼손 상태를 상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과학적인 모니터링 뿐 아니라 전문적인 분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서울, 부산, 울산 등은 문화재 상시관리 활동의 전문적인 분야로 볼 수 있는 모니터링 실적이 전문한 상황인데?

- 지적하신 광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함)는 별도 위탁단체 없이 지자체 직영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이 들 지자체에 대하여는 돌봄사업을 잘 수행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 같이 전문단체를 육성하고 이를 통해 전문적인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또한 전국 평균 문화재돌봄사업단원이 1인당 담당하는 문화재 개소는 몇 개소인가? 1인당 몇 개소의 문화재를 담당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가?

- 돌봄사업 1인당 담당 문화재 개소는 평균 12개로 다소 높은 상황입니다. 돌봄사업 대상 문화재는 20km에 달하는 산성부터 나홀로 문화재까지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1인당 몇 개의 문화재를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인가하는 판단의 실익은 그리 크지 않다고 봅니다.
- 향후 예초부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의 투입을 줄이고, 문화재 사전 모니터링 및 경미 보수에 대한 투입을 높여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정립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 현재 문화재돌봄사업 상시인력은 몇 명으로 파악하고 있는가?
상시관리 근로자 중 문화재 자격증 소지자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6) 문화재 상시관리 업무에는 제초, 청소 외에 모니터링, 경미한 수리 등도 있으며 이러한 업무는 일정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됨.
이에 지역별로 적정 규모의 문화재 기능 자격자 채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 2015년부터 모니터링 전담 직제 의무화, 경미수리팀의 자격증 소지자 의무 채용 도입으로 점차 자격증 소지자 채용을 늘리고 있습니다.['15년 8월 현재 상시인력 553명, 전문 자격증 소지자 74명(13.3%)]

7) 문화재 기능자격자 채용이 예산(인건비) 등의 문제로 어렵다고 판단될 시 대안은 있는가?

→ '14년 문화재 돌봄사업 지침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급여 165만원 + 자격증 수당 20만원 수준임. 15년 하반기 문화재기능자 노임 평균 19만원/일 임

- 현재 돌봄사업 지침에 따른 임금 수준으로는 문화재 수리기능자를 채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 헌신에 따른 봉사의식, 문화재 수리에 대한 자부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근로시간 등의 사유로 점차 자격증 소지자 채용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현재 돌봄사업 전임제에서 문화재 수리 현장 중복 참여를 허용하는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8) 각 단체별로 실시하고 있는 문화재 돌봄사업 자체교육의 경우 이론적인 소양교육 등에 불과한데 돌봄사업의 취지에 걸맞기 위해서는 실무 적용이 가능하도록 실습교육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9) 이마저도 1%안의 적은 예산으로 문화재 훼손 예방 및 전문 모니터링을 담당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 현재 문화재 돌봄단체의 교육비는 1%를 하회하고 있으며 청에서 상하반기 1회씩 자체 워크숍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별도 교육비를 책정하여 각 단체에서 수행하는 자체교육의 비중을 줄이고 실무에 기반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10) 청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경우에도 교육기준 및 지침 등의 커리큘럼이 없어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보이는데 이들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 교육기관의 통일된 교육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며 돌봄사업 전문 교육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인 연중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문성 향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문화재 돌봄사업 전담 교육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관심과 도움을 당부드립니다.

11) 문화재 돌봄단체의 모니터링 및 결과 분석 등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는 유능한 청년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육성하여야 하는데 문화재청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 전문 자격증 소지자 채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청년 인재의 채용을 위해서는 급여, 복리후생, 직업 장래성 등 다양한 부분의 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돌봄사업단 급여체계 개선, 1년 위주 단년도 계약관행의 장기화 유도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안 민 석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정보화담당관
담당자	이태호 사무관
연락처	042-481-4755

1.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쓸 돈을 문화재 수리비에 썼다면? 어플 3개 개발하는데 20억원 펴

1) 3개 앱(창덕궁, 덕수궁, 경복궁)을 합치면 무려 20억 원에 달하는데 그럴만한 건지?

- 문체부·행자부·미래부로부터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공서비스 촉진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한 사업입니다.
- 동 사업 비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자부)에 따른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및 DB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 등에 근거해 산출했습니다만,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게 사실입니다.
※ 최근에는 IT기술 일반화 및 다수의 중소 개발업체 경쟁으로 구축비용 감소
- 앞으로 신규 앱 구축 계획 수립 시 활용성·중복성·비용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2) 단순한 이미지·동영상, 위치기반 서비스 밖에 없으며, 정작 다운로드 건수도 많지 않음

- 단순한 이미지·동영상, 위치기반 서비스뿐 아니라, 증강현실·사물인터넷·웨어블 문화재 3D재현 등 당시 최신 ICT기술을 접목해 스토리텔링 기반의 문화유산해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향후 모바일 앱 이용활성화를 위해 고궁·종묘 관람객을 대상으로 현장 홍보를 강화하고, 홈페이지·SNS 등 온라인 홍보와 지자체·문화관광 단체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추가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 지금 개발하고 있는 ‘내 손안의 창경궁’ 앱을 4억원 가까이 들여서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 우리나라 대표적 명소이자 문화유산인 고궁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최신 통신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관광안내해설·체험 등 이용자의 관람 환경 개선을 위해 모바일 앱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내 손안의 창경궁’ 앱은 2015년 모바일 개선사업의 과제 중 하나로 구축비용은 187.8백만 원입니다.
- 참고로, 2015년 모바일 개선사업의 총 비용은 382.5백만 원이며, 창경궁 앱 이외에 4대궁·종묘를 테마로 한 통합 앱 환경 구축 및 기존 앱 서비스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담당자	이재순 사무관
연락처	042-481-4983

2. 현재 천연기념물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음

1) 청장님, 우리 천연기념물도 문화재청에서 관리해야 할 대상 아닙니까?

- 천연기념물은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로 국보·보물 등과 같이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우리 청은 종으로 지정된 천연기념물 동물의 보존·관리를 위해 동물치료소의 지정·운영 및 현상변경 절차 이행 등의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나 천연기념물 동물은 이동이 자유로워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분포하여 관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앞으로 천연기념물 동물의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및 예산 확충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서	법무감사담당관
담당자	곽수철 서기관
연락처	042-481-4714

3. 문화재청, 상명대, 문화재위원 관련업체 총체적 비리 공범 유착의혹 관련

1) 고위직공무원 유착 및 이권사업 개입 등

- ○○대학교 이○○교수(전 문화재위원)에 대한 민원 신청('14.12.8, '15.1.28)에 따라 이○○ 교수와 문화재청의 유착관계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06년부터 '14년까지 천연기념물과에서 추진한 명승·원지·별서정원·식물 등 관련 용역은 총 39건이고, 이중 이○○교수는 ○○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사)한국○○○○학회의 책임연구원으로 총 20여건에 참여 신청하여 8건의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동 용역은 경쟁입찰 공고 후 제안서 평가 등의 법과 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업체가 선정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우리 청 전·현직 공무원 6명이 ○○대학교 대학원 재학 중 학교로부터 등록금의 0~83%까지 공식적인 장학금을 받은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해당 교수로부터 별도의 장학금을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현재 이 건에 대한 조사는 완료되었으며, 추후 별도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추가 조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 ※ 한편 이○○ 교수의 차명계좌 사용에 대해서 경찰 수사 의뢰('15.2.26)하였으나, 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사유로 내사종결처리('15.4.6)되었음.

2) 문화재위원, 문화재수리기술자 출제 및 면접자격 특혜

- ○○대학교 이○○ 교수는 2012년 문화재수리기술자 시험에 사전 출제위원 및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였고, 2014년 해당 시험의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였으나, 해당 시험의 출제위원 및 면접위원 선정에 대해서는 2008년 해당 시험의 시행처가 우리 청에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전환되어, 2008년 이후로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자체 기준에 따라 후보자 심의위원회를 열어 출제·면접위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 문화재위원 해촉('14.9.15)

3) 국고연구, 용역비 횡령 및 상명대 한인건축연구교수 허위계약 결과물 착취, 지자체 이권개입 등

- 우리 청 소관 국고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상기에 기술한 것과 같이 경찰에 이○○교수 등을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한 바 있으나 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사유로 내사종결 처리되었으며, 그 외의 사항은 우리 청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안 홍 준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해양유물연구과
담당자	곽유석 연구관
연락처	061-270-2082

1. 문화유산의 사각지대, 해양문화유산조사 활성화해야!

1) 섬문화유산조사

- 우리나라 섬은 3,237개로 그 중 유인도는 470개입니다. 이들 섬은 전통문화원형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으나, 각종 개발과 고령화, 원주민 이주 등으로 인하여 급격히 소멸되고 있어 이들 섬지역 해양문화유산의 현황파악을 위한 조사/기록의 시급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이에 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는 이들 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2007년부터 해양문화유산의 현황파악을 위하여 섬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9권의 보고서와 9편의 다큐멘터리 제작 보급 및 활용으로 섬 주민들과 향우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 있으며, 그 중 중요하다고 파악한 신안 우이도선창은 문화재로 지정(전라남도 기념물 제243호)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 수군진유적조사

-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환경으로 고대부터 현대까지 해양방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해양요충지에 관방시설인 수군진을 설치·운영하여 주민들을 보호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수군진 유적은 우리나라 해양방어시설의 지리·환경·역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해양문화유산입니다.
- 전국의 수군진 유적(60개소)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파악과 체계적인 조사 및 연구를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라좌수영 및 소속 수군진(14개소)에 대한 조사보고서 발간, 전라우수영 및 소속 수군진(7개소) 조사보고서 발간에 이어 현재 경상우수영 및 소속 수군진 유적을 현지조사하고 있습니다.

3) 문제점 및 향후 계획

- 섬문화유산조사
 - 섬문화유산조사는 주민들의 생업, 생애사, 전통민속, 전통가옥, 전통선박, 전통신앙, 사회구조, 고고역사 등 종합적인 성격의 조사가 실시되어야 하므로, 한정된 인원과 예산으로 차후 중요 유인도 50여개 조사를 조속히 조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공동화되어 가는 도서 해양(섬)은 최근 국가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서, 국가 영해, 영토 보호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실질자료이므로 역사/문화유산 조사의 필요는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현재 6명의 연구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현지조사와 연구를 위한 연구인력 3명 증원 및 영상물 촬영과 제작을 위한 전문인력 1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수군진 유적조사

- 현재 수군진 유적 중 국가문화재(사적 6건, 국보 3건), 시도문화재(기념물 28건, 유형문화재 6건, 문화재자료 4건)로 지정되는 등 일부만 정비·관리되고 있습니다. 향후 수군진 유적 현지조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존정비·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전국적인 학술심포지엄 실시로 지역별 중요유적 선별, 선별된 유적 문화재 지정, 지정된 유적의 보존정비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그러나 수군진 유적 역시 다른 문화유산과 함께 도심화 사업 등의 공사, 최근 자치단체에 의한 유적의 중요성 인지로 부분적인 정비가 실시되고 있으나, 학술적 조사가 미비하여 그 원형을 알 수 없는 상태로 정비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그 원형 보존과 멸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 최근까지 진행된 조사는 개별유적의 보존과 정비 등에 따른 부분적인 조사였으나, 국가기관의 체계적·종합적인 조사를 위해 연구인력 3명의 증원과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는 의원님의 지적대로 이들 해양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전문인력과 타당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자 합니다.

염 동 열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담당자	최재혁 사무관
연락처	042-481-4920
담당부서	국립고궁박물관
담당자	노명구 / 김지연 연구관
연락처	02-3701-7631/7661

1. 전통문화유산, 한류의 옷을 입다!

1) 향후 계획 중인 문화재 해외 전시는?

- 국립고궁박물관은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국내·국외 대여규정’에 따라 소장품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국외 박물관 및 미술관 등에서 조선왕실문화와 관련한 전시에 우리 관 소장품의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규정에 의거하여 대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획이 확정된 국립고궁박물관 주최의 문화재 해외 전시는 현재 없으나, 향후 해외 왕실문화 관련 박물관 및 기관과의 교류를 지속하여 여건이 마련되는 경우 조선왕실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해외전시를 추진하겠습니다.

2) 2018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우리나라 문화재를 전시하여 약 5만여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관람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 2018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우리나라 문화재를 전시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의 우수함을 알리고, 관심을 높이는 것은 세계 속에 문화한류를 드높이기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강원도(평창군)와 협의를 통해 올림픽 기간 중 문화재 대여 및 전시를 추진하여 우리 문화재를 홍보선양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 진품을 원래 위치였던 오대산에 전시한다면 사고본 환수를 위해 노력한 강원도, 평창, 월정사 모두에게 아주 뜻 깊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사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월정사 인근에 건립 중인 ‘오대산사고 전시관’이 완공되면, 우리 청에서 ‘영인사업’으로 복제·제작하고 있는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74책)과 조선왕조 의궤(83책)를 평창군에 대여전시토록 하겠으며, 또한 올림픽 기간 등 계기별로 진본 대여 전시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 기 홍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 조선왕릉관리소
담당자	김성도 사무관 / 유재식 서기관
연락처	042-481-4884 / 02-3700-1810

1. 태릉선수촌 문화재 지정은 어불성설

1. 대한체육회가 신청한 태릉선수촌 내 건물은 50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물로 있음, 50년이 미경과된 건축물을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나?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에서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 제작, 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50년 이상이 지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것은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태릉선수촌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것인지, 태릉선수촌 철거계획을 이행할 것인지?

- 태릉선수촌 등록신청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문화재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의 결과에 따라 신중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 기반시설이 부족한 체육계 현실을 고려하여 진천선수촌 2단계 완공 시점('17.10월)과 맞 평창 동계올림픽('18.2월) 이후 대한체육회의 이전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철거 및 능제복원에 대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담당자	조성래 사무관
연락처	042-481-4986

2. 문화재청, 천연보호구역 보호의 관점으로 설악케이블카 문제 다뤄야

1. 문화재청은 케이블카를 보는 관점을 오직 천연기념물, 천연보호구역 보호에 맞춰야 함. 그렇게 하겠는가?

-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은 폭포 등 아름다운 경관과 다양한 동식물이 자라고 있는 서식처로 귀중한 자연유산입니다.
- 향후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이 들어 오면 설악산의 생태환경, 경관 등을 고려하여 문화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유 은 혜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궁능문화재과
담당자	김명준 사무관
연락처	042-481-4702

1. 여전한 암표상들, 제재 않는 문화재청

- 고궁 야간 특별관람 관람권 인터넷 예매 시행 초기부터 암표매매 피해예방을 위해 예매자 본인 신분 확인을 통해 관람권을 교환하여 주고 있으며, 관할 경찰서 협조를 통해 상시 단속하고 있습니다.
- 또한, 건전한 경로를 통한 관람권 구입 안내 인터넷 댓글달기를 실시하여 홍보를 하고 있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정식적인 기관명칭 등을 사용하지 않고 실시한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향후, 인터넷 댓글달기 캠페인의 경우 캠페인 주체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문화재청 기관 명칭으로 실시 할 예정이며,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 관련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암표 피해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고궁 야간 특별관람 관람권 암표 관련사항은 많은 관람수요를 충족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며, 보다 많은 국민들이 관람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고궁 야간 특별관람을 '15년 4회 48일에서 '16년 4회 120일로 확대 추진 할 계획에 있습니다. '16년 고궁 야간 특별관람 확대로 많은 관람수요를 충족하게 되면 암표 등의 불건전한 거래는 많이 개선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활용정책과 / 한국문화재단
담당자	김대훈 사무관 / 홍혜진 팀장
연락처	042-481-4741 / 02-3011-2131

2. 4년 동안 5배 뛴 기관장 성과급

- 한국문화재단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임원 보수지침(상한선 60%)을 준용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선에서 약 3% 정도씩 인상되었습니다.
- 다만, 2010년 8백만원에서 2011년 28백만원으로 성과급이 다소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0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했던 복리후생 관련 수당을 연봉화하는 과정에서 성과급으로 전환하고,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기관장 연봉 평균수준을 감안하여 지급한 금액입니다. (100명이상)
(수당 : 18,000천원, 성과급 증가 19,790천원)
- * 2010년 기관장 연봉(기본급, 성과급 등 포함) : 문화부 산하기관 평균 143,587천원
(재단 99,421천원)

- 2014년 부채비율을 평가 항목에서 제외한 사유는 2014년 외부 회계법인 감사 지적으로 회계결산 방식을 개선·변경(퇴직급여충당부채금을 법인세법 5% 부채 → 일반 기업회계기준 100% 부채) 하면서 동일한 기준으로 산출하기 어려워 지표에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 향후, 임원 성과평가 시 현재 재단에서 진행 중인 한국문화재단재단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의 중점추진과제 지표(계량지표)들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표를 개발하여 계량지표를 70% 이상 반영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기획운영과
담당자	신곤호 사무관
연락처	02-3701-7611

3. 외국인 관광객 흡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1) 국립고궁박물관의 외국인 관람객 유치를 위한 조치 필요

- 개관 이래 매년 국립고궁박물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2014년 경복궁과 민속박물관의 내국인 방문객 대비 외국인 관람객 유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위: 명, %)

구분	2014년 총계	내국인	외국인	비율	외국인 단체
경복궁	5,710,669	3,792,721	1,917,948	33.6	1,513,748
국립민속박물관	3,271,027	1,055,360	2,215,657	67.7	(별도 집계 없음)
국립고궁박물관	2,106,183	1,943,188	162,995	7.7	(별도 집계 없음)

※ 외국인 단체 10인 이상 집계

- 위와 같이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이면서 외국 관광객의 필수 코스인 경복궁을 찾는 외국인의 관람이 국립고궁박물관 방문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단체 관람객의 한정된 관람시간과 이동 수단인 버스의 주차·정차 문제가 가장 크다고 판단됩니다.
- 대다수를 차지한 중국 단체 관람객들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버스에서 하차를 하고, 경복궁의 북문인 신문문을 통하여 입장을 하고 있음. 이때 단체 관람객들이 경복궁과 민속박물관을 관람하는 동안 경복궁 주차장에 버스를 주차하거나 청와대 부근 경복고등학교 부근에 임시 주·정차를 한 후 관람이 끝나는 시간에 맞추어 건춘문 앞 도로 한쪽에 주차·정차를 한 후 관람객을 승차시키고 있는 실정임.
- 아울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가장 인접한 경복궁 서쪽인 영추문 앞 도로(효자로)는 보안상, 관광버스가 다닐 수도 없고 주·정차도 할 수 없는 관계로 외국인 단체

관람객이 고궁박물관을 찾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

- 향후에 우리 박물관에서는 경복궁이나 민속박물관 등을 찾는 외국인 단체 관람객이 고궁박물관을 찾을 수 있도록 한국여행업협회 등 유관단체와 업무협의를 통하여 여행사에서 외국인 관람객 방문 동선에 고궁박물관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고 특별전·문화행사 등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기관 간 연계 홍보 확대방안(경복궁 내 관람유도 안내판 설치, 궁궐 입장권에 고궁박물관 안내, 매표소에 외국어판 홍보물 비치 등)도 마련하여 더 많은 외국 관람객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내판 설치 관련 경복궁관리소와 협의 중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당자	권점수 사무관
연락처	042-481-4882

4. 한옥스테이로 지정된 20개의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 용도변경을 위한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 건축법상 한옥체험업은 용도변경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방관하는 것은 문화재청의 안일한 대응임
- 한옥체험업으로 지정된 문화재들의 현상변경을 확실히 시행하고, 지자체에는 명확한 지침하달이 필요함
- 한옥체험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한옥에 전통문화 체험시설과 욕실,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추면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주택 용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통문화 및 숙박 등 생활체험을 하는 형태이며, 건축법상 상업지역에만 가능한 숙박시설로 변경하면서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를 받는 숙박업과는 구분되는 다른 형태입니다.
- 고택에서 소유자가 생활하던 것을 일반인도 생활체험을 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것은 용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에 용도변경 현상변경 허가과정은 없었으며, 다만 그에 필요한 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향후 국가지정문화재를 활용한 한옥체험업과 관련하여 지자체에 명확한 지침시달하고 부가적인 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현상변경허가를 철저히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 인 태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당자	남상범 서기관
연락처	042-481-4923

1. 문화재감정위원 1명당 문화재감정 건수 1000건? 문화재가 해외로 밀반출 되어도 알 길 없어

1) 문화재감정건수에 비해 문화재감정위원의 수가 부족하고, 문화재감정위원이 특정 분야에 치중되어 있고, 화상감정실적과 해외 밀반출 단속현황도 적음. 우리 문화재가 해외로 밀반출 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정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고 보는데

- 미 배치된 분야 감정위원에 대해서는 최근 비상근위원 채용('15.6.15)시 외국문화재(2명), 근대매체(1명) 분야 전공자를 채용하였으며, 향후 상근 문화재감정위원의 충원, 분야별 문화재감정위원의 배치, 감정위원 교육(워크숍 1회/ 상시 5회) 강화, 화상감정시스템을 통한 전문분야 감정위원의 감정을 통해 철저한 감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밀반출 문화재사범 검거 및 회수를 위해 관할 경찰청 문화재전담반과의 긴밀한 공조수사 및 문화재감정관실을 통한 공항·항만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조 체계를 갖추어 문화재의 해외 밀반출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관 석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고도보존육성과
담당자	김광열 사무관
연락처	042-481-3104

1.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공주 공산성, 땀질식 보수 공사 이후 성곽 배부름 현상 더욱 심화

1) 1,400년 동안 금강변에서 멀쩡히 잘 있던 공산성이 4대강 사업 때문에 이렇게 망가져도 제대로 복원이 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 ‘13.9월 공산성 부근의 붕괴된 성벽(약10m)에 대한 전면 발굴을 실시한 결과 1970년대 다시 쌓은 성벽으로 확인(수통, 비닐봉지)되었으며, 붕괴의 원인은 성벽 자체의 구조적 문제점이 원인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2014.5월 언론 보도 참조)
 - 붕괴원인 : 경사면 최하부 석재의 이탈, 면석과 뒷 채움석의 구조적 분리(심석 부족), 상부의 하중 등이 원인으로 확인됨
- 이와 함께 붕괴원인의 정확한 조사를 위해 ‘14.1월부터 지질, 지반, 수리, 구조, 보존 등 5개 분야에 대한 정밀조사용역(공주대학교)을 진행하고 있으며 ’15.12월 용역 결과에 대한 언론보도 및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상기 용역에 의한 계측결과 붕괴 우려가 있는 구간의 성벽은 문화재위원회 보고(‘14.7월)한 결과에 따라 부분적으로 해체 보수를 완료하였거나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별첨 1 :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2) 4대강으로 망친 문화재 일시적으로 땀질 복원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만 하면 되는 겁니까, 또 무너지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공산성 주 출입통로(소방도로 역할)에 설치된 철강재 및 철판은 ‘13.9월 성벽붕괴 이후 실시된 위험성벽 조사에서 배부름 현상이 확인되어 관람객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긴급하게 설치한 안전시설물 입니다.
- 여기에 최근 공주시에서 철강재를 은폐(경관 개선)할 목적으로 철판을 덧대고 금서루 단청 문양과 성벽 형태를 그린 것으로 문화재 보수 차원에서 실시된 사항이 아닙니다.
- 철강재 및 철판 등은 정밀조사 용역 완료 이후 공주시와 협의하여 해체 등 후속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3) 문화재청의 수장으로서 전면적인 재조사를 민간 전문가, 학계, 관이 함께 하는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 '14.1월 정밀조사 용역 발주와 함께 이미 민간단체, 고도주민협의회, 학계, 관계 전문가, 관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총 13명)하여 최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담당부서	활용정책과
담당자	여성희 사무관
연락처	042-481-4745

2. 창덕궁 낙선재에서 숙박업, 경복궁 소주방에서는 식당 운영하겠다는 문화재청

1) 올해 5월부터 총 3차례에 걸쳐서 기획재정부에 창덕궁 궁스테이와 경복궁 외소주방을 식당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약 76억원 가량 요청하셨더라고요. 제 말이 맞습니까?

- 2016년 사업 예산에 대하여 5월 1차 요구시에는 궁스테이 관련 예산 내용은 없으나, 7월 2차, 8월 3차 요구시에는 기반시설 정비, 수라간 운영 사업 등을 위하여 예산을 약 76억 정도 요구하였습니다.

2)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궁스테이를 하는데, 창덕궁 안에, 전기 들어오고, 서양식 양변기가 있고, 싱크대 같은 주방 시설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조선의 궁궐 생활상입니까? 아니면, 그냥 개량한 한옥스테이 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론 한옥스테이도 이렇게까진 안하는데, 청장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3) 보통 이런 하루나 이틀 머무르는 스테이 사업은 하나의 생활, 전통, 우리 문화를 체험하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조계종에서 하는 템플스테이를 해도 제가 템플스테이 하는 데에서 내부에 서구식 양변기, 싱크대 같은거 두고 한다는 이야기는 못들어 봤어요. 이게 의미가 있겠어요?

- 궁스테이 사업은 고품격의 궁중문화를 직접 체험, 문화재의 가치를 더 넓게 알리기 위한 기획으로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궁궐에 담긴 정신적 가치를 체득하기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추진 검토한 사항입니다.

- 문화재 외관의 변형없이 궁궐 활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부 시설 정비만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문화재위원회 검토내용, 언론보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궁스태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4) 내부 다 뜯어고치고, 창덕궁에서는 편안하게 숙박을 하고 외소 주방에서는 식사를 하는 이런 사업 아이디어, 누가 낸겁니까? 문화재청 내부에서 나온거예요? 아니면 밖에서 사업자가 들고 온 거예요? 청장 말씀해 보세요! 이거 문화재청이 직접 운영하려 한겁니까? 아니면 민간업자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려고 한겁니까?

- 문화재청은 궁궐·서원·향교 등 문화재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활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궁 스테이’ 사업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고품격의 궁중문화를 직접 체험, 문화재의 가치를 더 넓게 알리기 위한 기획으로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궁궐에 담긴 정신적 가치를 체득하기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내부적으로 추진 검토한 사항입니다.
- 운영주체 등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나, 8월 12일 문화재위원회 검토시 제출한 사업계획(안)에는 기본적으로 한국문화재단 등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5) 기본적으로 운영방식이나 계획, 수익 모델이 나왔으니 구체적으로 리모델링 방안과 활용방안도 제시한 것이라고 보이는데, 기재부에 예산도 신청하고 사적분과위에 현상변경 신청도 한 것 아니예요! 말씀해 보세요. 누구 아이디어예요?

- 당초 문화재청은 당해 문화재 내부에 화장실, 욕실, 주방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문화재 위원회의 현상변경심의 필요), 한옥체험업과 같이 일상적으로 숙박이 가능한 정책 사업으로 궁스태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 하지만 문화재위원회 검토내용, 언론 보도내용, 국정감사 지적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궁스태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 다만, 궁궐문화는 당대 최고의 통치 철학 및 최고의 기술과 예술성이 결합되어 있는 문화로,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단숨에 보여주기에선 상당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궁궐 활용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국민의 문화 향수 욕구를 충족하고 품격있는 고궁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도록 연계 또는 종합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다양한 형태의 고궁문화체험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경복궁 소주방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LNG 등 문화재 안전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현재 운영 중인 전시프로그램(궁중음식 및 재현용품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궁중음식특강 등)을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담당자	박관용 사무관
연락처	042-481-4811

3. 문화재 보호기금

1) 문화재보호기금법의 최초 취지와 자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현재 문화재보호기금이 어떤 재원으로 얼마나 마련 되어 있는가?

- 문화재를 보존·관리하는 데 안정적이고 신축적인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소중한 문화유산을 잘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기금법이 제정되었음.
- 문화재보호기금은 2015년 기준 1,420억원이 운영되고 있음. 조성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371억원), 복권기금전입금(696억원), 입장료 등 자체수입(86억원), 여유자금 회수(266억원)로 수입재원이 구성됨.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입재원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집행	집행	집행	집행	집행	계획	
1. 자체수입	기부금	0	0	0	0	0	0	6.1%
	입장료수입	3,217	3,310	3,961	4,569	4,744	4,569	
	재산수입	2	563	677	740	1,187	1,543	
	기타수입	30	906	2,414	2,200	1,211	2,500	
2. 정부내부수입	일반회계전입금	79,588	37,148	37,148	28,148	37,148	37,148	26.2%
	복권기금전입금	35,840	51,596	56,782	69,746	68,049	69,593	49.0%
3. 여유자금	여유자금회수	0	36,673	36,780	24,604	28,626	26,611	18.7%
합 계		118,677	130,196	137,762	130,007	140,965	141,964	
▣ 사업비, 총지출(A)(27개 세부사업)		82,005	93,244	113,158	100,314	100,952	105,318	
1. 문화재 보존을 위한 예방적 관리 (8개 사업)	소 계	29,540	30,401	38,686	37,846	46,104	49,112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9,000	9,000	9,930	7,944	7,221	15,935	
	문화재 종합관리체계 구축	2,556	5,481	4,695	4,695	5,398	-	
	궁능방재시스템구축	7,293	8,647	8,864	8,944	10,025	9,352	
	문화재 돌봄사업	4,891	2,980	6,929	7,416	10,591	11,330	
	출토유물보관센터건립지원	5,800	4,293	6,607	5,602	3,038	5,095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0	0	144	1,600	6,245	400	
	서해수중유물보관동건립	0	0	607	416	2,194	7,000	
	문화재방재운용기반 강화	0	0	910	1,229	1,392	-	
	소 계	9,100	8,097	14,834	10,674	10,650	10,490	
2. 문화재 긴급 보수·복원 (3개 사업)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6,000	5,000	8,534	5,000	5,480	5,000	
	국내외 문화재 긴급매입·관리	2,000	1,997	5,000	4,000	3,600	3,600	
	폐사지 등 비지정문화재 조사	1,100	1,100	1,300	1,674	1,570	1,890	

구 분	수입재원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집행	집행	집행	집행	집행	계획
3. 매장문화재의 소규모·긴급 발굴 (2개 사업)	소 계	5,656	5,673	8,459	8,425	14,403	13,460
	군부대주둔지문화재보호	470	473	459	425	448	460
	소규모·긴급발굴조사지원	5,186	5,200	8,000	8,000	13,955	13,000
4. 민간의 문화재 보호활동 육성·지원 (5개 사업)	소 계	3,308	3,254	3,459	3,714	4,346	5,325
	문화재보호민간참여활성화	586	598	577	1,190	996	1,320
	남북간문화재교류협력	400	300	492	0	300	300
	천연기념물보호관리단체지원	500	530	530	580	880	880
	일반 문화재 조사연구	1,572	1,576	1,610	1,594	1,470	2,160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 지원	250	250	250	350	700	665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활동 (8개 사업)	소 계	34,313	45,696	47,554	39,492	25,234	26,755
	아·태무형문화유산전당건립	11,445	21,843	22,734	14,298	-	-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	2,406	1,146	1,027	999	1,253	1,511
	헤리티지채널 구축·운영	-	1,698	1,696	1,654	2,373	3,080
	문화재연구소(R&D)(5개 사업)	20,462	21,009	22,097	22,541	21,608	22,164
6. 기금운영비	기금 운영비	88	123	166	163	159	176
기금간거래	복권기금 반환금(B)	0	0	0	1,067	1,058	2,166
여유자금	여유자금운영(C)	36,673	36,952	24,604	28,626	38,955	34,480

2) 제정 이후 5년 안에 5천억 원의 기금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2015년 현재 기금 운용자금은 389억 원으로 5천억의 8%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 당시 언론에 공표된 5,000억원 관련 내용은 2005년 11월 첫 기금법안 제출 당시 비용추계서에 있는 내용으로 17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되었고, 2008년 제출된 법안에는 5,000억원 내용은 없음
- 2005년 법안에는 1년에 1,000억원씩, 5년간 누적금액 5,000억원 기금을 조성하고 그 이후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2008년 제출 법안에는 국가 출연금, 복권기금 전입금, 관람료 수입 등 조성 재원만 언급되어 있음
- 2015년 현재 문화재보호기금은 1,420억원이 운영되고 있고,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문화재 보존을 위한 예방적 관리, 긴급보수, 매장문화재의 소규모·긴급발굴, 민간의 문화재 보호활동 육성·지원 등에 매년 1천억원 이상이 활용되고 있음

3) 특히, 아·태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문화재연구소(R&D)사업은 매년 각각 200억이 넘는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문화재의 긴급 보수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이라고 청장은 생각하십니까?

- 국립무형유산원(구, 아·태무형문화유산전당, 2010~2013년 건립, 총 725억원), 문화재연구소 연구개발(R&D)사업(매년 약 230억원)은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문화유산의 학술조사 및 연구 사업으로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기초를 다지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금의 우선 용도는 긴급한 보수·복원이나 유지·관리인 것이 타당하나, 기금법 제정 취지가 열악한 문화재 일반예산 이외에 안정적이고 신축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문화재보호기금은 최초의 취지대로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만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함. 청장도 같을 것임. 일반사업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처리하고, 문화재보호기금은 긴급을 요하는 일에만 쓰면서, 최초 목표인 5천억 원의 기금을 먼저 조성한 후 그 운용수익으로 기금을 운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문화재를 보존·관리하는 데 안정적이고 신축적인 대응이 가능한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소중한 문화유산을 잘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기금법이 제정된 것으로, 문화재의 긴급 보수나 유지·관리를 포함한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용하고 있음
- 문화재보호기금은 문화재청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엄격히 통제 및 관리되고 있으며, 문화재보호기금은 사업성 기금으로 매년 적립식이 아니고 당해 연도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을 운용하고 있음. 다만, 연도 중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기 위해 당해 연도 예산의 일부를 여유자금('15년 345억원)으로 편성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임
-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감사드리며 지적하신 대로 문화재보호기금법의 최초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담당자	이문갑 서기관 / 최재혁 사무관
연락처	042-481-3110 / 4920

4. 울산시, 식수원 부족 주장 근거 없다는 국토부 결론에도 카이네틱댐 설치에 수백억 예산 낭비하는 문화재청

1) 문화재계 전문가들은 카이네틱 댐이 반구대 암각화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고 문화재적 가치를 현격히 훼손시킬 것이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으며, 카이네틱 댐을 설치할 경우 세계유산 등재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 카이네틱 댐 설치에 대해서 이견은 있을 수 있으나, 우리 청과 울산시에서는 카이네틱댐 검증테스트 등 문화유산 안정성을 저해하는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카이네틱 댐 설치에 반구대 암각화의 침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한시적인 보호조치로, 경관변화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시공할 것이며, 필요시 철거 등이 용이하므로 세계유산 등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식수원 부족이라던 울산시의 핵심 주장, 2011년 국토부 보고서에서 근거 없음으로 드러났고, 울산시민, 학계 등에서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해 카이네틱 댐은 안된다는 입장인데 지금이라도 재검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카이네틱 댐 설치에 '13. 6월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울산시 등 4개 기관의 협약으로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 협약 이후 분야별로 기술검증평가단을 15명으로 구성하여 검증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이 평가단에는 누수 등 안전성문제를 제기하는 울산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조홍제 교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앞으로 물막이의 안전성, 시공성 등을 철저히 검증한 후 문제가 있을 시 다른 대안에 대해 재검토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당자	남상범 서기관
연락처	042-481-4923

5. 지난 7년간 문화재 도난 1만453점 달해, 같은 기간 회수는 746점으로 회수율은 7% 그쳐

1) 2008년 이후부터 2014년까지 7년 동안 도난당한 문화재가 10,453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회수한 문화재는 746점으로 그 비율이 7%에 불과한데, 이 사실을 청장은 알고 계십니까?

- 도난문화재는 문화재사범이 공소시효를 의식하여 장기간 은닉한 후 은밀하게 유통시키고 그 과정에서 인지 또는 제보 등에 의해 적발되고 있어 단기간 내 범인 검거 및 회수에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2) 이렇게 문화재가 한번 도난당하면 찾기도 힘들뿐더러, 국외로 반출된다면 다시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재청은 관할 경찰청 문화재전담반과의 긴밀한 공조수사를 통한 문화재 회수 노력과 문화재감정관실을 통한 공항·항만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갖추어 문화재 해외 밀반출 방지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3)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문화재 도난방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지 시설은 CCTV설치라고 생각하는데, 관련 예산이 2008년에 비해 올해 1/5수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확충하여 우리 문화재 도난 방지에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청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 영상감시장치(CCTV)는 2008년 숭례문 화재로 인한 화재 용도로 처음 설치·사용되어, 예산이 급증하였으며 현재는 도난방지용도로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 시설의 설치 및 보수에 필요한 예산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반영하고 있으며, 추후 설치 대상 문화재의 확대 및 예산 확충을 통해 문화재 도난방지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당자	김재일 / 김성도 사무관
연락처	042-481-4892 / 4884

6. 친일인물 관련 문화재 등록 21건, 여전히 친일 행적에 관한 명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 이광수, 최인규, 주요한, 이능화 등 친일인사 물품 21건, 문화재청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
- 해당 문화재의 시대적, 예술적 가치를 고려하여 등재·보존은 하되, 친일인사의문화재라는 것을 확실히 명기하여 국민의 역사관 확립해야

- 등록문화재는 유적·유물의 예술적·학술적·역사적 가치 등 문화재적 가치를 기준으로 등록한 것으로 현재 일제강점기 수탈, 식민통치와 관련 유적에 대하여는 안내판, 해설 자료 등에 관련 사실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 유물에 대하여도 향후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국민이 유산의 성격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음. 다만 구체적 표기내용 및 방법을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마련한 후 시행하겠습니다.

※ 현재 친일반민족행위자 관련 유물의 문화재 등록을 제한·금지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발의('13.11.21 김광진 의원)되어 있으므로 법률안 처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예정

담당부서	수리기술과
담당자	고정주 사무관
연락처	042-481-4866

7. 행정처분 받은 문화재수리업체 문화재 수리용역 수주에 아무런 문제없이 활동 중

1) 문화재수리기술자나 수리업체들이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이후에, 문화재청이나 지방문화재수주에 있어서 아무런 패널티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영업기한 제한을 두게 됩니까?

- 문화재수리기술자나 문화재수리업체들이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행정처분기간 동안에는 문화재수리에 관한 업무를 할 수가 없으며 입찰활동이 제한됩니다. 다만 문화재수리업체가 행정처분 전에 이미 계약한 문화재수리에 대해서는 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기간 중에 입찰활동을 할 경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문화재수리업체의 등록이 취소됩니다.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

- 제47조 제1항 제2호 : 수리기술자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한 경우 자격취소
- 제49조 제1항 제3호 : 수리업체가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등록취소
- 제22조 제1항 : 영업정지 처분이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문화재수리업체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수한 문화재수리에 대해서는 이를 계속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참고로 문화재수리업체에서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을 통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 후 “행정처분 집행정지”가 처분 신청이 수용되면 본안이 확정될 때까지 행정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어 문화재수리업체의 영업활동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2) 국보1호 복원을 망친 업체가 겨우 15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니 다른 곳이야 말 할게 뭐가 있겠습니까만, 그럼에도 부실한 보수, 허위 감리, 자격증 대여 납발 같은 부분은 확실하게 처벌을 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우리 청에서는 자격증 대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자격 대여, 부실 공사·설계·감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행정처분 기준강화	개정 전				→	개정 후('15.2월)				
	< 자격증 불법 대여 >					< 자격증 불법 대여 >				
	횟수	1차	2차	3차		횟수	1차			
	자격취소	1년	2년	자격취소		자격취소	자격취소			
	< 부실공사 업체 >					< 부실공사 업체 >				
	횟수	1차	2차	3차		횟수	1차	2차	3차	
	영업정지	1개월	3개월	6개월		영업정지	3개월	6개월	등록 취소	

- 또한 우리 청에서는 “송례문 복구 및 성곽복원공사”의 단청공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명헌건설(주) 등에 대해 행정처분 외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 단청공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15.7.7 소장접수)

- 참고로 최근 5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74개 업체가 수주한 397건의 문화재수리공사의 계약은 행정처분 외의 기간에 수주한 내역입니다.
 - 명헌건설(주)의 경우는 충청남도지사의 행정처분('14.8.12~8.26)에 불복하여 대전 지방법원에 ‘행정처분 취소’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것이 수용되어 2014.8.12부터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3)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처벌만 강화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동안 우리 문화재가 많이 훼손되고 이에 따라 복원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개선은 안되고 현상유지도 못한채 자꾸 뒷걸음질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서는 제2의 송례문 복원부실사태가 재발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청장께서는 수리복원업체, 감리업체, 기술자, 기능자들이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만드셔서, 추후 확감 때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청에서는 “문화재 수리체계 혁신대책(‘14.4.9발표)”을 마련하여 지속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문화재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행정처분 업체에 대한 입찰 시 패널티를 부여하고, 문화재수리 업체 등의 행정처분내용 공고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 「문화재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행정처분 업체 패널티 부여 추진
 - **평가요소에 행정처분을 받은 기간에 따른 감점 요소 도입**
 - 문화재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개정안 2015년 시물레이션과 2016년 시범실시 및 모니터링 추진
-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내용 공고 의무화 추진
 - 행정처분내용 공고의무화를 통해 다른 지자체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정부개정안 국회 제출(의안번호 3077/제출일 ‘12.12월)

담당부서	칠백의총관리소
담당자	박경희 사무관
연락처	041-753-8701

8. 칠백의총 소장유물 습기에 부식되고 먼지 쌓여있어

1) '13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중봉선생교지(보물) 등 167점의 유물 소독, 포쇄 실시하지 않아 관리 부실

- 대부분의 유물(137점)이 향운·향습시설이 갖춰진 기념관내 전시실에 전시중이며, 중봉선생교지 등 보물 6점에 대해서는 2014. 10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서 보존처리를 완료하고 복제품을 제작하여 기념관에 전시 중에 있습니다.
- 아울러, 보존처리를 완료한 보물 6점은 현재 보존처리 의뢰중인 비지정유물 8점과 함께 향운·향습시설이 갖춰진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 위탁보관 중(기념관 건립('18년말)시까지)입니다.
- 기념관 및 수장고 유물 훈증 소독은 10월초에 실시할 예정이며, 훈증 소독 외에 매년 연 2회 기능성 향균 방충제를 구입·비치하여 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칠백의총관리소 유물 현황 : 총 175점(현재 기준)

구분	수량 (점)	내역	보관장소
지정	7	교지1, 교서2, 조천일기1, 제문2, <u>화살통1</u> * 보물 제1007호 '조헌 관련 유품'	· 위탁보관 : 6 * 문화재보존과학센터 · 기념관 전시 : 1
비지정	168	중봉전집10, 향의신편2, 목각판108, 기록화7, 조헌영정1, 기타40	· 위탁보관 : 8 * 문화재보존과학센터 · 기념관 전시 : 136 · 수장고(금고) : 14 · 수장고 : 10

*기념관 183.6㎡(55평) 중 수장고는 31㎡(9평)임

2) 1960년대 제작한 현판 등 보관자료가 습기, 먼지에 노출되어 있어

- 수장고 내에 혼재되어 있는 제향행사용품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보관하고, 수장고 내 유물(24점)은 금고 내 조습효과가 뛰어난 오동나무 상자에 14점이 보관중이며, 현판 등 부피가 큰 유물(10점)에 대해서는 개별 포장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수장고 내 추가적으로 보존처리를 요하는 비지정유물에 대해서는 2016년에 문화재 보존과학센터에 보존처리 및 위탁보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3) 항온, 항습장비 도입 및 수장고 확충 등 유물 관리체계 개선 필요

- 수장고 내에 혼재되어 있는 제향행사용품 정리 후 항온·항습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현 기념관은 1976년 건립된 시설로 기념관 내 수장고는 항온·항습시설이 미흡하고 노후화되어 칠백의총 종합정비계획('15-'24년)에 따라 기념관 건립('18년말) 시 수장고 내에 항온·항습장비를 설치하고 조습패널을 시공하는 등 수장고 시설을 확충하여 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담당자	최재혁 사무관
연락처	042-481-4920

4) 개인이라든가 주요사찰에 보관된 국보가 많은데 관리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조사·감독하고 모니터링하는 민간 모니터단 제도라도 만들어서 문화재청, 민간 가릴 것 없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 말씀대로 유물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감독하는 모니터링제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2008년도에 문화재보호법에 정기조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정문화재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보존처리가 필요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다만, 동산문화재는 보안에 취약하고 소유자가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꺼리고 있어 소유자가 신뢰하는 문화재청 및 국립문화재연구소 직원들로 구성된 조사단이 직접 조사,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동산문화재를 민간이 모니터링 하는 것은 기존 정기조사와 중복된 면이 있으며, 또한 소장자의 동의를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담당자	조성래 사무관
연락처	042-481-4986

9. 천연기념물 보호방안 없이는 설악케이블카 허가 불가해

1) 문체부와 문화재청간 회의를 진행한 바 있죠?

-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정부부처(기재부, 환경부, 국토부, 행자부)와 지자체(서울시, 강원도, 양양군)가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 확대방안 마련을 위해 TF를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 우리 청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차, 4차 TF 회의에 참석 요청이 있어 2차례 참석한 바 있습니다.

2) 문화재청 자료를 받아보니 지난 1월 27일에 있었던 케이블카 확충 T/F 4차 회의가 마지막이라고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관련 자료를 보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절차 이전에, 문화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담기 위해, 문화재위원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 분과위 통과를 위해서 관련 준비를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결정이 지난 1월에 있었으니 그 사이에 반드시 컨설팅이든 대책회의든 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친환경케이블카 확충 T/F 4차 회의('15.1.27) 이후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현상변경 관련 문화재위원 컨설팅 또는 대책회의를 한 바 없습니다.

3)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지역이 지금 천연기념물 제171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지?

-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은 폭포 등 아름다운 경관과 다양한 동식물이 자라고 있는 서식처로 1965년 11월 5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4)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천연기념물 보호, 그리고 산양 보호에 적합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정부에서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면 문화재위원들이 객관적으로 심사를 할 수 있겠어요?

- 향후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설악산의 생태환경, 경관, 산양 서식 등을 고려하여 문화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5)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장밋빛 전망을 했던 4대강 사업은 22조원의 혈세를 퍼부어서 결국 환경훼손, 수질오염, 녹조라떼, 매년 수십, 수백 억원의 추가 혈세만 투입하는 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케이블카 사업도 마찬가지로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어요. 결국 자연은 훼손하고 장사도 되지 않는 그런 최악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문화재위원들의 객관적인 심사가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심사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 대상으로 문화재위원회 심의절차에 따라 천연기념물 분과 위원회에서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문화재 경관, 생태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되도록 하고 회의록은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옥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당자	임승경 연구관
연락처	042-481-4950

1.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결정 평가방법 문제

1) 보존조치 여부 객관적으로 평가돼야

-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평가(보존평점)는 관계 전문가 3인이 매장문화재의 가치 및 상태를 평가한 것으로서, 소수 전문가 평가의 대표성 문제와 관련 공·사의 및 주변여건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한계가 있습니다.
- 발굴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존조치는 보존평가 결과에 더해, 관련 공·사의 및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보존평가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보존평가 대상 138건(‘11~’15.8)에 대한 평가 점수별 보존조치 현황

구분	합계	74.31 이상		74.31 미만	
보존평가	138	121 (100%)		17 (100%)	
보존유형		원형보존	이전복원	원형보존	이전복원
		95 (78.5%)	26 (21.5%)	11 (65%)	6 (35%)

- 보존평가 결과와 다른 보존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객관성·신뢰성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보존평가 항목에 관련 공·사의의 가치를 반영토록 하였으며(시행규칙, ‘15.8.26.), 이에 대한 세부지침(문화재청 고시)을 마련하여 보존평가 결과와 보존조치의 정합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당자	이상민 사무관 / 방인아 연구관
연락처	042-481-4964 / 4968

2.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전수교육 문제

1.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관리·감독 부적정

1) 문화재청은 전승지원금이 인건비 등으로 과도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전승지원금 집행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향후 전승지원금이 부적절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우리청은 보유단체 전승지원금 집행과 관련하여, ‘전승지원금 집행과 관련한 보유단체 간담회’를 개최(10월 예정)하여, 전승지원금의 세부적인 집행지침(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 1회 집행실태 점검을 통해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통해 보유단체의 집행역량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전수교육 실적관리 미흡

1) 보유자뿐만 아니라 보유자가 없는 개인종목의 전수교육조교도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허위 실적보고를 하지 않도록 이를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함

-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은 보유자(보유단체)의 고유권한이며, 전수교육조교는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유자 사망 등으로 보유자가 부재한 개인종목의 전수교육조교는 전수교육에 참가할 수 없어 전승활동에 대한 실적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청은 보유자 부재 개인종목 전수교육조교의 전승활동 점검을 위해 전승활동 실적을 제출하게 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중요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 또한, 전수교육 실적보고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통한 전수교육 실적보고서 제출 및 증빙자료(사진자료 등) 제출 의무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담당자	김동대 사무관
연락처	042-481-4817

3. 지자체 문화재 관리체계 문제

- 문화재청은 각 지역 문화재 비율에 맞게 충분한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현 문화재 관리체계를 갖춰야 함. 또한, 지자체의 인력·재정 부족 문제로 인해 국가지정문화재 관리가 소홀해져 부실관리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문화재 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지자체 문화재 관리팀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춰 지역별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견해는?

- 전담부서 설치 등 조직·인력 확충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실행에 한계가 있으므로, 문화재 보수정비 직무교육과정 운영(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2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책연구 모임활동 지원('14년 2회, '15.9.15개최), 문화재 돌봄사업, 주민공감사업 등 간접적으로 지자체 문화재 관리부서 및 담당인력의 전문성 강화 등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앞으로 지역별 문화재 관리역량을 높여나갈 수 있는 인센티브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국제협력과
담당자	김지홍 사무관
연락처	042-481-3184

4. 오구라 컬렉션 문화재 환수 문제

1.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지금이 반환해야

- 1) 올해가 한일협정 50주년인데, 도쿄국립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한반도 문화재인 오구라컬렉션을 반환을 요구하기 가장 적기임. 일본으로 반출된 문화재가 전부 도난당한 것은 아닐 것. 어떤 이유로 어떤 방식으로 일본에 반출됐는지 철저히 연구·조사하고, 불법으로 반출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문화재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재청이 적극 노력해야 함

- 금년 말('15. 12월)까지 오구라컬렉션 중 환수대상을 우선협상목록(Priority List)으로 선별하여 외교부에 정부협상 개시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통해 반출경위, 현황 파악 등 조사연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민간단체 활동 지원,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수사공조, 문화재 피탈국 협력 등을 통해 국외문화재 환수의 여건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당자	남상범 서기관
연락처	042-481-4923

5. 경찰청, 문화경찰과의 유기적 협조 필요

- 문화재청은 도난·도굴문화재 회수, 해외밀반출 방지를 위해 대내적으로는 문화재 사범단속반 및 문화재감정관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공조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 조계종·경찰청·우리청 업무협약('14.10.22.)
 - 불교문화재 도난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및 보존 기반 마련
 - 불교문화재 회수를 위한 상시적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
 - 불교문화재 도난 예방 및 회수를 위한 대국민 홍보
- 경찰청 시행 「문화재 전담 수사관」 제도(44명) 지원·협조('15.7.19.)
 - (서울경찰청 15명, 부산 3명, 대구 1명, 인천 1명, 대전 3명, 울산 2명, 경기 9명, 충북 2명, 충남 2명, 전북 1명, 경북 2명, 경남 2명, 제주 1명)
- 향후 문화재청에서는 경찰청과의 공조수사에 필요한 각 단계별 협조 사항 등을 적극 검토·반영하여 원활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 상 일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당자	이명선 사무관
연락처	042-481-4821

1. 전국 17개 사적문화재 조사결과 전기설비 75.6%가 ‘부적합’ 안전사고 우려

1) 지난해 전국 17개 사적문화재 전기설비 실태조사 결과 75.6%가 ‘부적합’ 시설을 받았으며, 이 중 37.6%는 ‘매우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 전기 안전사고 우려되는 상황으로 대책마련 필요

- 사적으로 지정된 서원과 향교 17개소에 대하여 전기시설의 안전성, 경관성, 유지관리, 화기취급 여부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7개소가 1차적으로 근본적인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 그 중에서 안동 도산서원은 ‘15년도 예산으로 전기설비를 개선토록 하였고, 경주 옥산서원 등 6개소도 ‘16년도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반영하여 최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 경미보수 및 개선에 해당하는 ‘부적합’ 대상에 대해서도 문화재 전기설비 개선사업을 순차적으로 실시하여 전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시설 ‘매우 부적합’ 대상 사적문화재(서원·향교) 조치현황 및 계획

추진연도	대상	비고
‘15년도	안동 도산서원	
‘16년도	경주 옥산서원, 영주 소수서원, 달성 도동서원, 함양 남계서원, 거제현 관아,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	

2) ‘안동 도산서원’은 안전성, 경관성, 안전관리 등 총 13항목 중 11개에서 ‘매우 부적합’했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서원이지만 전기시설은 17개 사적문화재 중 가장 불량해 전기 안전사고 위험이 큰 상황임. 확인결과 3천만원을 긴급배정 해 이번 달에 공사가 시작된다고 함. 현재 추진상황과 다른 안전사고 위험은 없는지

- 안동 도산서원은 문화재청에서 금년 5월에 긴급보수비를 투입한 상태로 현재 안동시에서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 중이며, 계약체결 후 ‘15. 11월까지 전기설비 개선 완료예정입니다.
- 안동 도산서원에 대한 안전점검 시 발견된 위험요소는 개선토록 조치하였으며, 현장 관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안전관리교육과 일상점검을 실시하도록 독려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보존정책과
담당자	조주성 사무관
연락처	042-481-4841

2. 전국 354개 봉수유적 중 88%가 비지정문화재 방호벽, 출입시설 허물어지는 등 관리 안돼

(1) 전국에 약 400여 개소의 봉수대 유구가 남아있다고 함. 잊혀진 봉수문화재에 대해 역사적 가치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청에서는 2014년 봉수유적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2015년에는 봉수유적 심화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 * 봉수유적 기초조사 : '14. 4. ~ '15. 4월
- * 봉수유적 심화조사 : '15. 8. ~ '16. 4월

(2) 봉수유적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선 비지정 된 봉수유적을 지정 문화재로 등록하고, '불량'한 봉수대는 복원정비계획을 세우는 등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할 필요가 있음. 어떻게 생각하는지?

- 문화재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봉수유적은 시·발굴조사 등을 거쳐 (국가지정, 시도지정) 문화재로 지정·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 시·도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인 봉수유적은 국가 예산지원 불가.
-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봉수유적은 고증을 거쳐 복원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복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시도지정문화재지만 지자체의 관리 부실로 흔적만 남아 있는 봉수유적도 있음. 보고서에 따르면, <창원 사화랑봉수대>는 잔존 유구도 멸실되었고 보존상태는 흔적만 남아있는 상태임. 복원계획이나 학술조사도 없이 방치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됨. 봉수대 옆과 내부에는 나무와 수풀이 우거져 있고 방호벽도 흔적만 남아 있음. 지정문화재로 등록돼 있으면서 관리사 부실한 이유는 무엇인지?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관리체계를 둘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창원 사화랑봉수대는 경상남도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문화재 보존관리 체계 내에서는 시·도지정문화재는 시도지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는 예산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재청에서 예산 지원	< 국가사무 >
시·도지정문화재	: 시·도에서 예산 지원	< 지방사무 >
비지정문화재	: 시·군·구에서 예산 지원	

- 이에따라 우리 청에서는 비지정문화재의 관리를 위해서 ‘문화재 돌봄사업’ 대상 범위에 봉수유적에 대한 일상관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4)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지만 비지정문화재다보니 관리가 안돼 방치되고 있어 언제 멸실될지 모르는 봉수유적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데?

- 현행 문화재보존관리 체계 내에서는 비지정문화재 보존·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는 예산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재청에서 예산 지원	< 국가사무 >
시·도지정문화재	: 시·도에서 예산 지원	< 지방사무 >
비지정문화재	: 시·군·구에서 예산 지원	

- 이에 따라 우리 청에서는 시·도지정문화재의 관리를 위해서 ‘문화재 돌봄사업’ 대상 범위에 봉수유적에 대한 일상관리 포함 여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국제협력과
담당자	유재걸 / 문선경 사무관
연락처	042-481-4737 / 4731

3. 日 ‘하시마섬’ 강제동원 역사 왜곡 진상 알리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기록물 유네스코 등록 철저히 해야

- 1) 일본의 하시마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사실상 방조했다는 비판이 있음. 외교 당국에서 자화자찬 했던 ‘강제노동’ 문구 표기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등재 직후 강제 노동을 의미하는게 아니라고 반박함. 역사수정주의를 앞세운 일본의 치밀한 준비에 대해 우리 정부가 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임. 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나?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가?

- 외교부를 중심으로 한 한국 정부는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시설 세계유산 등재 시, 동 시설의 일부에서 한국인 등을 강제노역시킨 사실에 대하여 일본에서 인정하도록 최선을 다했으며, 결국 동 사항은 등재결정문에 반영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한일 간 협의과정은 외교부에서 추진한 사항으로 우리 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문화재청은 지난달 31일 마감된 ‘2016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대상 기록물 공모’에 접수된 등재 신청 후보 12건 가운데 ‘일제 강제동원 피해 기록물’ 33만 6797건이 포함됐다고 13일 밝혔음. 향후 추진 계획과 가능성은 어떠한가?

-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대상 선정은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 분과’에서 선정 후 등재 신청서 작성 등을 거쳐 ‘16년 3월에 유네스코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향후 자문회의 및 문화재위원회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 등재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등재 신청 대상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3)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문화유산 주무부처로서 관련 부처와 국회, 언론 등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기록의 유네스코 등재를 반드시 이뤄내야 할 것임.

- 문화재청에서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대상으로 선정된 우수 기록유산에 대하여 기록물 관련 전문가, 외교부 등과 지속적인 협의 및 자문 등의 지원을 통하여 세계 기록유산 등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당자	배민성 / 이상민 사무관 / 방인아 연구관
연락처	042-481-4961 / 4964 / 4968

4. 중요무형문화재 중 일부 종목은 전승단절 위기에 있음

- 1) 보유자가 없는 18개 종목 중 배첩장과 이리향제줄풍류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재기간이 2년이 넘었음. 제주민요의 경우 2000년 이후 15년동안 보유자가 없는 상태고, 영산쇠머리대기 10년, 명주짜기 9년, 바디장 8년, 곡성의 돌실나이 7년 등 보유자가 장기간 없어 실제 단절됐다고 볼 수 있는 상태임. 부재기간이 이렇게 장기화되는 이유는?

- 우리 청은 매년 보유자 인정조사 계획 수립 시 보유자 부재 종목을 우선 반영하여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보유자 인정 및 보유자 사망으로 인한 일시적 부재, 전승자 기량 미흡 등으로 부재 종목의 경우 즉시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민요는 전승자 및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단체종목 전환을 추진 중이며, 영산쇠머리대기 등 마을·지역단위 축제성 종목은 종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유단체 내 보유자인정필요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곡성의 돌실나이 등 직조종목은 금년도에 전승실태를 조사하여 전승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보유자 등 전승자의 적기 충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전수조교의 연령대가 인간문화재와 비슷한 수준인 것도 문제임.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조교는 294명이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61.7세로 나타남. 60세 이상 전수조교가 162명이며 80세 이상도 11명이나 됐음. 30대 전수조교는 3명에 그쳐 전수조교의 고령화도 심각한 상황임. 인간문화재와 전수조교의 평균 나이 차가 9세에 불과해 전통을 이어갈 후진 양성이 시급함.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우리 청은 매년 보유자 인정조사 계획 수립 시 보유자뿐만 아니라 전수교육조교 부재 종목을 우선 반영하여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천요건 미비(복수 추천, 이수자 경력 5년 이상) 및 보유자의 미 추천 등으로 부재 종목의 경우 즉시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특히, 전수교육조교를 선정하려면 해당 종목의 이수증 발급받고(최소 3년 소요) 이수자 경력이 5년 이상된 전승자가 2인 이상이 존재해야 하나, 이러한 충족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종목이 다수 있습니다.
- 복수 추천요건 미비한 종목에 대해서는 내년에 시행될 무형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복수 추천요건 조항을 완화하는 내용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유자 미추천한 종목에 대해서는 보유자로 하여금 이수자 양성 및 대상자 추천을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수교육조교 선정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종목별 전승자 양성 및 전승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전수조교뿐 아니라 이수자·전수장학생 등 문하생이 2명 이하인 종목은 줄타기, 문배주, 경주교동법주, 명주짜기, 바디장, 전통장, 제주민요, 소반장, 사기장, 주철장, 염장, 한지장 등 12종목임. 문하생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전승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의미함. 문하생을 늘릴 방안은? 또한 이수자와 전수장학생 수가 예능이 기능보다 5배가량 많음. 예능엔 집계되지 않은 전수단체 소속 인원이 많아 이 같은 격차는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음. 불균형의 원인은 무엇인가? 대책은?

- 예능종목의 이수자 양성이 많은 것과 달리, 공예종목은 수작업을 통한 제작 공정 등으로 오랜 이수기간이 필요하고, 전통공예품의 수요가 급감하면서 전승여건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전승 여건 취약종목에 대하여 전승 지원금 추가 지원, 전수장학금 지원, 공예작품 구입, 공연·전시 행사 지원 등 직·간접 지원의 확대를 통하여 취약 종목의 보존·전승이 활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주는 전승지원금도 지자체별로 차이를 보임. 서울을 보유자에게 매월 120만원의 전수지원금을 준 반면 울산은 70만원으로 가장 적었음. 표준화된 지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에 대한 보존관리는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전승지원하고 있으나,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에 대하여는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소관 광역시·도 자치단체장이 전승지원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시도무형문화재는 관할 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고 향토문화재로서의 지역성을 갖고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전승 여건과 관련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당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5) 인간문화재는 문화재청으로부터 매월 131만7천원의 전승지원금을 지급받음. '11년도 100만원이었던 것이 '12년 125만원으로 오른 후 '13년에 동결되었다가 '14년에 131만7천원으로 오른 것임. 그러나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들이 많아 사실상 전승지원금은 생계 유지비로 사용되는 게 현실임. 전승지원금 이외에 지원방안은 무엇인가?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에 대한 전승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전승지원금은 예산의 확보에 따라 보유자를 기준으로 1,000천원(2011~2012년), 1,250천원(2013년), 1,317천원(2014년~현재)으로 지원되어 왔습니다.

- 특히, 공예종목의 경우, 급속한 산업화 등 사회문화환경 변화에 따른 전통공예품의 급격한 수요 감소로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유지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승취약 종목을 선정하여 일반종목 보다 전승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무형유산원 및 한국문화재단에서는 공예품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한 전통기술과 현대적인 디자인, 기술개발을 상호 연계하여 현 시대에도 상용화될 수 있는 상품 개발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6)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활동이나 예능·기능 전수가 불가능할 경우 인간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명예보유자로 인정됨. 2005년 처음 도입된 이후 48개 종목 65명이 명예보유자로 인정됐으며, 이 중 37명이 사망해 현재 28종목 28명이 남아 있는 상태임. 이들의 평균 연령은 85.1세로 매월 10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받음. 이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전승활동 등 다른 지원은 없는가?

- 명예보유자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 활동하시던 분이 연로하시거나 병환이 들어 전수교육이나 전승활동을 더 이상 실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동안의 업적을 기려 명예보유자로 인정하고, 특별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유자로서 살아온 생애에 대한 예우로 운영하는 명예보유자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특별지원금을 확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7) 전국 136개 전수교육관에는 중요무형문화재 95개, 지방무형문화재 152개 종목이 입주해 있음. 다만 전수조교나 수익이 없는 종목들은 교육관에 입주하더라도 관리비조차 못 낼 형편이라고 함. 수익의 다변화가 필요한데, 어떤 대책이 있나?

-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수교육관의 운영 효율화 및 활성화를 위해 복수 종목이 입주하는 전수교육관을 건립·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수종목이 전수교육관에 입주,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지자체에서 직접 전수교육관을 관리함으로써 전승자들에게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현재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안내책자 제작”을 위해 국립무형원에서 추진 중인 2015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실태조사(‘15. 9 ~ 12월) 후, 전수교육관 활용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14년 10월 문화재청에서 전체 이수자 4,131명 중 응답자 1,3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자현황 설문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전승활동 중단자 중 복귀의사는 ‘없다’가 51.9%였음. 복귀 시 전제사항은 ‘전승활동 기회 제공’이 49%에 달했음. ‘경제적 지원’ 27.5% 보다 2배가량 많은 만큼 충분하지 못한 전승활동 기회가 이들의 전승활동을 중단시켰을 가능성도 추정해 볼 수 있음.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이수자로서 문화재청에 바라는 사항은 ‘경제적 지원’이 21.0%, ‘활동무대 확대’가 20.6%였음. 경제적 지원과 기회 제공을 가장 절실히 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의견에 대한 입장과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 중요무형문화재 지원정책은 전승활동(공개행사 및 전수교육)의 법적 의무를 가진 보유자, 전수교육조교를 중심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국립무형유산원 개원 후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전반의 전승활성화를 위하여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여 전승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이수자 지원사업

- ‘전통공예 활성화 및 제작유통 지원’
- ‘이수자던(傳)’
- ‘무형유산 체험교실 및 무형유산 학교’
- ‘창의공방’
- ‘전수교육관 전승활성화 사업’

○ 향후에도 이수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신규 사업 발굴 등을 통해 전승활동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 종 훈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당자	남상범 서기관
연락처	042-481-4923

1. 문화재 사범은 활개, 문화재청은 파악도 못해

- 1) 경찰청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청과 문화재청간의 통계 현황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검거 현황 뿐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인 문화재사범 범죄원인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 2) 문화재청 내 문화재사범을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은 단 3명(대전지검 위촉)에 불과한 실정. 단 3명의 인원으로 얼마나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는지 의문? 주요임무와 달리 단순 자문 역할에만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3) 문화재사범 단속활동에 쓰이는 예산(1억 5백)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예산 내역 또한 동영상 제작에 비중을 둔 사용이 아닌, 도난·회수와 같이 항목을 세분화 하여 직접적인 사범단속 활동에 쓰이는 비용을 늘려야 하는 것은 아닌지?
- 경찰청과 문화재청의 문화재사범 통계 현황이 다르게 나타나는 사유로는 문화재청은 문화재 도난·도굴 및 밀반출 등 『문화재보호법 위반』 사건만을 분류하고 있으나, 경찰청에서는 도난·도굴·밀반출 외에도 사인간에 발생하는 문화재 관련 사기·자격증 대여 및 문화재 관련 사업 등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문화재사범으로 분류하고 있어 통계 현황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사범단속 업무 수행을 위하여 3명의 특별사법경찰관 지명자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전국에서 발생하는 문화재 도난·도굴 사건을 자체 처리하기에는 인원 등의 어려움이 있어 인지·제보수사, 현장조사 참여, 문화재 감정 시에 경찰청 문화재전담반과의 공조를 통하여 문화재사범 검거 및 회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4년 10월 문화재청-경찰청-조계종간 불교문화재 도난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 을 체결하였고 2015년 7월 경찰청에서 『문화재 전문수사관』 44명을 선발·구성하는 등 문화재사범 근절을 위하여 문화재청과 경찰청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문화재 사범단속반 증원 및 업무 수행을 위한 활동비 등의 증액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의 조직·예산 관련 중장기계획 방안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검토·추진, 사범단속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당자	방인아 연구관
연락처	042-481-4968

2. 사라지는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투자확대 필요

1.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현황

- 1)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제대로 된 전승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승지원금이 부족. 최근 10년간을 봐도 상승분이 높지 않으며 현실화 되어 있지 않음. 문화재청 훈령 제345호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근거하면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전승지원금을 산출하고 있다고 함. 최근 지원된 금액인 131만 7천원의 산출 근거는 무엇이며, 현재 무형문화재의 재산 상황 및 수입을 파악하고 지급하는가?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에 대한 전승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전승지원금은 예산의 확보에 따라 보유자를 기준으로 1,000천원(2011~2012년), 1,250천원(2013년), 1,317천원(2014년~현재)으로 지원되어 왔습니다.
- 개인종목에 대한 전승지원금은 ‘일반종목’과 ‘전승취약 종목’으로 구분하여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취약종목은 1~2차 관계전문가 회의를 거쳐 취약종목 평가항목(활성화 노력도, 종목의 취약성, 관계 전문가 평가)을 통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 보유자 등의 전승활동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우리청은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투자 확대 필요

- 1) 현재 전승지원금 지급은 전승취약종목을 제외하고, 같은 액수로 지급되고 있음. 현재 지급되는 전승지원금이 운영비, 재료비, 생계운영비로 세분화되어 지급되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는가? 또한, 감사원 지적 결과와 같이 전승지원금 부적절 사용에 대해서 사후관리 방안은 마련하고 있는가?

- 보유자 등에게 지급되는 전승지원금은 보유자 등이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정액을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전수교육지원금의 용도)에서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의 '전수교육보상금', '보유단체의 운영비', '전수교육시설 운영비', '전수생 교육 지원 비용', '그 밖에 전수교육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그 용도를 정하여, 보유자 등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감사원에서 지적인 보유단체 전승지원금 부적절 사용과 관련하여, 우리 청은 '15. 10월 중 '전승지원금 집행과 관련한 보유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전승지원금의 세부적인 집행지침(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 1회 집행실태 점검을 통해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통해 보유단체의 집행역량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담당자	이동순 사무관
연락처	041-830-7161

3. 전통문화대학교 전임교원 확보율 부족문제

- 1) 금년 교육부가 실시한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주요한 평가항목 중 하나인 '전임교원확보율'인데 지난 3년 동안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전임교원확보율은 지속적으로 하락되고 있습니다.

전임교원확보율을 100% 채우려면 몇 명의 교수를 더 확보해야 하는지? 정원 확보 방안은?

- 우리 대학은 2013년도에 석사과정을 개설하였고 2015년도에는 박사과정을 개설·운영함에 따라 법정교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전임교원 정원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여 전임교원 확보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 연도별 정원확보율

구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비 고
법정교원 현황(A)(명)	32	38	40	석사과정 개설('13) 박사과정 개설('15)
전임교원 정원(B)(명)	30	33	33	
확보율(B/A) (%)	93.8	86.8	82.5	

* 법정전임교원 : (학사과정 학생정원+ 대학원 학생정원 2배)/교원1인당 학생 수

- 교원1인당 학생수 : 인문사회계열 25명, 자연·공학·예체능 20명

- 2015년 현재 법정 전임교원은 40명으로 전임교원 확보율 100%를 위하여는 7명이 부족한 상태이며, 본교에서는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법정 전임교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진후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고도보존육성과
담당자	김광열
연락처	042-481-3104

1.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문화재 정기조사 부실의혹, 부실 정기조사로 송산리 고분 훼손 방치 초래

1) 공주 송산리 고분군 등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정기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관계자의 책임 여부를 따져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할 것

- 문화재 정기조사 제도 시행 초기에 적은 예산과 많은 문화재를 일시에 조사하게 되면서 2012년 백제역사유적지구 조사를 담당한 외부조사자(2인 1조)의 성향차 등에 의해 구체적이지 못하거나, 세부적으로 조사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특히 송산리 고분군 5~7호분의 경우 온·습도 등 내부 환경 조사가 별도 실시되고 있어 출입 시 계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비공개 지역으로 출입이 통제되고 있어 별도의 허가절차가 선행되어야 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2년 정기조사는 내부조사를 미 실시하고 공개되고 있는 지역에 국한하여 실시한 상태입니다.
- 이에 반해 2014년 특별점검은 청와대 지시에 의해 중앙-지방 간 역할을 분담하고 전문가 인력풀 구성, 중요유적에 대한 특별점검반 구성 등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조사가 실시된 사항입니다.
- 향후 진행되는 정기조사에 대해서는 좀 더 충분한 예산확보 및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보존환경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2012년도 정기검사 및 2014년 특별점검, 현재까지 모니터링에 따른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 및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대한 정비계획을 제출할 것

-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대한 2012년 정기조사 및 2014년 특별점검 시 조사자의견(지적)에 대한 우리 청의 조치현황 및 계획은 붙임1과 같습니다.
-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대한 향후 정비계획 다음과 같은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백제역사유적은 진정성 회복과 가치 확산을 위해 지속적 발굴 및 여러 정비사업 등이 병행되어야 함
 - 세계유산 등재 이후 관람객이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관람객 편의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사유지 매입을 통한 주변환경 개선을 우선 추진할 예정임
 - 또한 지자체와 합동으로 2014.4월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준비단」을 발족했으며, 2015년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에는 지역별·단계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복원 정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제역사유적지구 정기조사·특별점검 지적사항 조치현황 및 계획

유적명	‘12년 정기조사 의견(지적)	‘14년 특별점검 결과(지적)	조치완료 및 진행 사항 (‘15.8월까지)	향후 조치 계획 (‘15.9월 이후)
공주 공산성	○소화기는 비치되어 있으나, 보다 안전한 화재예방을 위해 소화전, 화재감지기, CCTV 등 소방방재 시스템 증설에 대한 검토 필요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위험구간에 판정한 11곳에 대해 진단결과에 따른 보존대책 마련 필요 ○공산성 모니터링결과에서 확인된 보4~6지점 붕괴우려가 높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 필요 ○연지부분 부동침하 현상 보임, 모니터링 필요 ○공복루의 수리가 필요함 ○H빔 보강재의 이질감 감소 조치 필요	○정밀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며, 위험구간에 대해서는 해체보수를 완료하였거나, 보수를 진행 중에 있음 -문화재위원회에 계측결과 보고 및 조치계획 보고(‘14.7월) ○공복루 해체 보수공사 완료(‘15.7월) ○소방시설 보완현황(‘14.10월) -누각별 소화기 배치 -CCTV 5대 설치(공주시 영상센터 연결, 상시감시 체재구축)	○정밀조사용역 완료 및 결과 발표(‘15.12월/연론설명회 등) ○H빔은 임시 안전조치로 용역 완료결과에 따라 철거 등 후속조치 이행 예정 ○방범 및 방재시설 보완을 위한 설계용역 추진(‘16.3월~) -‘16년 세계유산 예산반영 ○소방시설에 대한 전문업체 위탁관리 시행 실시(‘16.3월~)
공주 송산리고분군	○없음	○내부 보존관리 상황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 필요함 ○5~7호분 내부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석회물탈, 벽화바탕 칠을 열화시키고 있음	○최적의 보존환경 연구용역 완료(‘14.7월) ○용역결과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 보고(‘14.11월) ○단계별 조치계획 이행요구(공주시/‘14.12월) ○고분관리 전담위원회 구성(‘15.4월) ○단계별 조치계획 이행 중(‘15.7~) -기밀성공사, 계측 및 모니터링 장비보완, 정밀실측 등	○고분관리 전담위원회 지속 운영(‘15.9월~) ○기밀성 공사 등 사업 완료(‘15.12월) ○계측 및 모니터링결과 등에 따른 2단계 이후 사업 추진
부여 관북리 유적	○배수로 주변 잡초 제거 필요	○없음	○예초·제초 등 상시관리 예산 반영완료(‘16년)	○국고보조사업 집행 점검
부여 부소산성	○경내 매점이 경관저해 ○소화기만 비치, 옥외소화전 및 보안감시시설 신설 필요 ○산성 내 배수로 정비 필요	○사적지 경관에 어울리는 형태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토성 주변 등 내·외부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수목정리가 요구됨	○‘15년에 수목정비 공사시행 중(설계완료) ○‘16년 수목정비 예산 반영완료 ○소방시설에 대한 전문업체 위탁관리 시행 중(‘15.3월~)	○사적지 경관 개선을 위해 매점 건물 외관개선 및 중기계획 수립추진(‘15.10월~) ○방재설비 보완 필요성·범위 등에 대한 점검 실시(‘15.10월~) -문화재청(안전기준과), 부여군, 관계전문가 현지 합동 점검
부여 능산리고분군	○없음	○구매표소와 매점, 화장실 등이 경관 훼손(이전 공사 중으로 철거 예정)	○구 매표소 및 매점 등 철거 완료(‘14.6월)	
부여 정림사지	○없음	○구매표소, 장기적으로 철거 검토 필요	○소방시설에 대한 전문업체 위탁관리 시행 중(‘15.3월~)	○구 매표소 철거 및 복구설계 착수(‘15.10월~)
부여 나성	○문화재안내판 부족(1곳) 및 위치 부적정 ○성벽 탐방 이정표 및 방향지시 시설물 없음	○없음	○세계유산 등재 대비 안내판 개선 완료	○성벽복원 완료 후 안내판, 이정표, 방향지시 표시 등 추가 개선 예정
익산 왕궁리 유적	○없음	○서측 공방 및 화장실 유구지역 배수 미흡	○ 배수 불량지역 정비 중(‘15.12)	
익산 미륵사지	○없음	○새로 복원된 동탑에 균열이 관찰됨,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노후안내판 교체 및 배수 불량 지역 정비 등 관람환경 개선필요	○세계유산 등재 대비 안내판 개선 완료(‘15.6월) ○동탑 정밀조사 용역 착수(‘15년 7월)	○정밀조사 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16.8월~)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담당자	조성래 사무관
연락처	042-481-4986

2. 문화재청 담당 직원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티에프 회의 참가

1)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심의해야할 문화재청의 담당 간부들이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정부부터 티에프에 참가한 것은 적절한 행위인가?

-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정부부처(기재부, 환경부, 국토부, 행자부)와 지자체(서울시, 강원도, 양양군)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뿐 아니라, 남산·사천바다·여수 해상 케이블카 설치 등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을 위한 애로요인을 해소하고자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 우리 청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차, 4차 T/F 회의에 참석 요청이 있어 2차례 참석하여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현상변경 심의 절차와 설악산의 생태환경, 경관 등을 고려한 문화재 보존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2) 문화재현상변경 심의를 하면서 사업 신청도 하기 전에 사업자와 문화재청 관계공무원이 함께 대책회의 비슷한 걸 한 적이 있나? 청장, 다시 한 번 묻겠는데 담당 책임자들이 참석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지요?

- 우리 청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차, 4차 T/F 회의에 참석 요청이 있어 2차례 참석하여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현상변경 심의 절차와 설악산의 생태환경, 경관 등을 고려한 문화재 보존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3) 문화재현상변경허가와 관련해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는 신청한 이후에도 사업자가 문화재위원들을 미리 접촉하는 사례가 있는가? 또 문화재위원들은 사업 이해당사자들에게 그 사업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자문해주는 사례가 있는가?

-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와 관련하여 사전 당해 안건에 대해 문화재위원이 자문해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만약 있다면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제척하게 됩니다.

4)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위원들도 심의를 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도 나가야 하고 산양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야 하는 등 신중한 조사가 뒤따라야한다는 의미인데, 설악산 케이블카 티에프에서 문화재청 담당 책임자들을 부른 이유는 미리 문화재청을 압박하려는 것 아니었는가?

-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을 위한 T/F를 구성·운영하던 중 일부 사업이 문화재구역 등에서 추진됨에 따라 현상변경 심의 절차 등에 대해 설명을 듣기 위해 참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5) 국립공원위원회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심의를 하며 전례 없이 1차 회의에서 표결을 강행해 처리했음. 그런데 문화재심의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의결해왔지 표결처리하는 경우가 없음. 문화재심의위원회가 외부 압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원칙대로 심의할 수 있는 방안은?

-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 대상으로 문화재위원회 심의절차에 따라 천연기념물분과 위원회에서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문화재 경관, 생태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되도록 하고 회의록은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 민간 시민단체, 환경단체등에서 제출한 연구조사 자료, 데이터 등이 정부와 사업자측 자료와 함께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방안은?

- 향후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양양군에서 현상변경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에서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 있으면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회의자료에 포함시키겠습니다.

담당부서	보존정책과
담당자	박정섭 사무관
연락처	042-481-4835

3. 드라마 오락프로그램 문화재에서 촬영 빈번, 세계문화유산 등에서 마구잡이 촬영. 상업적 촬영 규제 강화해야

**1)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촬영 및 행사 개최에 대한
상세 현황을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할 것**

- 국가지정문화재 촬영 및 행사 개최 목록은 [별첨 1]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촬영 및 행사 개최 등 국가지정문화재, 세계문화유산 등의 물리적
훼손 방지 대책과 문화적 가치 훼손 방지 대책을 마련해 보고할 것**

- 세계유산을 포함한 국가지정문화재 촬영·행사 허가사항은, 궁궐 등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는 문화재청(궁능문화재과)이, 기타 문화재는 관리단체인 각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문화재를 통해 국민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킨다는 방침 아래, 문화재의 문화적·물리적 훼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촬영 등 행위 허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이에 따라, 각 지자체로 하여금 촬영·행사 허가 시 국가지정문화재 및 세계유산 품격 저해 및 문화재 훼손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안전 관리요원 배치 등 실시간 점검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지정문화재 촬영 및 행사에 가이드라인’을 마련, 각 지자체에 배포하여 상기 가이드라인에 따라 문화재의 물리적·문화적 가치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 무분별한 촬영 및 상업적 이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검토해 보고할 것**

- 우리 청이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는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촬영·장소사용 허가 가이드라인 규정을 설치하여 무분별한 촬영 허가를 방지하는 한편 문화재 훼손 방지를 위한 안전 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 기타 국가지정문화재 촬영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3제5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앞서 2)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촬영 및 행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금번에 수립하여 지자체에 배포·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수리기술포
담당자	김상규 사무관
연락처	042-481-4864

**4. 문화재수리 입찰제도 개정안 종합건설업체 대형업체에만
유리 중소기업체 고사 우려**

1) ‘문화재수리 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초안)’은 문화재수리 업체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16일 문화재청이 개정 한 ‘문화재수리업 기술능력 보유요건’ 완화 내용과 배치되는 것 아닌가?

- 문화재수리업 기술능력 보유요건을 완화한 것은 문화재수리 업체와 시장의 규모에 비해 등록기준이 과도하여 자격대여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임과 동시에 수주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채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합건설업과 문화재수리업 비교]

	종합건설업(토건업)	문화재수리업(보수단청업)
등록요건	11명	10명
'13년 수주액 1위	84,885억원	69억원

- 이와는 달리 문화재수리 입찰제도 개정은 현 가격중심의 입찰제도를 문화재수리 역량 중심의 제도로 전환하고 현행 입찰제도의 문제점(저가수주, 운찰제 등)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향후 중요 문화재수리 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수리업체가 수리토록 하여 문화재수리 품질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입니다.

2) 문화재 부실공사가 사회문제로 제기되는 등 국민의 지탄을 받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은 수긍함. 그런데 현재 우리 문화재수리업 실태는 중소영세 구조로, 문화재청의 입찰제도 변경으로 문화재 수리업체 80% 이상이 점수 미달로 입찰에서 탈락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 기술력과 가격을 동시에 평가하여 최고 능력을 가진 자가 수리토록 하는 것이 제도 개선 방향이나, 공공입찰임을 고려하여 하위업체 공생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독과점 해소 및 하위업체 공생 방안]

- 즉시 : 신생업체 등을 위해 기존 입찰제도인 적격심사제도를 일정기간 병행 운용
 - 향후 : 수리능력평가제도 마련 후 최대 시공가능금액 선정에 따른 감점제도를 도입하여 상위업체 독과점 방지 추진
- ※ 국회 계류중인 3077법안은 전년도 수리실적, 재무상태 등을 평가하여 업체의 문화재수리능력을 평가·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3) 문화재청은 현재 파악하고 있는 문화재 수리업체 수는 397개라고 답변했음. 그런데 업계 관계자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 463개임. 문화재청은 업체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정확한 업체수는 몇 개인가?

- 문화재수리업자(「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동법 제2조제8호), 문화재감리업자(동법 제2조제11호)와는 별개의 업자로 직접적인 수리(시공)를 하는 업자를 말하며, ‘문화재수리업자등’(동법 제10조제4항)은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문화재감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모두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 2015.8월말 기준으로 문화재수리업자 수는 373개(종합 221개 + 전문 152개)이고, 문화재실측설계업자와 문화재감리업자를 포함한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수는 462개입니다.
- 이에 따라 문화재수리 입찰제도 개정(안)의 적용대상은 문화재수리업자에 한정된 것으로 대상 업자는 373개입니다.

업종구분	종합 문화재 수리업자	전문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문화재감리업자	계
	보수단청업	조경업	보존과학업	식물보호업	단청공사업	목공사업	선공사업	변안공사업			
업자수	221	52	45	46	8	1	0	0	60	29	462
'14년	189	50	44	41	3	0	3	0	60	26	416

[문화재수리업자등 업자현황, 2015.8.31 기준] 단위 : 업자수

4) 또한 문화재청은 이들 업체의 공사실적, 수주실적, 매출액, 직원 수, 기술자·기능자 보유수도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함. 청장, 사실인가?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상호, 소재지, 기술자·기능자 보유현황 등은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어 관련 사항은 파악하고 있으나, 공사실적, 수주실적, 매출액, 직원 수 등은 신고의무가 없어 별도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 다만 우리청은 문화재수리 품질향상을 위해 문화재수리 실적관리 및 기술자·기능자 경력관리를 위해 관련 법안(정부법안 의안번호 3077)을 2012년 국회에 상정한 바 있으며, 현재 국회 계류 중입니다.
- 동 법안이 시행되면 문화재수리업자의 문화재수리 수주 실적 등이 파악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본 의원실이 조사한 ‘공사금액별 문화재 입찰 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8,000만원 이상 공사는 462건이었고 낙찰 업체는 196개 업체였음. 2013년도에 519건이었고 낙찰업체는 189개 었음. 즉 200여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한 업체 당 연간 평균 10억 원 정도의 공사를 수주하고 있는 것이 현 문화재수리업의 현황임.

※ 문화재청의 개정안에서는 8,000만원 미만 공사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 문화재청은 이제야 문화재 수리업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는데, 이처럼 관련업계에 대한 실태도 모른 채 입찰 제도를 변경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문제 아닌가? 또한 연간 평균 10억 원의 공사를 수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개정안대로 적격심사 요건을 강화한다면 생존할 업체가 몇 개나 되겠는가?

결국 적격심사가 강화되는 것은 대형업체에만 유리한 입찰제도로 대다수 중소 신규업체가 고사되거나 도산할 우려가 높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은 있는가?

※ 문화재청도 업계 선두그룹 낙찰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 이를 보완한 개정법안을 발의(2012.12)했다고 함. 또한 주변 정비 등 기술력이 덜 요구되는 공사에 대해선 기존 낙찰자 심사 적격심사를 혼용해 신규 및 중소기업체에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함

- 문화재수리 입찰제도 개정을 위해 현재 우리청이 파악하고 있는 수리업체 현황은 공종별 수주실적, 보유 기술자·기능자 경력, 신용등급 등 입찰제도 개선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동 자료를 활용하여 현재 우리청이 마련한 입찰제도 개선안(초안)을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부 대형업체의 독과점 문제 등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독과점 해소 및 하위업체 공생 방안]

- 즉시 : 신생업체 등을 위해 기존 입찰제도인 적격심사제도를 일정기간 병행 운용
- 향후 : 수리능력평가제도 마련 후 최대 시공가능금액 선정에 따른 감점제도를 도입하여 상위업체 독과점 방지 추진

※ 국회 계류중인 3077법안은 전년도 수리실적, 재무상태 등을 평가하여 업체의 문화재수리능력을 평가·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6) 부실한 수리를 방지하려는 취지는 공감하나 개정안처럼 강화된 적격심사는 송례문이나 국가를 상징하는 문화재수리에나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또한 우리나라 건설업 상위 100개사인 1군 건설업체들도 수리기술 자격증 보유자 2명 기능 자격증 보유자 3명을 채용하면 문화재수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는데, 문화재 전문수리업체 보호 방안은 무엇인가?

※ 문화재청 = 최저가 낙찰에 따른 문화재 수리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마련한 것임. 문화재를 3등급으로 나눠 시행. 1등급은 3억원 이상, 규모, 난이도를 종합적으로 산출해서 등급 지정할 예정. 약 10% 정도가 해당함

- 개정안에서 기술력과 가격을 동시에 평가하는 종합적격심사가 의무화되는 문화재 수리는 중요문화재수리(문화재수리등급 1등급)에 한하며, 이는 전체 문화재수리의 약 10%에 해당됩니다. 그 외 대다수의 문화재수리는 기존 적격심사와 혼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 제도에서도 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을 갖춘 대기업의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입찰제도 개정안에서는 대기업이 수리업체에 진출한다 할지라도 수리실적은 일반 신생 문화재수리업자와 동일한 입장이며 보유 기술인력의 숙련도가 높지 않을 경우 기존 문화재수리업자보다 더 불리한 입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 또한 수리능력평가제도(현재 국회 계류 중) 마련 후 최대 시공가능금액 선정에 따른 감점제도를 도입하여 독과점을 최대한 방지, 영세한 문화재 전문수리업체의 공생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7) 적격심사와 관련 문화재청은 기준만 제시하고 발주자(대부분 지자체)가 적격심사를 함. 그런데 지자체의 문화재 관련 공무원은 1~2명에 불과한데 제대로 된 적격심사가 가능한가?

- 개정안의 '종합적격심사'는 정량평가로 업체가 자체 점수를 책정하여 제출한 자기 평가서로 평가하고, 평가 1위 업체만 증빙자료를 확인하므로 오류 및 행정력 낭비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2016년 시범실시 후 개정(안)이 확정되면 전산화를 통해 업무를 효율화 할 예정입니다.
- 참고로 계약업무는 지자체의 문화재 관련 공무원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회계·계약담당 부서에서 입찰 및 계약업무를 진행하므로 문화재 담당 공무원의 업무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8) 문화재청은 이와 관련된 축적된 자료도 없다고 함. 현재 시뮬레이션 할 계획이라고 함. 그렇다면 당장 적격심사를 시행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닌가?

- 현재 ‘문화재수리 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시뮬레이션 연구용역’을 통해 용역수행자가 문화재수리업자의 공종별 수주실적, 보유 기술자·기능자 경력, 신용등급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할 계획입니다.
- 이를 통해 평가지표 및 급간 점수를 조정하여 2016년 2월까지 개정(안)을 마련 예정입니다. 또한 2016년 국고보조사업 중 일부를 대상으로 시범실시 및 모니터링을 한 후 축적되는 데이터를 다시 환류하여 이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다시 보완·확정하고 2017년 이후에 전면시행 예정으로, 당장 개정안을 전면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9) ‘초안’에서 중소기업체에 불리한 내용을 재개정할 것

-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뮬레이션 용역을 통해 중소기업체가 우려하는 신용등급 점수 등의 평가지표 및 급간 점수를 조정할 예정이며, 현재 운영중인 ‘문화재수리 계약 및 입찰제도 개선 T/F’에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 또한, 현재 국회 계류중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독과점 방지 및 하위업체 공생방안을 마련 시행하겠습니다.

**10) 문화재업체의 의견을 먼저 청취한 후 제도개선을 실시할 것.
문화재업체의 의견 청취 계획을 보고할 것**

-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정된 개정(안)으로 문화재 수리업체 대상 설명회 및 의견수렴을 실시할 예정이며, 그 후 수리업체가 직접 참여한 모의입찰을 통해 개정안을 최종 점검할 예정입니다.

[문화재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 관련 의견수렴 계획]

- 의견수렴 실적

- '14.04~현재 : 문화재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 T/F운영(12회 운영)
(기재부, 행자부, 조달청, 문화재청, 관계 전문가, 문화재수리협회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
- '15.08.21 : 문화재수리 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시뮬레이션 설명회 개최(수리업자 89개 참석)

- 향후 계획

- ~ '15.10월 : 시뮬레이션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15.11월 : 문화재수리 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시뮬레이션 결과보고 및 설명회 개최
(전 문화재수리업자 대상, 지역별 개최 검토)
- '15.12월 : 가상 문화재수리 발주 및 모의입찰 실시
: 문화재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 T/F 회의 개최
- '16년 상반기 : 문화재수리 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및 대상 문화재수리 고시

담당부서	보존정책과
담당자	정규연 사무관
연락처	042-481-4843

5. 긴급수리 요구 지적된 시도문화재 조치 더더

- 즉시 보수가 필요(F등급)한 시도지정문화재(67건)중 12건(17.9%)은 보수정비를 완료하였으며, 50건(74.6%)은 수리 중이거나, 발주 또는 설계 중임입니다.
- 아직 보수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문화재 5건(7.5%)에 대하여는 조속히 지방비를 반영하여 조치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 시도지정문화재(F등급)

(단위 : 건)

구 분	계	조치 완료	조치 중	조치 예정
(F등급)	67 (100%)	12 (17.9%)	50 (74.6%)	5 (7.5%)

조 정 식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당자	배민성 사무관
연락처	042-481-4961

1.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실태조사

1. 2009년 실시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실태조사 연구용역” 이후 용역 결과에 따라 논의된 내역 및 추진 정책현황

- 문화재청은 2009년도 (사)한국문화재정책학회에 의뢰하여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 전수교육관 활성화 방향과 관련, 전수교육관 건립기준과 운영 활성화를 연계하기 위해 전수교육관 건립 시부터 운영계획을 강구하도록 하고, 전수교육관에서 시행하는 사회교육 등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프로그램 공모제를 시행하는 한편 경쟁력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차등 지원(2011년 부터)키로 하였습니다.
- 또한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은 균특예산에서 일반회계예산으로 전환됨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2011년도 예산지원기준을 마련하여 각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2. 2010년 상반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실태 현지조사”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논의된 내역 및 추진 정책현황

- 2010년 4월 2일(금) ~ 3일(토) 기간 중 사기장 전수관 등 5개소를 선정하여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실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지에서 전수교육관 운영자와 면담을 진행하고 전수교육관 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당자	남상범 서기관
연락처	042-481-4923

2. 압수물 감정 평가 관련

현재 압수귀속 유물은 검찰조사 후 결과에 따라 국가귀속됨. 국가귀속 이후에는 사건 발생 소재지의 문화재청 소속기관이나 국·공립 박물관으로 이관됨.

그런데 압수되어 국가귀속된 유물에 대해서 검찰조사시 감정평가 받은 내용을 전달받지도 않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가치평가를 하지 않고 있어 해당 유물의 가치에 따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1) 압수유물의 감정평가에 대한 문화재청에서 논의한 현황과 논의자료, 추후 도입 계획
- 2) 문화재청이 검찰에 압수유물에 대해 감정평가한 자료를 요구한 사례가 있는지, 있는 경우 해당 공문서 사본과 붙임 자료를 제출, 검찰에서 감정평가서를 문화재청에서 이관하지 못하는 근거
 - 문화재보호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의거 소유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압수 문화재에 대해 문화재청에 “국가귀속촉탁” 신청을 의뢰하게 되며, 문화재청은 국가귀속 조치후 국·공립박물관 등에 이관, 보관·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압수문화재 국가귀속 조치시 경찰 또는 검찰의 협조를 받아 감정조서를 첨부토록 하여 국가귀속 후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당자	배민성 사무관
연락처	042-481-4961

3.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관리지침 마련 및 현장조사 요구

1.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시 현지조사 실시 여부

- 우리 청은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에 의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신청 시 지자체로 하여금 신청서를 충실히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 시 서면조사에 그치지 않고 현지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 '03년 감사원 감사 조치요구 사항이었던 전수교육관의 건립 및 운영관리지침 여부 및 관련해서 내부 논의 및 진행 내역

- 2003년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전수지원사업 예산지원 지침」 등을 강화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조치 내용
○ 전수교육관 입주종목, 시설기준, 규모 등을 검토하여 지원하는 방안 마련	○ 사전현지조사 실시 후 예산편성에 반영(2003.6월) - 설계심사 실시하는 등 사업검토 강화(2003.7월) ○ 2005 예산편성 지침에 반영(2004.3월) - 입지조건, 운영계획,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건립계획 수립

지적사항	조치 내용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건립 및 운영관리지침 등을 마련하고, 시도지사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것	○ 전수교육관 활용 사업 지원('04년, 1,275백만원) ○ 실태조사 <2009년도> - 2009.7월~11월(5개월) / 106개소 - 한국문화재정책학회 <2010년도> - 2010. 4. 2.(금) ~ 4. 3.(토) / 사기장 전수관 등 5개소 - 문화재청 및 공예문화진흥원 - 내용 · 입주 보유자 면담 및 활동 내역(프로그램 운영현황) · 전수교육관 시설 환경 및 여건 점검 등 ○ 전국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시도담당자 워크숍 - 2011.1.20.(목)~1.21.(금) - 문화재청/한국문화재단 - 전수교육관 건립 및 활성화사업 관련 사례발표 및 공유 ○ 문화재보호법 개정(2005년도) - 지자체도 전수교육 예산지원, 전수교육시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 또한, 전수교육관은 지자체보조(국비 50%)이므로 1차적으로 지자체가 관리, 문화재청은 운영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 현재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시 사업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및 선정을 함에도 사업선정심사위원회의 운영 규정이 없음.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음. 사업선정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마련하고, 회의록 작성해서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반영할 것

- 사업선정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신청 지침”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회의록 작성 의무 대상 회의는 아닙니다.
- 추후 전수교육관 건립 및 운영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추후 전수조사 계획 및 진행상황

- 우리청은 “2015년 전수교육관 사업관리체계 개선계획”에 의거 전국의 전수교육관을 대상으로 시설 및 운영현황 등 서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서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3개년 계획으로 전수교육관 전수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선 교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당자	장구연 사무관
연락처	042-481-4995

1. ‘한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길 열렸지만... 문화재청 여전히 ‘소극적’

- 무형문화재의 범주가 확대되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27일 제정·공포되어 내년 3월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 청은 ‘한글’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에 앞서 무형문화재로서 가치와 국외사례, 지정 근거 등에 대해 학술적으로 연구 분석할 필요가 있어 ‘구전 전통 및 표현’의 세부분류로서 ‘한글’의 무형문화재 지정가치(전승가치, 전승의 필요성, 무형문화재로서의 적합성, 전승현황 등)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15.7.22.~12.18.)에 있습니다.
- 추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계전문가 조사 및 의견수렴,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절차에 따라 ‘한글’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정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는 ‘국가무형문화재’로 명칭 변경됨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담당자	김은영 연구관
연락처	042-481-4686

2. 어렵게 고국 났은 환수문화재 국가문화재 지정은 1%도 안돼. 84%는 대국민 공개 없이 박물관 수장고에 잠들어

1) 환수문화재의 지정 추진이 부진한 사유는?

- 환수가 이루어지고 난 뒤 꾸준히 국가문화재 지정을 추진하여 왔으나 다소 부진한 실정입니다.('15년 9월 현재 26건 396점 지정)
- 이에 '14년에 환수문화재 32개 소장처에 국가문화재 지정 신청을 요청하여 22건 50여점을 검토·조사하여 금년에 3건 3점을 보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 궁내청 환수 의뢰 및 오바마 대통령 방한시 환수된 국채는 현재 지정조사 중에 있으며, 특히 궁내청 환수의뢰 167책의 경우 국내 소재 조선왕조의례(598종 2,083건 3,840책)와 일괄로 검토 중에 있어 지연되었습니다.

2) 환수문화재 지정 관련 향후 계획은?

- 일본 궁내청 환수 의결 및 오바마 대통령 방한시 환수된 국새 등 현재 지정조사 중에 있는 문화재의 지정을 금년 내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 향후 환수되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소장(보관)처의 신청 없이, 직접 문화재청에서 조속히 지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환수문화재가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 환수문화재의 전시·활용 방안은?

- 국립중앙박물관 등 환수문화재 소장(보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더욱 많은 환수 문화재가 전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담당자	이상협 사무관
연락처	042-481-4815

3. 문화재청에서도 외면 받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졸업생들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졸업생의 취업률 제고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현장실무능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 자격증 취득 지원 및 풍부한 취업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동시에 종합적·전문적 취업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학교에 전담부서 및 인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학교 졸업생들이 문화재분야 경험과 경력 축적을 통해 공직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 및 문화재연구소 등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최근 3년간 취업률

구분	2012	2013	2014	비고
졸업생	97명	99명	128명	
취업대상자	91명	77명	107명	대학원 진학자 등 제외
취업현황	48명	40명	52명	
취업률	52.8%	51.9%	48.6%	

$$\text{※ 취업률(\%)} = \frac{(\text{건강보험DB연계})\text{취업자} + \text{해외취업자} + \text{영농업종사자}}{\text{졸업자} - (\text{진학자} + \text{입대자} + \text{취업불가능자} + \text{외국인유학생} + \text{건강보험직장가입제외대상})}$$

담당부서	활용정책과
담당자	박동석 서기관
연락처	042-481-4742

4. 서원·향교 문화재 활용사업 확대 시행 및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 등을 통하여 체류형 프로그램 확대 필요

- 「2015년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사업은 전국 71개소 운영함으로써, 점진적으로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범위를 확대 시행중에 있으며, 프로그램 품질제고를 위하여 사업담당자 워크숍(연 3회) 및 전문가 컨설팅, 일반모니터링, 관람객 만족도 조사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 : 연도별 사업현황>

구분	사업운영	국고보조금 지원	체류형 프로그램	비고
2014년	38개소	12억	14개소	
2015년	71개소	21.2억	28개소	

- 아울러 2016년부터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프로그램 질적 제고를 위하여 지역별·주제별 특색 있는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담당자	김동대 사무관
연락처	042-481-4817

5. 문화재청 중복·유사 연구용역 18건(12억원) 중복 예산낭비 문화재청 통합적 정책기능 강화 필요

- 문화재 정책분야 전문연구기관을 육성하여 장기적인 문화재 정책을 수립하고, 통합적인 정책연구기반을 구축하여 예산이 합리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고 보는 데 견해는?
-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화재청의 정책기능에 대한 전문기관의 분석결과를 보면 타부처에 비해 정책기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12년, 정책업무 비중 약20%)
- 문화재 보존관리에 따른 사회적 갈등 해소와, 문화재 보존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책연구·개발이 시급한 실정으로 정책 전문연구기관 설립·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문화재청의 취약한 정책기능을 보완하고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법상 재단법인인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이 '14.7.설립되었으나, 설립 초창기로서 조직·예산 지원, 법적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16년 최소 10명의 연구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약 8억원 정도의 정부지원이 요구됩니다.
- 문화재정책연구기관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 보완을 위해 관계법령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나, 아직 심의가 진행중입니다.

참고자료

- 2016년 예산소요 : 8억원(총 소요예산 16억원 중 50%)
 - 인건비(연구원 10명) : 5.2억원, 사무실 임차료 : 1억원, 운영경비 : 1.8억
-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안 ('15.4.17. 교문위 상정, 소위 계류중)
 - 문화재 보존·관리 및 안전 정책을 연구하는 단체의 운영 경비 지원근거 마련
- 문화재정책연구원이 문화재청 정책기능 강화라는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장기적인 문화재 정책을 수립하고 통합적인 정책연구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법률 개정안 및 2016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연구원 지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